

정책연구 2024-09

# 지방규제 영향분석 방안 마련 연구

전대욱 · 정기용 · 김필 · 김해솔



## 참여연구진

저 자 전대욱, 정기용, 김필, 김해솔

연구진 연구책임자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기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해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요약

### □ 연구의 목적·범위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고시, 훈령 등)에 의한 등록규제의 신설·강화를 전제로 한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방법론을 개발·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적인 규제정책에서 지향하고 있는 규제일몰제 등 규제품질관리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지침을 자치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함
  - 자치규제의 사전적 타당성 검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여건,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반영한 간소화되고 표준화된 방법론을 도출함

### □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본 연구는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한 자치규제 및 등록제도, 영향분석서 작성 등 자치규제 현황 분석
  -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개념·이론적 접근 및 국·내외 사례분석
  - 지방규제 영향분석과 관련된 법·제도 분석, 자치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추진 필요사항, 영향분석서(안),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매뉴얼(항목별 세부 작성 방법)의 도출 등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의 실제사례 시범적용(연구과제 종료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대상 지자체 공모 후 별도 시행) 및 영향분석서(안)의 시행을 위한 정책제언 등

## □ 자치규제 규제영향분석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 ○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규제등록 및 사전영향분석 운영현황

- 2023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총제·개정건수는 33,706건(제정 8,538건, 개정 25,168건)
- 이로부터 등록된 자치규제는 총 771건(신설 358건, 강화 116건, 완화 295건)이고, 자치규제의 등록률은 2.3%에 불과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설 64건, 강화 30건, 완화는 82건으로 총 176건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신설 294건, 강화 86건, 완화는 213건으로 총 593건임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2023년 기준 46건으로, 경기·전북·대구·대전·서울·제주의 총 6개의 지역에 표준양식이 있음
  -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건수는 319건이고, 84개 지역에 표준양식이 존재함
- 따라서 규제품질관리의 지방자치단체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규제 혁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자치규제의 특성에 맞는 영향분석서(안)를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개념·제도와 국내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담당자가 제기된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 및 비규제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대안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제 의사결정 수단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님
  - 성공적 정책운영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좋은 규제를 지향, 합리적 정책 결정을 통하여 규제의 품질을 제고, 민간의 혁신과 창의력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예방. 규제당국의 민주적·합리적 역량을 강화 등

- 우리나라에서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현재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시 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며, 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쟁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이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됨
  - 또한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1개의 사례(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를 분석함
- OECD 및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법안의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메커니즘으로 대다수의 OECD 가입국에서 규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도구로 활용됨
  - 영국은 '06년 규제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A) 제도로 개편
  - 호주는 '22년 OIA(Office of Impact Analysis)을 통해 기존 규제영향분석(RIA) 및 규제영향진술서(RIS)가 영향분석(Impact Analysis: IA)으로 통합됨
  - 미국은 '23년 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의 Circular No. A-4의 개정·발표를 통해, 특정 규제영향분석('24.3월) 및 특정 규제의 타 규제 뒷받침을 위한 규제영향분석('25.1월)을 시행 등
- 국·내외 사례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1) 작성에 필요한 항목으로는 규제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규제 내용, 비용-편익분석으로,
  - 2) 국·내외 사례에서 비용편익-분석을 강조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검토가 중요하므로 보다 간소화된 방법이 필요하며,
  - 3) 특히 지방규제의 경우 해당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역내 이해관계자의 규명과 그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 자치규제 영향분석제도의 추진과 영향분석서(안)

- 자치규제 영향분석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또는 제도화 방안
  - 1) 자치단체(시·도)의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지방규제 혁신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2) 각 자치단체(시·도)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또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자치규제 심사에 대한 역할 부여(신설·강화시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활용)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작성 전 시·도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에서 간이형 또는 표준형 작성 판단 필요
    - 판단기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의무제출이 요구되는 서류 내용의 구체화 정도,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 및 관련 규제, 기타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는 주민생활 체감도 등
  - 3) 행정안전부 및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 중 사전협의, 중요규제의 판단 및 자체심사에 대한 예비심사·본심사·재심사 등 자치규제 심사관련 제도의 고도화 및 정비
  - 4)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의 지방규제 적용(기존 시스템 활용 또는 자치규제를 위한 별도 구축 등)
  - 5) 전문기관의 영향분석서 검토역할 부여 등
- 영향분석서(안): 체크리스트 및 서식, 세부항목별 작성방안 등 4장 참조

**표 요약-1 | 지방자치단체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구분	항목	비고
1. 자치규제 및 규제영향 분석의 개요	1-1. 자치규제 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1-2. 분석대상 유형	• 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1-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 실·국장, 과장·담당관 등을 명기, 국장 서명 (규제실명제 관련)
	1-4. 규제조문 (근거법규 및 분류)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및 조례·고시 등 자치법규 등 명칭과 조항
	1-5. 규제의 내용	• 기존 자치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 대안에 대한 규제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요약

구분	항목	비고
	1-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 등의 현황 및 규모 등
	1-7.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결과 요약	•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 요약표 또는 규제·신설 강화의 정성적인 장·단점 및 효과
	1-8. 일몰설정 여부	• 규제 존속·재검토 기한 및 사유 (규제일몰제)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2-1.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신설·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현황자료, 경위 등 • 공공부문이 개입할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인지 반드시 검토
	2-2. 자치규제의 목표·기대효과	• 선택대안(규제)의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또는 규제 도입의 효과 등
	2-3.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는 위험 대비 규제대안이 과하지 않고 적정한지 여부 •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문제보다 편익이나 긍정적 효과가 더 상회하는지 여부
	2-4. 자치규제의 지역경제로의 영향·파급효과	• 경쟁제한 및 기업활동 영향,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가능성 등 체크, 필요시 내용 작성
	2-5.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비교	•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 또는 규제·신설 강화의 정성적인 긍·부정적 효과 분석 세부사항 기술
	2-6. 정책적 고려사항	• 자치규제 정비계획, 규제순응도,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결과, 현재 기술수준, 유사사례,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존속기한의 타당성, 기타 행정적 영향 요인·실효성(집행자원 능력, 절차·민원 등) 등 해당 여부 체크, 필요시 내용 작성
3. 종합결론 및 기타	3-1. 분석결과 요약	•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 및 기타 고려사항을 종합한 영향분석의 결론
	3-2. 기타 의견	• 분석결과 요약 외 의사결정 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의견 및 기타 강조할 사항 등
	3-3. 별첨	• 영향분석 항목의 증빙자료 및 규제의 신설·강화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언론기사 등 별첨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방법 .....	9
3. 연구의 논리체계 및 구성 .....	9

## 제 2 장 자치규제의 관리현황과 특성

제1절 등록규제의 이론적 논의 .....	15
1. 지방규제의 이론적 접근 .....	15
2. 자치법규 등록규제 .....	17
제2절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현황 .....	20
1.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현황 .....	20
2. 2023년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	22
3. 2023년 규제등록 사유 및 규제등록률 현황 .....	23
4.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현황 .....	24
5.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근거 .....	2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28

### 제 3 장 규제영향분석의 개념과 사례

제1절 규제영향분석 의미 및 작성방법	31
1. 규제영향분석 의미	31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	35
제2절 해외사례 검토	44
1. 영국	44
2. 호주	53
3. 미국	62
제3절 국내사례 검토	70
1. 국내사례 개요	70
2.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72
3. 광역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73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83

### 제 4 장 자치규제 영향분석 추진방안

제1절 자치규제 영향분석 추진방안 개요	91
1. 추진방안 도출의 전제조건과 범위	91
2.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의 유형과 구성	94
제2절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100
1. 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안)	100
2.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103
제3절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의 항목별 작성방법	109
1. 자치규제 및 규제영향분석 개요	109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10
3. 종합결론 및 기타	122

**제 5 장 결 론**

제1절 정책제언 및 법제개선안 .....	127
1. 자치규제 영향분석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127
2. 자치규제 영향분석 제도를 위한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	135
제2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한계 .....	140
<b>【참고문헌】</b> .....	<b>147</b>
<b>【부 록】</b> .....	<b>151</b>

## 표 목차

표 2-1   등록대상 규제 .....	17
표 2-2   자치법규 규제등록 판단기준(요약표) .....	19
표 2-3   광역자치단체별 지방규제 현황(2023.9. 기준) .....	21
표 2-4   2023년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	22
표 2-5   2023년 자치법규 등록사유 현황 .....	23
표 2-6   2023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현황 .....	25
표 2-7   2023년 규제영향분석서 관련 법규 현황 .....	27
표 3-1   규제영향분석서 구성 및 세부항목 .....	36
표 3-2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개요-표지) .....	37
표 3-3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39
표 3-4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적정성) .....	40
표 3-5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실효성) .....	41
표 3-6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42
표 3-7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	42
표 3-8   영국 규제영향분석 작성항목 및 내용 .....	50
표 3-9   영국 규제 점수표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	52
표 3-10   호주 규제영향분석 발전 과정 .....	54
표 3-11   호주 예비 평가 관련 질문 .....	57
표 3-12   호주 규제영향분석 작성항목 및 내용 .....	61
표 3-13   미국 규제영향분석 작성항목 및 내용 .....	68
표 3-14   미국 규제영향분석 작성 체크리스트 .....	69
표 3-15   광역자치단체 자체 규제영향분석서 서식 여부 .....	71
표 3-16   광역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유형화 및 작성항목 .....	81
표 3-17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사례 작성 항목 비교(규제 개요 비교) .....	84
표 3-18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사례 작성 항목 비교(세부작성내용 비교) .....	85
표 4-1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지자체 규제영향분석 구성안 .....	96

표 4-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자체 규제영향분석 구성안 .....	98
표 4-3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	101
표 4-4	현 신설·강화 등 이외의 대안 기술 .....	112
표 4-5	경쟁제한 요인에 대한 검토항목 .....	114
표 5-1	지방자치단체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의 주요 내용 .....	143

## 그림 목차

그림 1-1   지방규제의 중층적 구조 .....	7
그림 1-2   연구보고서의 구성 .....	10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양식(위: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경기도) ..	26
그림 3-1   영국 규제형성 및 평가 과정 .....	46
그림 3-2   영국 규제 점수표 양식(일부분) .....	52
그림 4-1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1. 자치규제 및 규제영향분석 개요 .....	103
그림 4-2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104
그림 4-3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및 3. 종합결론 .....	108
그림 5-1   자치법규 규제절차 .....	128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01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체계정비 필요

- 국정과제<sup>1)</sup>로 추진되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규제혁신 추진체계 정비와 아울러 지방규제 혁신체계 고도화 추진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국가적 규제혁신전략회의·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추진체계 하에서, '23년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지방규제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 정비<sup>2)</sup>가 필요함

#### □ 지방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특히 규제타당성 분석지침 마련 필요

- 지방규제혁신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있어서, 특히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의 정비로 볼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조례나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에 대한 개선건의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규제혁신 분야 중, 조례에 의한 규제는 중앙과 무관하므로 현행 기본법 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음

1) 국정과제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114-1.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량과 경쟁력 제고(지방규제혁신 강화)

2) 국가적으로는 포괄적 네가티브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전적 규제영향분석, 규제일몰제 및 사후 규제영향평가에 의한 규제정비,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규제의 경우는 상기와 같은 규제의 타당성 분석에 의한 규제개선과 정비에 관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지방규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자치법규에 의한 등록규제의 경우, 지방규제의 신설·강화시 관련 타당성 분석 제도의 불비로 인해 관련 분석방법의 정비가 시급함
  - 중앙행정기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방규제의 신설·강화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해 사전적 규제영향 분석의 수행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분석지침<sup>3)</sup>을 따라야 하는 등 동 분석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행정안전부, 2023: 22)
  - 또한 규제관련 분석에 관한 자치단체의 역량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작성이 수월할 수 있는 간소화되고 표준화된 분석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사전적 영향분석 방법론의 연구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후적인 규제 영향평가 분석 방법론의 개발·도입 등 국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제도들이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장·안착시키는 것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의 목적

###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제를 위한 사전적 영향분석 방법론 개발·제안

- 본 연구는 자치법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신설·강화를 전제로 한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방법론을 개발·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지침을 대상으로, 규제의 사전적 타당성 검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반영한 간소화되고 표준화된 방법론을 도출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지역별 여건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자체분석 및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뿐더러, 수용성이 제고되고 용이한 작성이 가능하도록 지방규제 영향분석 방안을 도출함

3)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023. 4)

- 또한 자치법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제도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현행 법규 등 제도적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영향분석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및 관련 추진방안 등을 제언함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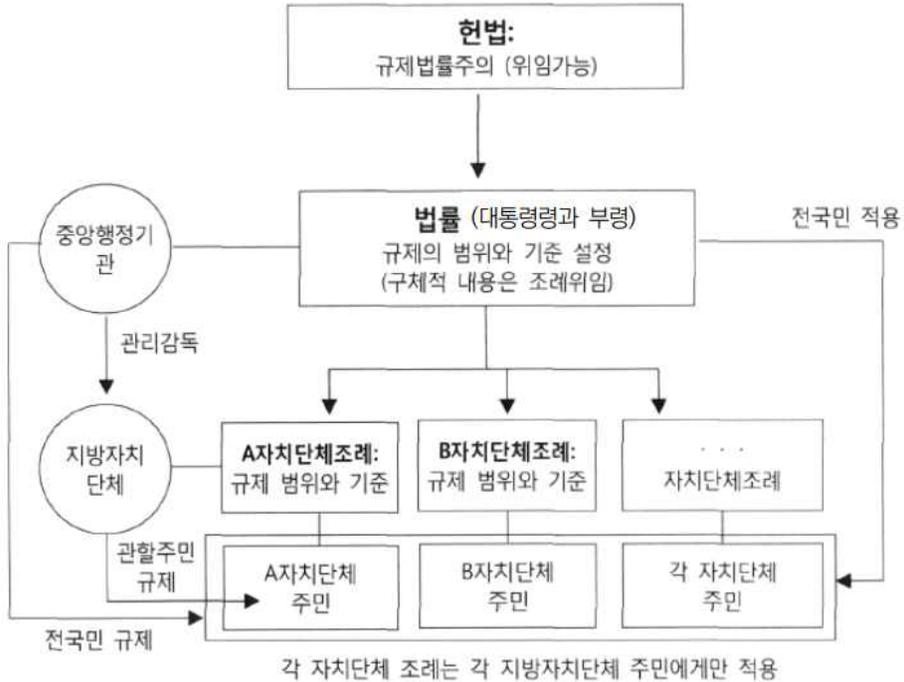
#### □ 지방규제혁신의 관점에서의 지방규제의 정책범위

- 지방규제의 중층적 구조([그림 1-1] 참조)를 감안할 때, 지방규제는 전 국민에게 바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를 제외한 중앙의 위임규제 및 독자적인 조례 등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를 포괄함
- 1)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규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중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규제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의한 등록규제<sup>4)</sup>
- 3) 지방자치단체의 그림자·행태 규제
  - 명시적인 규정없이 행해지는 불합리한 행정지도 또는 구두지시 등 부당간섭,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유사행정규제, 미등록 규제, 법률에 근거를 두었지만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최무현 외, 2023)

---

4) 규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어 있는 비등록규제, 누락된 미등록규제, 중복등록규제,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단일규제로 등록된 규제, 자치법규 폐지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상태를 유지하는 규제, 자치법규와 조문불일치 규제, 기타 등록 오류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이민호, 원소현, 심우현, 2018: 6)하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영향분석 방안을 도출함

| 그림 1-1 | 지방규제의 중층적 구조



자료원: 김건위·이병기(2019: 40)

## □ 지방규제의 범위 중 본 연구의 포커스

- 중앙행정기관과 무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sup>5)</sup>에 의한 등록규제 대상
- 규제의 신설·강화(일몰기한 연장 포함) 시 심사를 전제로 한 심사용 기초자료로서의 영향분석서 개발
  - 현행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핵심적인 사전적 규제영향평가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소화되고 표준화된 지방규제 영향분석서를 개발함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등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중 본 연구의 포커스

- 지방규제 영향분석의 개요: 개념, 목적, 법적 근거, 표준형과 간이형의 구분, 주요 분석내용(항목) 전략적 활용방안 등
-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작성방법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복수의 규제대안 및 구체적인 내용
  - 규제의 적정성·실효성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국내외 유사 규제사례 등
-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간소화된 정량적인 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B/C의 도출이 불가능하더라도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비용·편익의 발생구조 및 항목 등 정성적인 분석을 가미
  - 대안설정 및 이해당사자 규명, 직·간접 비용·편익의 범위
  - 비규제자의 규제순응비용 및 규제당국의 집행비용, 이해당사자별 규제편익 (직접편익, 파급효과 제외)
  - 기타 정책적 고려요인(기회·위협요인), 종합적 판단 등

□ 지방규제 영향분석서의 제도·정책적 관리를 위한 방안 논의의 범위

-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의한 규제 도입 전 규제영향평가 절차를 감안한, 자치법규에 의한 등록규제 규제영향평가 절차의 방침수립을 위한 제언
- 영향분석서 작성의 전문가 지원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활용 방안
  - 대학, 중앙 및 시도·대도시 연구기관 등 자문기구 구성·활용방안
- 규제영향분석서 관련 제도(규정) 분석 및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작성 관련 규정 마련 검토
- 향후 지방규제 영향분석 정보시스템<sup>6)</sup>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지방규제 영향분석 작성매뉴얼에 반영 등과 관련된 논의 등

6)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을 대상으로 하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필요

## 2. 연구의 방법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에 대한 현황 및 특성분석: 문헌연구

- 최근 3년간 수행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의 정책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결과물 등 정책연구보고서, 국내외 학술논문 등 리뷰
- 작성대상이 되는 지방규제의 특성에 관한 행정자료 및 선행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등
- 기타 신문·방송·간행물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발표된 전문가 발제문·기고문 등 참고

### □ 규제영향분석 방법론 정리 및 개발: 사례연구, 이해당사자 FGI 및 델파이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 및 기타 규제영향분석 및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 지방규제의 특성을 반영한 영향분석 방법론의 연역적 도출
- 타당성 분석 관련 전문가 면담·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 □ 실제사례 적용에 의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론 고도화

- 지방규제의 특성을 반영한 영향분석 방법론의 적용가능성 및 실제적 타당성 검증 차원에서 실제사례 적용을 통한 방법론 고도화는 연구과제 종료 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범적용 자치단체를 공모 후 별도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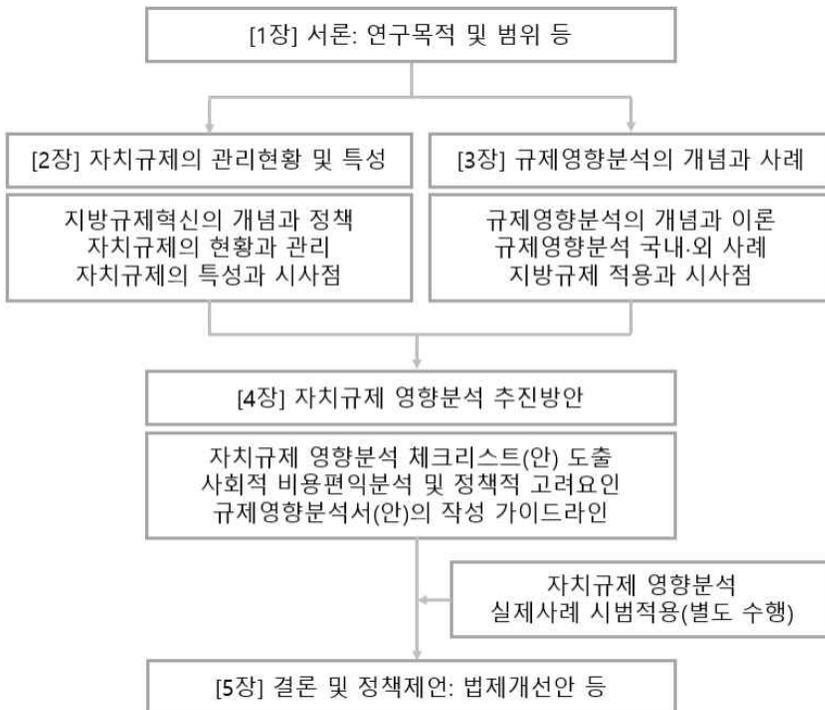
## 3. 연구의 논리체계 및 구성

### □ 연구의 논리적 구성체계

- 본 연구의 논리적 구성체계는 첫째, 지방규제혁신의 관점에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의 관리현황의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자치규제의 특성을 반영한 영향분석서 개발 필요성을 논함

- 둘째,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이론적·개념적 접근으로서, 관련된 선행연구 및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지방규제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영향분석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앞선 분석을 토대로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의 영향분석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 영향분석서(안)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작성에 관한 지침(안)을 도출함

**|그림 1-2| 연구보고서의 구성**



- 넷째, 상기와 같이 연역적으로 도출된 추진 방안의 실제적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의 검증을 위해 실제사례에 대한 시범적용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추진방안의 적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단, 실제적 적용을 위한 시범적용은 연구보고서와 무관하게 연구과제 종료 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로 수행함
- 다섯째, 마지막으로 제도적 관리방안과 지방규제 적용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련된 정책제언으로서 자치규제 영향평가 추진방안 및 관련 규정마련 등의 법제개선안을 제안함

#### □ 연구의 흐름 및 보고서의 구성

- 본 연구는 [그림 1-2]에 제시된 바와 같은 절차와 구성을 따름:
  - (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방법 등
  - (2장) 자치규제의 관리현황과 특성
  - (3장) 규제영향분석의 개념과 사례
  - (4장) 자치규제 영향분석 추진방안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의 시범적용을 통한 고도화 방안은, 연구과제 종료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로 진행 예정
  -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 2 장

## 자치규제의 관리현황과 특성

제1절 등록규제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현황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02 자치규제의 관리현황과 특성

## 제1절 등록규제의 이론적 논의

### 1. 지방규제의 이론적 접근

#### □ 지방규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 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규제의 주체에 따라서 중앙규제(국가) 또는 지방규제(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음
- 지방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와 규칙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김홍주, 2023)
  -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의 종류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것이 조례임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것임(전라남도 법무행정 서비스)
  - 중앙정부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규칙을 제정해 민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제약하는 것임(Teske, 2004)
- 지방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기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한 위임 근거 여부로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분류됨(국회입법조사처, 2023)

- 위임조례에 근거한 지방규제가 위임규제이고 자치조례에 근거한 규제를 자치규제라고 함

## □ 지방규제의 유형

- 규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로 구분되며 지방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황해동 외, 2022)
  - 경제적 규제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여 독점 남용 방지, 불공정 이익방지, 과도한 경쟁 방지 등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임
  -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약자 보호, 삶의 질, 기본 인권 등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 경제적 영향력이 큼
  - 행정적 규제는 국가 행정에 관련하여 정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원에 관한 규제임
- 이 외에도 법령규제(등록규제)와 비 법령규제(그림자·행태규제)로 분류할 수 있음(김홍주, 2023)
  - 법령규제(등록규제): 법령근거가 있는 규제이며, 지자체에서 지방행정 업무 시스템에 지방규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국조실이 운영하는 지자체규제 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음
  - 이렇게 등록된 규제는 규제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규제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 비 법령규제(그림자·행태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지만 국민과 기업의 행태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규제임
  -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적 규제를 말함(행정안전부, 2024)

## 2. 자치법규 등록규제<sup>7)</sup>

### □ 규제등록제도의 개념

- 우리나라의 규제등록제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기준’을 근거하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검토하여 규제라고 판단되는 규제를 등록하는 형식임
  - 담당 공무원이 규제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이지만 등록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미등록 규제’와 규제가 아님에도 등록되는 ‘불필요한 규제 등록’이 발생됨
- 규제등록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규제의 명칭·내용·근거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법령 중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을 등록하여 특별관리하는 제도임
  - ‘특별관리’의 의미는 등록된 규제를 개선(단순 개정, 강화, 완화,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낮은 규제는 등록하지 않음
- ‘행정규제’는 등록해야 할 법규정(등록대상)과 등록이 불필요한(등록제외)로 분류되고, 등록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비규제’라고 함

표 2-1 | 등록대상 규제

구분	규제여부	등록여부	최종 규제 등록여부
법령	행정규제	미등록 규제 (등록대상임에도 누락됨)	○
		등록대상 행정규제	○
		등록제외 행정규제	x
	비규제	등록제외 비규제	x

출처: 한국행정학회, 2023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 추가

7) 한국행정학회, 2023,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 행정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에서 제외되는 법규정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임의적 규정이나 시민의 당연한 의무, 사회규범적 규정은 행정규제임에도 등록에서 제외함
  -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형법과 관련된 살인 등은 강력한 규제임에도 행정부의 관할이 아니므로 등록에서 제외됨
  - 민법, 상법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규제는 제외함
  - 과태료, 과징금 관련 규정은 제외함
- 뿐만 아니라 등록대상 행정규제임에도 등록이 누락된 미등록 규제가 존재함
  - 국민의 생활과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임에도 등록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규제임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미등록규제 여부를 조사하여 미등록규제가 발견되면 즉시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규제의 폐지 등 정비계획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최무현·황윤성, 2023)
  - 최무현·황윤성(2023)에 따르면 미등록 규제를 그림자 규제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에서의 미등록규제 발굴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 자치법규 규제등록 판단기준

- 본 보고서의 자치법규 규제등록 판단기준 내용은 한국행정학회(2023)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요약표를 활용함
- 한국행정학회(2023)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정한 「행정규제 판단기준(2016)」을 근거하여 자치법규에 맞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 자치법규 규제등록의 판단기준은 23개이며 하위규정을 세분하면 총 56개임
  - 내용적으로 기준을 분류하면 ‘행정규제의 대상별 판단기준’과 ‘행정규제의 내용·형식별 판단기준’임

[표 2-2] 자치법규 규제등록 판단기준(요약표)

	검토 항목	검토내용
행정규제의 대상별 판단 기준	행정기관 업무의 위탁·대행	•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규정'
	정부출자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정부출자, 투자기관, 특수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규정
	지자체의 영조물 설치·운영	• 지자체의 영조물등의 설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자체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 지자체 소관 및 산하 각종 '위원회'의 설치, 관리, 운영 관련 규정
	장려·지원을 위한 보조금	• 장려·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급, 중단, 지급 후 의무 및 감독 관련 규정
	보조·지원 및 행정업무 대행을 위한 '지정'	• 보조·지원을 위한 '지정' 관련 규정 • 행정업무 대행을 위한 '지정' 관련 규정
	인증과 검사(검정)	• 각종 지역의 '지정' 관련 규정 • 보호야생생물의 '지정행위' 관련 규정
	수수료, 사용료 등	• 수수료, 사용료, 점용료, 각종 요금 관련 규정
	부담금, 분단금 등	• 부담금 및 분단금, 보증금, 강제이행금 관련 규정
	국가보상, 포상금	• 손실보상, 국가보상, 포상금 관련 규정
	각종 평가	• 각종 '평가' 관련 규정
	임용	•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관련 규정
	선거	• 주민투표 등 선거 관련 규정
	행정제재	• 연체료, 가산금, 과징금 등 관련 규정 • 영업정지, 취소 및 말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관련 규정
행정서식	• 행정문서의 서식 관련 규정	
행정규제의 내용·형식별 판단기준	행정내부규제	•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제한(행정내부규제)규정
	임의적 규정 및 사회규범적 규정	• 임의적 규정, 선언적 규정 •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사회규범적 규정, 협조 의무 규정
	이행명령	• "~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규정 • "~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규정
	정의, 특례, 의제	• 용어의 개념, 정의 규정 • 규제의 특례, 의제 규정
	규제완화 및 경감, 적용 제외	• 규제완화 및 경감 규정 • 규제의 적용 제외 규정
	준용	• 상위법 및 타법의 준용 규정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제출 서류의 종류나 기한 관련 규정

출처: 한국행정학회, 2023

## 제2절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현황

### 1.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현황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규제등록제도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를 규제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면서 규제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심사, 규제개혁의 실태 점검 등을 진행함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규제 신설 및 강화를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부재함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법규내 규제영향분석 관련 조문 여부와 내용에 차이가 있음
- 2023년 9월 기준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규제수는 40,163개임<sup>8)</sup>
  - 이중, 경기도가 6,057건 15.08%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고 세종특별자치도가 547건 1.36%로 가장 적게 등록되어 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은 2,363건임
- 위임조례에 근거한 규제인 '위임규제'는 총 33,531개로 지방규제의 82.5%를 차지하고 자치조례에 근거한 규제인 '자치규제'는 총 7,012개로 지방규제의 17.5%를 차지하고 있음

8) [표 2-3] 광역자치단체별 지방규제 현황은 국회입법조사처(2023)의 보고서 자료를 활용함

-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위임규제의 비율이 높음
- 위임규제 비율의 평균은 80.8%이고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는 위임규제 비율이 90% 이상임을 확인 할 수 있음
- 자치규제 비율의 평균은 19.2%이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타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순으로 높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임규제가 23%, 자치규제가 77%로 자치규제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
- 이는 2006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 국토관리, 보존, 해양수산 사무 등을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임(김홍주,2023)

【 표 2-3 】 광역자치단체별 지방규제 현황(2023.9. 기준)

지역	총 규제 수	비율(%)	위임규제	자치규제	위임규제 비율(%)	자치규제 비율(%)
서울	2,603	6.48	2,185	418	83.9	16.1
부산	1,513	3.77	1,247	266	82.4	17.6
대구	1,161	2.89	885	276	76.2	23.8
인천	1,914	4.77	1,494	420	78.1	21.9
광주	919	2.29	757	162	82.4	17.6
대전	804	2.00	719	85	89.4	10.6
울산	826	2.06	751	75	90.9	9.1
세종	547	1.36	491	56	89.8	10.2
경기	6,057	15.08	5,319	738	87.8	12.2
강원	3,313	8.25	2,693	620	81.3	18.7
충북	2,467	6.14	2,057	410	83.4	16.6
충남	3,109	7.74	2,652	457	85.3	14.7
전북	3,624	9.02	2,857	767	78.8	21.2
전남	3,944	9.82	3,203	741	81.2	18.8
경북	3,410	8.49	3,183	227	93.3	6.7

지역	총 규제 수	비율(%)	위임규제	자치규제	위임규제 비율(%)	자치규제 비율(%)
경남	2,732	6.80	2,378	354	87.0	13.0
제주	1,220	3.04	280	940	23.0	77.0
평균	2,363	-	1,950	412	80.8	19.2
합계	40,163	100	33,151	7,012	82.5	17.5

출처: 김태진·이병일·김정현(2023: 12)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 2. 2023년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 [표 2-4]는 2023년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으로써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총 제개정건수는 33,706건이고 제정건수 8,538건, 개정건수 25,168건임
-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제정건수보다 개정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순으로 제개정 건수가 많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개정이 총1건(제정건수 1건)으로 확인됨

표 2-4 | 2023년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지역	제정건수	개정건수	합계
강원	474	1,560	2,034
경기	1,329	3,856	5,185
경남	646	2,051	2,697
경북	675	1,863	2,538
전남	985	2,761	3,746
전북	514	2,135	2,649
충남	581	2,077	2,658
충북	203	827	1,030
광주	137	535	672
대구	315	793	1,108
대전	239	936	1,175
부산	730	1,308	2,038

지역	제정건수	개정건수	합계
서울	990	2,429	3,419
세종	1	-	1
울산	207	606	813
인천	431	1,087	1,518
제주	81	344	425
합계	8,538	25,168	33,706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24.3.기준)

### 3. 2023년 규제등록 사유 및 규제등록률 현황

- [표 2-5]는 자치법규 등록사유 현황으로 '신설', '강화', '완화'로 구분되어 있음
  - 등록된 규제는 총 771건이고 신설은 358건, 강화는 116건, 완화는 295건임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설 64건, 강화 30건, 완화는 82건으로 총176건 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신설 294건, 강화 86건, 완화는 213건으로 총 593건임
- 규제등록률은 [표 2-5]의 제개정 현황 중 등록규제들의 비율임
  - 전국의 평균 규제등록률은 2.3%로 매우 저조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제등록률은 10.1%로 가장 높은 등록률로 확인되고 대구광역시(5.8%), 인천광역시(4.6%), 강원특별자치도·충청남도(4.0%)순임
  - 세종특별자치시(0.0%), 대전광역시(0.3%), 서울특별시(0.6%) 순으로 규제 등록률이 적음

[표 2-5] 2023년 자치법규 등록사유 현황

지역	광역			기초			합계	규제등록률(%) 규제등록 수 /제개정 수
	신설	강화	완화	신설	강화	완화		
강원	21	-	1	43	12	4	81	4.0
경기	-	-	-	63	33	35	131	2.5
경남	-	-	3	21	6	63	93	3.4

지역	광역			기초			합계	규제등록률(%) 규제등록 수 /제개정 수
	신설	강화	완화	신설	강화	완화		
경북	-	-	-	7	8	19	34	1.3
전남	-	-	-	13	2	25	40	1.1
전북	3	-	3	16	5	9	36	1.4
충남	1	1	1	38	6	16	63	2.4
충북	2	-	2	20	4	11	41	4.0
광주	6	-	-	1	-	2	9	1.3
대구	8	5	29	18	2	2	64	5.8
대전	1	-	-	1	-	1	3	0.3
부산	3	4	-	13	-	-	20	1.0
서울	3	3	-	3	1	10	20	0.6
세종	-	-	-	-	-	-	-	0.0
울산	5	1	11	2	1	3	23	2.8
인천	4	-	12	35	6	13	70	4.6
제주	7	16	20	-	-	-	43	10.1
합계	64	30	82	294	86	213	771	2.3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24.3.기준)

#### 4.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현황

- [표 2-6]은 2023년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현황으로 규제등록시 규제영향 분석서의 작성여부 건수와 해당 지자체의 표준양식 유무 현황을 나타냄
  - 17개 광역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건수는 46건 이고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 특별자치도 총 6개의 지역에 표준양식이 있음
  -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건수는 319건 이고 84개 지역에 표준양식이 있음
  -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서 양식의 내용이 상이함([그림2-1] 참조)

-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률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건수와 규제등록 수의 비율을 나타냄
- 부산광역시가 85%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80%), 전라북도(69.4%)순으로 높음

| 표 2-6 | 2023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현황

지역	광역		기초		합계		작성률(%) 작성건 수 /규제등록 수
	작성건수	표준양식 유무	작성건수	표준양식 유무(건)	작성건수	표준양식 유무(건)	
강원	-	X	31	8	31	8	38.3
경기	-	○	83	17	83	18	63.4
경남	-	X	26	7	26	7	28.0
경북	-	X	13	3	13	3	38.2
전남	-	X	32	8	32	8	80.0
전북	3	○	22	7	25	8	69.4
충남	-	X	20	8	20	8	31.7
충북	-	X	16	3	16	3	39.0
광주	5	X	0	1	5	1	55.6
대구	13	○	20	5	33	6	51.6
대전	1	○	1	3	2	4	66.7
부산	7	X	10	8	17	8	85.0
서울	6	○	1	6	7	7	35.0
세종	1	X	-	-	1	1	-
울산	6	X	1	-	7	-	30.4
인천	4	X	43	-	47	-	67.1
제주	-	○	-	-	-	1	-
합계	46	6	319	84	365	90	47.3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24.3.기준)

그림 2-1 |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양식(위: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경기도)

<p>[별지 제3호서식] <span style="float: right;">(1쪽 앞)</span></p> <p style="text-align: center;"><b>규제영향분석서</b> (제5조제1항 관련)</p> <p><b>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1. 등록번호</td> <td colspan="4">3. 구 분</td> </tr> <tr> <td>2. 규제사무명</td> <td>신설</td> <td>강화</td> <td>완화</td> <td>제지</td> </tr> <tr> <td>4. 소관부서 및 책임자</td> <td colspan="4"></td> </tr> <tr> <td>5. 근거법령등</td> <td colspan="4"></td> </tr> <tr> <td>6. 규제 근거의 분류</td> <td colspan="4"> <input type="checkbox"/> 제주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input type="checkbox"/> 개별법 위임 규제 ( )  <input type="checkbox"/> 제주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 규제 ( )         </td> </tr> <tr> <td>7. 중원 규제의 내용</td> <td colspan="4">○ -</td> </tr> <tr> <td>8. 규제의 신설 (반과) 내용</td> <td colspan="4">○ -</td> </tr> <tr> <td>9. 기타</td> <td colspan="4">○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지))</p>	1. 등록번호	3. 구 분				2. 규제사무명	신설	강화	완화	제지	4. 소관부서 및 책임자					5. 근거법령등					6. 규제 근거의 분류	<input type="checkbox"/> 제주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input type="checkbox"/> 개별법 위임 규제 ( ) <input type="checkbox"/> 제주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 규제 ( )				7. 중원 규제의 내용	○ -				8. 규제의 신설 (반과) 내용	○ -				9. 기타	○ -				<p><b>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제 신설·변경의 필요성</li> <li>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규제 근거 법령 등 관련 법령 조문 발췌</li> <li>-</li> <li>나. 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 등의 현황 및 규모 등</li> <li>-</li> </ul> </li> <li>3. 규제 신설·변경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 실태</li> <li>-</li> <li>나. 관련 규제에 대한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제시 의견 및 의견 수용 여부</li> <li>-</li> <li>다. 규제 신설·변경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li> <li>-</li> </ul> </li> <li>4. 규제 신설·변경에 따라 필요한 행정기구·인력·예산 및 그 확보 방안</li> <li>5. 그 밖의 관련 참고자료 등</li> </ol>
1. 등록번호	3. 구 분																																								
2. 규제사무명	신설	강화	완화	제지																																					
4. 소관부서 및 책임자																																									
5. 근거법령등																																									
6. 규제 근거의 분류	<input type="checkbox"/> 제주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input type="checkbox"/> 개별법 위임 규제 ( ) <input type="checkbox"/> 제주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 규제 ( )																																								
7. 중원 규제의 내용	○ -																																								
8. 규제의 신설 (반과) 내용	○ -																																								
9. 기타	○ -																																								

<p style="text-align: center;"><b>규제심사요청서</b></p> <p><b>1. 분석대상규제의 개요</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가. 규제사무명</td> <td colspan="4"></td> </tr> <tr> <td>나. 구분</td> <td>신설</td> <td></td> <td>강화</td> <td>완화</td> </tr> <tr> <td>다. 소관부서명 및 직 성자 및 인적사항</td> <td colspan="4"></td> </tr> <tr> <td>라. 근거법령 등</td> <td colspan="4"></td> </tr> <tr> <td>마. 관련규제 수</td> <td colspan="4"></td> </tr> <tr> <td>바.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td> <td colspan="4"></td> </tr> <tr> <td>사.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규제의 내용</td> <td colspan="4"></td> </tr> </table> <p><b>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b></p> <p>가.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li> <li>(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li> <li>(3) 규제의 목표설정</li> </ol> <p>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업 단체 등의 반대 및 그 밖의 사회적 제약요소</li> <li>(2) 기술수준 및 그 밖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li> </ol> <p>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의 여부</li> <li>(2)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li> <li>(3)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li> </ol> <p>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p>	가. 규제사무명					나. 구분	신설		강화	완화	다. 소관부서명 및 직 성자 및 인적사항					라. 근거법령 등					마. 관련규제 수					바.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사.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규제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li> <li>(2)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li> <li>(3)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li> </ol> <p>마.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li> <li>(2)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li> </ol> <p>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의 용이성</li> <li>(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li> </ol> <p>사.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소요액의 판단</li> <li>(2) 기존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지의 여부</li> </ol> <p>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등의 적정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li> <li>(2)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li> </ol> <p>3. 자체심사의견</p> <p>4. 규제의 존속기한</p> <p>5.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p> <p>[작성시 유의사항]</p> <p>①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p>
가. 규제사무명																																				
나. 구분	신설		강화	완화																																
다. 소관부서명 및 직 성자 및 인적사항																																				
라. 근거법령 등																																				
마. 관련규제 수																																				
바.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사.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규제의 내용																																				

## 5.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근거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근거법규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총14개 지역(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으로 확인됨
  -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본청과 기초지자체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근거 조문이 부재함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근거법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 그 외에는 「행정규제 기본조례」, 「법무행정 처리규정」 등이 있음

표 2-7 | 2023년 규제영향분석서 관련 법규 현황

지역	광역	기초	합계
강원	1	3	4
경기	1	20	21
경남	1	8	9
경북	1	7	8
전남	1	10	11
전북	1	7	8
충남	1	6	7
충북	-	4	4
광주	1	3	4
대구	1	2	3
대전	1	4	5
부산	1	6	7
서울	1	13	14
세종	1	-	1
울산	-	1	1
인천	-	-	-
제주	1	-	1
합계	14	94	108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24.3.기준)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규제는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규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함
  -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의 한계점을 초래함
- 따라서 등록이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함
  - 특히 행정규제와 비규제, 행정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 미등록 규제를 발굴함에 있어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기반으로 정비가 필요함
- 현재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신설과 강화를 위한 규제영향분석 의무 법령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법규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지 않는 지자체도 존재하며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언급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 내용도 각기 상이함
  -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분석서의 표준안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지자체별 표준안 분석내용은 차이가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작성매뉴얼은 행안부의 「자치법규 규제업무 매뉴얼」에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양식에 기반하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 지자체 차원에서 작성가능한 범위가 아닌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자치법규의 품질제고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규제영향분석서 표준안 개발이 필요하고 표준안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성방식을 제시해야 함
  - 규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시스템과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함

# 제 3 장

## 규제영향분석의 개념과 사례

제1절 규제영향분석 의미  
및 작성방법

제2절 해외사례 검토

제3절 국내사례 검토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03 규제영향분석의 개념과 사례

## 제1절 규제영향분석 의미 및 작성방법

### 1. 규제영향분석 의미

#### □ 개념

-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은 규제담당자가 제기된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 및 비규제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대안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제 의사결정 수단을 의미함(국무조정실, 2023: 2)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함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민 일상생활, 사회·경제·행정 등에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다양한 영향을 객관적 및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사전에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함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관리 체계에서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 중 핵심 제도이며, 규제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거나 규제의 도입이 시급한 사안을

제외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규제의 영향을 예측 및 분석하도록 함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법안의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메커니즘으로 대다수의 OECD 가입국에서 규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그 외 많은 국가에서도 활용되고 있음(OECD, 2020)
  - 규제영향분석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와 규제를 실시하는 방법을 정책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함
  - 또한, 정책 입안자들이 규제에 의한 비용 부담이 편익보다 큰 경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정부와 사회에서 간과하는 규제에도 사회적 편익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함(OECD, 2020)

#### □ 분석 대상

- 규제영향분석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강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함(「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행정규제(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법령등”을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으로 정의함
-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사무 및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안에 관한 사무, 군사 및 병역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등은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됨(「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 □ 절차

- 중앙행정기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실시하여야 하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의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의 내용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작성 및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한 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계량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지만, 계량화된 자료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서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작성이 가능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내용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해야 함
  - 이와 함께, 국민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해 보완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함(「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자체심사를 통해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함
- 자체심사를 거친 규제는 규제혁신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중요규제와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비중요규제)를 결정함
  - 중요규제 및 비중요규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함(「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 제1항)

## □ 수행 기준

- OECD는 성공적인 규제영향분석 수행을 위한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함(OECD, 2020)
  - 첫째, 규제형성 과정의 시작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 수행
  - 둘째, 규제 개선안은 현재의 문제와 규제 실시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제시

- 셋째, 규제영향분석 수행시 비규제대안을 포함한 잠재적인 모든 대안을 포함하여 평가
  - 넷째, 규제와 관련된 모든 잠재적인 직·간접적인 비용과 편익을 평가
  - 다섯째, 가용가능한 모든 근거자료 제시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수행
  - 여섯째,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소통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 및 전달
- 이와 같은 규제영향분석 등의 입법 과정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방법은 법규 제정 과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 및 지연을 방지하고, 입법 이후에도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박균성, 2009)
- 규제영향분석은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도구 및 국민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합의를 형성하는 도구의 역할을 수행함(한귀현, 2016)
  - 이와 함께, 증거기반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으로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OECD, 2020)
  - 마지막으로, 규제정책 입법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은 정책의 질을 개선한다는 실제적인 측면과 정책 입안 및 입법 절차 개선, 평가의 중립성, 행정재량 통제 등 절차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한귀현, 2016)

## □ 목표

- 규제영향분석은 크게 네 가지 목표가 존재함
- 첫째,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좋은 규제를 제시함
    - 규제대안의 비용 및 편익 등 다양한 영향을 객관적 및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함
  - 둘째,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 품질 제고임

- 규제는 내용에 따라 사회 및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 규제 또는 비규제대안의 비교 및 검토를 통해 규제의 부작용 및 역효과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높은 품질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
- 셋째, 민간부분에서 혁신 및 창의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 예방함
- 규제에 따른 부담 양산, 혁신 및 창의적인 경제활동 저해, 문제해결 어려움 등 불필요 및 비효과적인 규제를 사전에 방지함
- 넷째, 규제자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역량을 강화함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비규제대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 검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규제자의 규제대안 설계의 역량을 강화함(국무조정실, 2023: 6)

##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

### □ 작성유형

-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사회 및 경제적 효과와 쟁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간이형과 표준형으로 작성함
  -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작성함
    - 행정제재처분, 상위법 위임에 의한 경미한 내용, 제출이 의무화되는 서류 내용의 세분화 및 구체화, 수익적 행정처분 관련 규제 및 절차에 대한 내용
  -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는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신설 및 강화되는 행정규제에 대해 작성함(국무조정실, 2023: 16)
- 표준형과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는 유형에 따라 작성 항목과 방법이 다름
  -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규제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일 대안만 제시하여 검토하며,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현행유지안과 다양한 규제대안은 생략이 가능함

- 이와 함께, 첫 번째 규제 대안은 비용·편익분석 수행시 계량적 분석을 생략하고 정성적인 분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성분석시 규제의 대상인 피규제자 규모 및 수를 예측하여 작성함
-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영향분석서 구성 및 세부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을 모두 작성함
- 하지만, 비용·편익분석 수행시 계량적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계량적 분석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정성적인 방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국무조정실, 2023: 16)

□ 구성 및 세부항목

- 규제영향분석서는 표지인 규제개요와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실효성, 추진계획 및 종합계획으로 구성됨(국무조정실, 2023: 17-18)

【표 3-1】 규제영향분석서 구성 및 세부항목

구성	세부항목	
표지 (규제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사무명</li> <li>• 규제조문</li> <li>• 유형</li> <li>• 위임법령</li> <li>•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li> <li>• 입법예고</li> <li>•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li> <li>• 규제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목표 및 이해관계자</li> <li>• 영향평가여부</li> <li>• 비용·편익분석</li> <li>•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li> <li>• 일몰설정여부 등</li> <li>• 비용감축제</li> <li>• 신규조문대비표</li> <li>• 규제정비계획</li> </ul>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개입 필요성 및 추진배경</li> <li>• 대안검토 및 선택</li> <li>• 규제의 목표</li> </ul>	
Ⅱ. 규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li> <li>• 비용·편익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li> <li>•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li> </ul>
Ⅲ. 규제의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집행 가능성</li> <li>• 규제의 순응도</li> </ul>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결론</li> <li>• 향후 평가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 경과</li> <li>• 규제정비계획</li> </ul>

자료: 국무조정실(2023: 17-18) 재구성

## □ 표지(규제개요) 항목별 작성방법

- 규제개요에는 규제사무명, 규제조문, 위임법령, 유형, 입법예고,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규제내용,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비용·편익분석, 영향평가 여부, 일몰설정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비용감축제, 규제 정비계획, 신규조문 대비표가 포함되어야 함(국무조정실, 2023: 21-22)

【표 3-2】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개요-표지)

세부항목	주요내용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규제조문	• 규제 근거 법령 또는 고시 등 명칭, 조항
위임법령	• 규제 근거 상위 위임법령 등 명칭, 조항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유형	• 신설 및 강화
정부개입 필요성 및 추진배경	• 규제 신설 또는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 • 문제의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경위
규제의 내용	• 구체적인 규제사무 내용
이해관계자 및 피규제집단	•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 • 직접적인 규제 대상인 피규제자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를 통한 달성 목표 및 기대효과
비용·편익분석	• 규제 비용·편익분석 요약
일몰 설정여부 등	• 규제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 사유 등 설정
영향평가여부	• 기술, 경쟁, 중소기업영향평가 시행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여부
비용감축제	• 피규제기업 및 소상공인 등 사업 활동 유발 직접순비용 • 규제비용감축제 적용여부
규제정비계획	•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의 규제 정비 계획
신규조문 대비표	• 기존 규제 및 신설, 강화 규제의 법령 조문 대비표

자료: 국무조정실(2023: 21-22) 재구성

##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항목별 작성방법

-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에서는 세부항목에 추진배경과 함께 정부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대안 검토 내용, 규제대안 선택, 규제목표가 포함됨
- 규제의 추진배경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회·경제적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작성함
  - 현황은 정부가 추가적인 개입 또는 결정이 없는 상태로 현재 상태를 의미함
  - 문제점은 해결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현상을 의미함
-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민간에 의한 자율적 기능 또는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정부가 추가적 또는 신규로 개입해야 할 이유를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 시장실패 또는 기존 규제 실패, 기타 재해 또는 위험 등 각종 요인에 의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역할을 중심으로 작성함
  - 이와 함께, 비규제대안이 충분하지 않거나 문제해결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작성함
- 규제의 대안선택에는 대안 비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대안선택 및 근거를 작성함
  - 대안 비교는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다양한 규제대안의 대안명, 대안별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함
  -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행 유지를 포함한 규제 대안들의 장점 및 단점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다양한 규제 대안의 내용을 비교함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통해 규제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피규제자, 전문가 또는 관계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정리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대안을 선택한 이유를 세부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함
- 규제 목표는 규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황을 작성함(국무조정실, 2023: 23-29)

| 표 3-3 |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세부항목	주요내용
정부개입 필요성 및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가 개입하여야 할 만큼 문제가 중대하고, 시급히 규제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 등 정부개입의 필요성 검토</li> <li>규제 신설 또는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회 및 경제적 배경, 경위, 관련 현황자료 등 작성</li> </ul>
규제검토 및 대안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대안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규제대안 제시 및 규제대안 비교표(규제 대안별 장·단점 등)</li> </ul> </li> <li>이해관계자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 결과</li> </ul> </li> <li>규제대안 선택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된 규제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자료 포함)</li> </ul> </li> </ul>
규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된 규제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상황</li> </ul>

자료: 국무조정실(2023: 23-29) 재구성

#### □ 규제의 적정성 항목별 작성방법

- 규제 적정성은 목적 및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해외 및 유사한 입법 사례, 영향평가 필요성 관련 내용, 비용·편익분석 등의 내용을 작성함
- 목적 및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은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가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내에서 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 및 기술함
  - 판단기준은 해결 대상 문제 또는 위험과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 또는 과소 개입한 지를 판단하여 규제가 적정한지, 규제 도입에 의한 비용이 편익보다 큰지 등이 있음
-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는 해당 규제와 관련된 국제기준, 주요 해외 선진국의 사례 등을 조사·비교하여 규제준수 판단을 위한 국제적 근거를 작성함
  - 유사입법 사례는 해당 규제와 유사한 타법 사례를 검토하여 비교·분석하여 규제의 수준 및 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
- 영향평가 필요성 관련 내용은 규제영향분석서 함께 고려해야 할 영향평가로 기술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필요성 여부를 양식표를 통해 선택하고, 해당 영향평가를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결과를 작성함

- 비용·편익분석은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작성함(국무조정실, 2023: 30-44)

**| 표 3-4 |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적정성)**

세부항목	주요내용
목적 및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가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내에서 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 및 기술함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 해당 규제와 관련된 국제기준, 주요 해외 선진국의 사례 등을 조사·비교하여 규제준수 판단을 위한 국제적 근거를 작성 • 유사입법 사례는 해당 규제와 유사한 타법 사례를 검토하여 비교·분석하여 규제의 수준 및 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 제시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등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방안 등 영향평가 예비분석 결과표 작성 • 일몰설정여부, 시장유인적 설계,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여부 작성
비용·편익 분석	•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자료: 국무조정실(2023: 30-44) 재구성

### □ 규제 실효성 항목별 작성방법

- 규제의 실효성은 규제 순응도 및 규제 집행가능성을 작성함
- 규제 순응도의 의미는 피규제자가 규제의 준수 가능성을 나타내며, 피규제자의 현실을 기준으로 규제의 준수 수월성을 정성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해소방안 등을 작성함
  - 유사한 분야의 규제 순응도 등을 고려하여 피규제의 규제 준수의 수준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규제 집행가능성은 행정적 및 재정적 집행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규제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 또는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규제 집행에 필요한 관리·감독 체계 등을 포함한 가능성을 검토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은 규제 집행,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의 규모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함(국무조정실, 2023: 57)

【표 3-5】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실효성)

세부항목	주요내용
규제 순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규제자 규제 준수가능성</li> </ul>
규제 집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집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지자체 등 규제 집행 담당 조직의 인력 또는 근무여건 등 규제 집행에 필요한 관리·감독 여건 검토</li> <li>-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지자체의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 및 재정 여건 등 검토</li> </ul> </li> </ul>

자료: 국무조정실(2023: 57) 재구성

#### □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항목별 작성방법

- 추진계획은 규제 도입을 위해 내부검토과정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전반적인 추진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 규제도입의 배경 및 규제 도입을 위한 절차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하고 규제 심사과정에서 재심사 등 규제대안의 변천, 수정, 보완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부적으로 작성함
- 향후 평가계획에서는 규제가 집행된 이후 규제 존속기한과 재검토기한 또는 규제의 일몰설정 등 규제의 사후평가 시점, 평가방법, 평가 지표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함
- 규제 정비계획은 규제가 신설 및 강화에 따라 발생하는 피규제자와 일반국민에게 부담되는 요소를 상쇄하기 위해 해당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포함한 타법령의 기존 규제 중 당해연도 및 전년도 등 최근에 정비를 추진한 사항 또는 1년 내 정비를 추진할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함
- 종합결론은 규제영향분석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한 종합적인 결론을 작성함

**표 3-6 |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세부항목	주요내용
추진계획	• 규제 도입을 위해 내부검토과정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 작성
향후 평가계획	• 제가 집행된 이후 규제 존속기한과 재검토키한 또는 규제의 일몰설정 등 규제의 사후평가 시점, 평가방법, 평가 지표 등
규제정비계획	•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따른 규제 부담을 상쇄할 목적으로 규제 정비 추진사항 또는 규제 정비 추진계획 제시
종합결론	• 규제영향분석서 종합적인 결론

자료: 국무조정실(2023: 21-22) 재구성

### □ 항목별 체크리스트

- 규제영향분석서는 작성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항목으로 문제 정의의 정확성,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목표의 정확성, 규제대안의 다양성,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규제대안 선택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 협의, 집행의 현실성, 향후 평가계획, 규제정비계획이 있음(국무조정실, 2023: 19)

**표 3-7 |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항목	주요내용
문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현황 분석 및 문제 본질, 규모, 문제 발생이유 등</li> <li>• 정확하게 수집된 정보의 활용 여부</li> <li>• 적절한 자료 활용 및 자료의 출처 명확히 제시 여부</li> </ul>
정부개입의 정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하고 불가피한지 여부</li> <li>• 기존 규제 집행에도 불구하고, 추가 규제의 필요성</li> <li>• 규제 이외의 비규제적 대안인 정부지원, 교육, 홍보 등 검토 여부</li> </ul>
규제목표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 규제의 목표의 명확성 제시 여부</li> <li>• 측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규제 성과 제시 여부</li> </ul>
규제대안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의 검토 및 비교 여부</li> <li>• 규제 강도 또는 방식의 관점에서 다양한 대안 검토 여부</li> </ul>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의 정량적 및 정성적인 비용·편익분석 여부</li> <li>•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의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여부</li> </ul>

세부항목	주요내용
규제대안 선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적 및 정량적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최적의 규제 대안 선택 여부</li> <li>• 다양한 해외사례 검토 여부 또는 국제 기준 부합 여부 검토</li> <li>• 상위법령 위임 범위 적절성 검토 여부</li> <li>• 피규제자에게 불필요한 규제 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 가중 여부 검토, 절차 등 간소화 가능성 검토 등</li> </ul>
이해관계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도입 초기부터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 여부</li> <li>• 제시된 의견 검토 및 반영, 구체적 사항 반영 여부</li> </ul>
집행의 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집행을 위한 인력 또는 예산 확보 여부</li> <li>• 규제 집행의 실효성 검토 여부</li> <li>• 피규제자 규제 순응 검토 여부</li> </ul>
향후 평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시행 후 재평가 시점 및 기준 제시 여부</li> </ul>
규제정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신설 및 강화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국민 부담 상쇄 목적인 규제 정비 내용 및 추진일정 등 명확히 제시 여부</li> </ul>

자료: 국무조정실(2023: 19) 재구성

## 제2절 해외사례 검토

### 1. 영국

#### 1) 개요

##### □ 규제체계 및 규제영향분석 발전 과정

- 영국은 1985년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도입을 통해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비용을 분석함
  - 초기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은 더 낮은 비용으로 규제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지만, 해당 대안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
  - 하지만, 1980년대 영국의 규제순응비용 분석은 비일관적이고 광범위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님(임원혁 외, 2014: 31; 안혁근, 2014: 87)
- 영국은 1990년대 초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순응비용 분석의 품질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민간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순응비용 분석을 강제하여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추진함
  - 이후 1998년 모든 주요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 실시가 의무화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규제순응비용 분석과 함께,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의무화됨
  - 하지만,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은 대안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은 점, 비용·편익 분석의 자료 제공 부족, 규제영향분석의 증거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 도입의 장애물로 인식됨(임원혁 외, 2014: 31-32; 안혁근, 2014: 87)
- 2006년 영국은 규제영향분석의 문제점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A) 제도로 개편함
  - 영향평가 제도로 개편을 통해 비용·편익분석의 질적 향상 및 분석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여, 2007년 11월부터 영향평가가 전면 시행됨(임원혁 외, 2014: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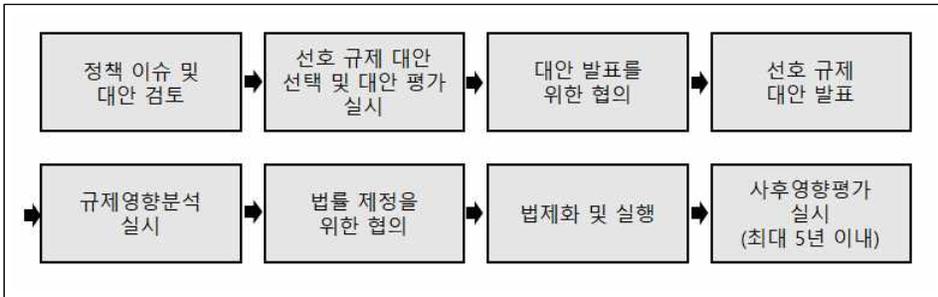
- 2010년 영국은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영국의 규제체계는 규제정책위원회(RPC)와 규제개선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을 중심으로 “더 나은 규제 프레임워크(Better Regulation Framework: BRF)”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음(이현정 외, 2024: 94)
- 2015년 SBEE법(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소상공인, 기업, 고용법)이 제정되면서 규제개선국(BRE)은 EANDCB(연간균등순응비용, Equivalent Annual Net Direct Cost to Business) 개념을 도입하여 민간에서 감수할 규제 비용 총량과 규제 실행에 따른 이익 총량을 계산하고, 그 계산한 내용과 정부의 탈규제 역량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최적의 규제 방안 마련을 추진함
  - 이후 2020년 1월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 EU에서 탈퇴하면서 영국의 규제 체계는 크게 변화함(이현정 외, 2024: 75-76)

#### □ BRF 개혁

- 2023년 9월 영국 DBT(Department for Business & Trade)는 새롭게 개혁된 규제 프레임워크(Better Regulation Framework: BRF)를 발표함
  -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혁 목적은 규제 대안에 대한 고려 및 활용 확대 추구, 규제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 제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추진, 실행된 규제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를 위해 개혁됨
  - 기존 규제 체계에서 새롭게 개혁된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9월 초부터 새롭게 개혁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용됨(DBT, 2023: 3-4)
- 영국의 개혁된 규제형성 및 평가 과정은 총 8단계로 추진됨
  - 첫 번째 단계는 정책 이슈 및 대안 검토(Policy issue and Options Appraisal),

두 번째 단계는 선호 규제 대안 선택 및 대안 분석 실시(Preferred regulatory option identified and Options Assessment produced), 세 번째 단계는 대안 발표를 위한 협의(Collective agreement to announce), 네 번째 단계는 선호 규제 대안 발표(Announce preferred regulatory option), 다섯 번째 단계는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실시, 여섯 번째 단계는 법률 제정을 위한 협의(Collective agreement to legislate), 일곱 번째 단계는 법제화 및 실행(Legislation & Implementation), 마지막 단계는 최대 5년 이내 사후영향평가(Post Implementation Review) 실시로 추진됨(DBT, 2023: 11)

|그림 3-1| 영국 규제형성 및 평가 과정



자료: DBT(2023: 11)

○ 기존 규제형성 및 평가 과정과 비교하면 세 가지 부분이 개선됨

- 첫째, 두 번째 단계인 선호 규제 대안 선택 및 대안 분석 실시에서 과거에는 규제정책위원회(RPC)가 규제영향평가를 선택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개혁된 과정에서는 대안 분석(Option Assessment: OA)가 도입되고 규제정책위원회의 검토가 의무화됨
- 둘째, 다섯 번째 단계인 규제영향분석 실시 단계에서 과거에는 규제정책위원회의 검토가 필수였으나 새로운 과정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대안 분석의 검토가 완료되었으므로, 규제정책위원회의 검토를 의무화하지 않고 특정 기준에 충족될 경우 규제정책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선됨

- 셋째, 사후영향평가의 강화로 과거에는 사후영향평가를 규제가 실행된 후 5년 후에 실시되었으나, 새로운 과정에서는 필요시 5년 이내 최적의 시점을 정하여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DBT, 2023: 11)

## □ 영향평가 기준 변경

- 기존 영향평가의 기준은 EANDCB(연간균등순응비용)이 £5M(million) 내외였으나, 2023년 BRF 개혁을 통해 EANDCB(연간균등순응비용)이 £10M 내외로 변경됨
  - 과거에는 EANDCB(연간균등순응비용)이 £5M 내외에 대해 RPC의 검토가 의무였으나, 영향평가의 기준이 상향되면서 RPC의 검토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영향평가의 부담이 감소함
  - 다만, EANDCB(연간균등순응비용)이 £10M 내외 및 전체 생활 후생에 미치는 영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RPC의 검토가 이루어짐(DBT, 2023: 8)

## 2) 작성방법<sup>9)10)</sup>

### □ 구성 및 작성 내용

-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서(대안 분석 포함)의 구성은 ‘표지’, ‘대안 요약’, ‘규제 근거’, ‘개입을 위한 SMART 목표’, ‘대안 및 SMART 목표 설명’, ‘대안 요약’, ‘최종 대안 설명’, ‘규제 점수표’, ‘대안 검토 및 평가’, ‘규제준수 비용 최소화’, ‘기타’로 구성되었으며, 추가로 요약본인 비용-편익분석으로 구성됨
  - ‘표지’와 ‘기타’를 제외하면 총 10가지로 구성됨

9) 자료: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emplate(2023 reforms), Options Assessment template (2023 reform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mpact-assessment-template-for-government-policies>(자료검색일: 2024.09.12.)

10) 2023년 9월 영국은 BRF 개혁을 통해 규제영향평가가 대안 분석(OA)과 규제영향분석(RIA)로 구분됨. 다만, 대안 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영향분석 마지막 부분의 별첨 자료를 제외하고 동일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 작성 항목 및 양식을 중심으로 작성함

- 다만, 규제영향분석에는 별첨 자료인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총 11가지로 구성됨
- 표지에는 규제명, 제출 날짜, 연락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대안 요약에는 시행하고자 하는 규제 및 대안에 대해 요약하는 것으로 구성됨
  - 대안 요약에는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할 항목이 정해지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구성됨
- 규제 근거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설명과 규제를 통한 개입의 근거를 작성함
  - 규제 근거에서 작성해야 할 세부 내용으로는 문제 현황, 문제의 근거, 정부 개입의 필요성 등이 있음
- 개입을 위한 SMART 목표에서는 규제의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함
  - 세부적으로 규제의 효과, 정부 개입의 결과, 고려해야 할 다른 지표, 규제의 목표와 정부 목표와의 일치성 등을 작성함
- 대안 및 SMART 목표 설명에서는 대안의 효과, 목표 달성 방법 등을 작성함
  - 세부적으로 규제의 목표 달성 방법, 기존 규제와의 차이점 등을 작성함
- 대안 요약에서는 다른 대안과의 차별성, 기업에 대한 영향에 관한 내용을 작성함
  - 세부적으로 다양한 다른 대안을 설명하고, 그 대안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설명, 중소기업 및 직원 수가 49~500명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작성함
- 최종 대안 설명에서는 최종 대안의 선정 근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작성함
  - 세부적으로는 최종 대안의 선정 근거, 대안이 중소기업 및 직원 수가 49~500명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안이 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경우 대비책 등을 작성함
- 규제 점수표(Regulatory scorecard)는 2023년 9월 BRF 개혁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영향 및 정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임

- 첫 번째 평가 부분은 사회 전반적인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영향에 대한 평가로 사회복지, 기업 영향, 가계 영향을 평가함
- 두 번째 평가 부분은 정부에 대한 영향 평가로 사업환경, 국제적 고려사항, 자연환경 영향 등을 평가함<sup>11)</sup>
- 대안 검토 및 평가에서는 규제가 시행된 이후 사후영향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함
  - 세부적으로 사후영향평가(Post Implementation Review: PIR)을 언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 정책 수정 여부 평가, 정책목표 달성 등을 검토하여 작성함
- 규제준수 비용 최소화에서는 규제준수에 대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작성함
  - 세부적으로 국민 및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작성함
- 기타는 규제 담당 기관, 문의사항 연락처 등을 작성함
- 요약본인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비용-편익분석 결과, 순현재사회적 가치, 공공 부문 재정비용, 정성적 비용, 주요 위험 요소 등을 작성함
  - 다만,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현재 상황에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최소한의 규제 시행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최소한의 규제 시행이 아닌 일반적인) 규제 시행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작성함
- 마지막으로 규제영향분석에는 대안분석과 달리 요약본 이후 별첨 자료로 규제 영향분석의 세부 내용을 15~20페이지 수준으로 작성함
  - 별첨 자료에는 정책 목표, 경제적 영향, 기업·가정·무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작성함

11) 규제 점수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후술하는 규제 점수표 세부내용 참조

【 표 3-8 】 영국 규제영향분석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내용	
표지	• 규제명, 제출 날짜, 연락처 등	
대안 요약	• 규제 대안 요약(자유형식)	
규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현황 및 근거</li> <li>• 정부 개입 필요성 및 정부 미개입 시 발생할 피해</li> <li>• 기존 규제의 문제점</li> </ul>	
개입을 위한 SMART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목적 및 예상 효과</li> <li>• 결과를 구체적(Specific), 측정 가능(Measurable), 달성 가능(Achievable), 현실적(Realistic), 시간 제한이 있는(Time-limited) 방식으로 작성</li> <li>• 고려해야 할 다른 지표 및 사항 여부 검토</li> <li>• 규제와 정부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검토 결과</li> </ul>	
대안 및 SMART 목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목표 달성 방법</li> <li>• 기존 규제와의 차별성</li> </ul>	
대안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규제(대안) 외 검토된 다른 대안 내용</li> <li>•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중소기업 및 직원 수 49~500명 기업)</li> </ul>	
최종 대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대안 선정 근거</li> <li>•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중소기업 및 직원 수 49~500명 기업)</li> <li>•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책</li> </ul>	
규제 점수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전반적인 영향 및 이해관계자 영향평가</li> <li>• 정부에 대한 영향평가</li> <li>• 4단계로 평가(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불확실)</li> </ul>	
대안 검토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영향평가(PIR) 수행계획(최대 5년 이내)</li> <li>• 규제 목표달성 평가 방법</li> <li>• 규제 수정 여부 평가 방법</li> </ul>	
규제준수 비용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준수 비용 최소화 방안</li> <li>• 국민 및 기업 대상 행정부담 최소화 방안</li> </ul>	
기타	• 규제담당기관, 연락처 등	
요약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편익분석결과(순현재사회적 가치, 공공부문 재정비용, 위험 요소 등 포함)</li> <li>• 현재 상황, 최소한 규제 시행, 규제 시행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비교</li> </ul>	
별첨	문제 현황 및 정부 개입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개입의 영향</li> <li>• 정부 개입의 필요성(시장, 혁신 등 정부 개입 외 문제 해결 가능성 검토)</li> </ul>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시행에 따른 변화</li> <li>• 성과 지표</li> </ul>

작성항목	내용	
이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시행 방안</li> <li>• 규제 시행 일정 및 책임 기관</li> </ul>	
행정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전적 및 비금전적 비용 및 혜택</li> </ul>	
경제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시행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정책적 및 행정적 비용 포함)</li> </ul>	
기업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시행이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li> </ul>	
가정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시행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li> </ul>	
무역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시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li> <li>• 규제와 국제 의무화의 정합성 검토</li> </ul>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emplate\(2023 refor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gulatory-Impact-Assessment-template(2023-reforms))

#### □ 규제 점수표(Regulatory scorecard)

- 규제 점수표는 2023년 9월 BRF 개혁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에 새롭게 포함된 항목으로 사회 전반적 및 정부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영향을 평가함
  - 사회 전반적인 영향 및 정부에 대한 영향을 총 4가지 단계로 평가함
  - 녹색은 긍정적인 영향, 빨간색은 부정적인 영향, 주황색은 중립, 파란색을 불확실함으로 평가함
- 사회 전반적인 영향은 이해관계자의 영향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전체 복지에 대한 영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규제점수표 결과의 반영은 시행 후 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s, PIRs)를 통해 규제 비용 분석, 규제 결과 파악, 정책 조정을 위해 활용됨
  - 규제 시행 이후 점수표에 명시된 기대치와 비교하여 규제의 실제 효과와 초기 비용 및 이익 추정치를 분석함.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 규제 점수 지표에 대한 연례 검토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와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통합하여 정확한 규제 환경 파악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식별하여 유지하거나 수정하도록 결정하는 정책 조정을 위해 활용
- 규제가 부정적 평가(빨간색)를 받는 경우 재평가 또는 철회 요청

**| 표 3-9 | 영국 규제 점수표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방법
사회 전반적 영향 (이해관계자 영향)	전체 복지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 영향</li> <li>• 사회 배분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li> </ul>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불확실 중 택1
	기업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에 대한 전반적 영향</li> <li>• 기업의 수익성 영향</li> <li>• 기업의 비수익성 관련 영향</li> </ul>	
	가계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에 대한 전반적 영향</li> <li>• 가계의 수익성 영향</li> <li>• 가계의 비수익성 관련 영향</li> </ul>	
정부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환경 영향(정책 용이성 영향)</li> <li>• 국제적 고려사항</li> <li>• 자연환경 고려사항(탄소중립 정책 등)</li> </ul>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gulatory-Impact-Assessment-template\(2023-refor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gulatory-Impact-Assessment-template(2023-reforms))

**| 그림 3-2 | 영국 규제 점수표 양식(일부분)**

(1) Overall impacts on total welfare		Directional rating Note: Below are examples only
<b>Description of overall expected impact</b>	Provide a qualitative description of the overall expected impact of the regulation on social welfare. Where this is driven by groups other than businesses or households, please specify.	<b>Uncertain</b> Based on all impacts (incl. non-monetised)
<b>Monetised impacts</b>	Total £ NPSV (with ranges) Add separate lines for large impacts which net off Please list any significant monetised costs/benefits not covered below	<b>Negative</b> Based on likely ENPSV
<b>Non-monetised impacts</b>	Please list any significant non-monetised costs/benefits not covered below	Choose an item.
<b>Any significant or adverse distributional impacts?</b>	Yes/No If there are distributional impacts not flagged below for businesses and households, please specify.	Choose an item.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gulatory-Impact-Assessment-template\(2023-refor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gulatory-Impact-Assessment-template(2023-reforms))

## 2. 호주

### 1) 개요

#### □ 규제영향분석 발전 과정<sup>12)</sup>

- 호주의 규제개혁은 의사결정의 품질 제고, 민간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함
  - 1980~90년대는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정교화 및 규제개혁 조직 발전을 강조하였으며, 2010년대에는 정량적인 규제 관리, 비용측정 및 총량관리를 중심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함(이현정 외, 2024: 112)
- 호주는 1985년 (당시)산업기술상업부(Department of Industry, Technology and Commerce) 내 기업규제평가부(BRRU)를 설립을 시작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함
  - 이후 호주는 1986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여, OECD 국가 중 규제영향 분석을 일찍 도입한 국가로 평가됨(최유성 외, 2013: 257)
  - 1989년 기업규제평가부(BRRU)가 산업위원회로 이전하면서 규제평가국(Office of Regulation Review: ORR)으로 변경됨
- 1996년 산업위원회는 규제의 품질 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 규제영향분석이 강화됨
  - 1997년 규제영향분석에는 규제영향진술서(Regulation Impact Statement: RIS)와 7가지 사항(문제정의, 목표, 옵션, 영향, 협의, 결론, 실행 및 검토)을 다루도록 강화됨
- 2006년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준수비용 정량화 및 협의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2007년 규제영향분석이 강화됨
  - 2007년 규제평가국(ORR)이 OBPR(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으로 변경됨

12) 자료: <https://oia.pmc.gov.au/about/ria-framework-key-changes-over-time>  
(자료검색일: 2024.09.20.)

- 2010년 규제영향분석이 OBPR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시작함
- 2012년 규제영향분석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3년 두 가지의 사항이 강화됨
  - 규제 도입 기관(의사결정자)은 규제 결정을 위해 문제 현황검토, 목표 및 대안을 설정하며, 1997년 강화된 7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강화됨
- 2014년 규제영향분석이 신규로 도입되는 규제에 의무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규제사후영향분석을 도입함
- 2022년 OBPR은 OIA(Office of Impact Analysis)로 변경되었으며, 이와 함께, 규제영향분석(RIA) 및 규제영향진술서(RIS)가 영향분석(Impact Analysis: IA)으로 통합됨
  - 이후 2023년 3월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범위 명확화 및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함
  - 이와 함께, 용어가 변경되었는데, 규제(regulation) 대신 정책(polic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용어 변경을 통해 규제영향분석(RIA)에서 정책영향분석(Policy Impact Analysis: PIA)으로 변경됨<sup>13)</sup>

**| 표 3-10 | 호주 규제영향분석 발전 과정**

연도	주요내용
1985	• 산업기술상업부(Department of Industry, Technology and Commerce) 내 기업 규제평가부(BRRU) 설립
1986	• 규제영향분석 도입
1989	• 기업규제평가부(BRRU) 산업위원회로 이전 및 규제평가국(Office of Regulation Review: ORR)으로 변경
1996	• 산업위원회 규제 품질 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개선 필요성 제기
1997	• 규제영향분석 강화 • 규제영향분석 내 규제영향진술서(RIS) 도입 • 규제영향진술서 내 7가지 항목 검토(문제정의, 목표, 옵션, 영향, 협의, 결론, 실행 및 검토)

13) 단,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하부터 ‘규제영향분석’이라 표현함

연도	주요내용
1998	• 규제영향분석의 범위가 준규제까지 확대
2006	• 규제영향분석 강화를 위해 규제준수비용 정량화 및 협의 수행 필요성 강조 • 각 기관은 규제영향분석 자체적으로 평가
2007	• 규제준수비용 정량화 및 협의 수행 강조 • 규제영향분석의 범위 변경(기업, 개인 또는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실시) • 규제평가국(ORR)이 OBPR(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으로 변경
2010	• 규제영향분석 결과 OBPR 홈페이지에 공개 • 각 기관의 규제영향분석 자체적으로 평가 폐지
2013	• 규제영향분석 강화 • 규제영향분석 범위 변경(기업, 비영리 부문에 사소한 영향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규제 포함) • 규제 도입 기관(의사결정자) 규제 결정을 위해 문제 현황검토, 목표 및 대안 설정 • 규제영향진술서 내 7가지 항목 의무 작성
2014	• 규제영향분석 범위 변경(본질적으로 사소하지 않는 모든 규제 실시) • 규제사후영향분석 도입(규제영향분석이 불충분한 경우 2년 이내 실시)
2020	• OBPR에서 규제영향분석 적절성 평가
2022	• OBPR이 OIA(Office of Impact Analysis)로 변경 • 규제영향분석(RIA) 및 규제영향진술서(RIS)가 영향 분석(IA)으로 통합
2023	• 규제영향분석 강화 • 영향 분석(IA) 강화 및 범위 명확화 • 규제(regulation) 대신 정책(policy)이라는 용어로 변경 • 규제 품질 책임수준 강화

자료: <https://oia.pmc.gov.au/about/ria-framework-key-changes-over-time>

#### □ 규제영향분석 대상 및 평가기관<sup>14)</sup>

-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은 개인, 기업 또는 사회에 사소한 이상의 영향을 미쳐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정부의 모든 정책 또는 제안에 대해 실시함
  - 사소한 영향이란 개인, 기업 또는 사회에 대해 기존 규제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작은 일회성 비용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영향을 의미함

14) 자료: PM&C(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2023a). User guide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guide to policy impact analysis.

- 사소한 영향의 예시로는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 도입, 지수 연동(indexation arrangement), 낚시터(행사 등) 계·폐 일정 설정 등이 있음
  - 따라서,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의 정책 및 조치 등 넓은 범위에 대해 실시함
- 규제영향분석은 각 기관의 정책담당자가 작성하지만, 규제영향분석의 검토는 OIA에서 실시함

## 2) 작성방법

### □ 규제영향분석 과정<sup>15)</sup>

- 호주의 규제영향분석 과정은 총 3단계를 거쳐 실시됨
  - 첫 번째 단계는 예비 평가(Preliminary Assessment), 두 번째 단계는 영향 분석 준비(작성)(Prepare your Impact Analysis), 세 번째 단계는 투명성 확보(Ensuring transparency)임
- 첫 번째 단계인 예비 평가는 정책 제안에 영향분석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과정임
  - 모든 정책 제안에 영향분석의 필요성은 OIA에서 검토함
  - 정책 제안자는 7가지의 예비 평가 관련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작성하여 요약본을 OIA에 제출하면 OIA는 영향분석에 대한 분석의 정도에 대한 조언과 함께, 영향분석을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정책 제안자는 7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OIA에 전달하면 OIA는 5일 이내 영향분석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알림

---

15) 자료: PM&C(2023a). User guide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guide to policy impact analysis.

| 표 3-11 | 호주 예비 평가 관련 질문

구분	예비 평가 관련 질문
1	• 의사결정자는 누구인가?(Who will be the decision maker?)
2	• 정책문제는 무엇인가?(What is the policy problem?)
3	• 정부 조치의 목적은 무엇인가?(What are the objectives of government action?)
4	•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능한가?(What policy options are available?)
5	• 해당 정책 제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시장이나 경쟁을 포함한) (What are the likely impacts of the proposal (including whether there are any market or competition impacts?))
6	• 규제 부담 측정 체계에 따라 정책 제안에 따른 규제 비용은 얼마인가?(행정비용, 실질적 준수 비용, 지연 비용 포함) (What are the likely regulatory costs of the proposal, including administrative, substantive compliance and delay costs, as per the Regulatory Burden Measurement framework?)
7	• 주요 과정 및 일정은 어떠한가?(What are the key dates and timelines?)

자료: PM&C(2023a: 7).

- 두 번째 단계인 영향분석 준비(작성)는 영향분석의 대상과 분석 수준을 결정하고, OIA에서는 영향분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분됨
  - 호주 영향분석의 대상 및 분석 수준은 비례성의 원칙(The proportionality principle)에 따라 결정됨
  - 영향분석의 비례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해결해야 할 문제의 규모, 범위 및 심각성, 둘째, 제안된 정부 개입의 특성, 대안의 성격 및 잠재적 영향, 셋째, 정책개발 과정의 단계 및 결정의 유형을 고려함
  - 비례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검토하여 중요한 정책은 심층적인 영향분석을 실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정책은 영향분석을 완화된 기준으로 실시함
  - 중요하지 않은 정책의 영향분석은 OIA에서 1단계의 평가만 실시되지만, 정책의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높은 수준의 영향분석 실시가 필요하며, OIA에서 2단계의 평가를 실시함

- 세 번째 단계인 투명성 확보는 영향분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제안이 최종 결정되면, 최종 결정을 위한 영향분석 자료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함
  - 영향분석 자료의 공개와 함께, OIA의 의견, 영향분석 관련 추가 근거 자료 등이 함께 공개됨
  - 호주의 영향분석은 인터넷에 공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함

#### □ 구성 및 작성내용<sup>16)</sup>

- 첫 번째 단계인 예비평가(사전검토에 해당) 이후에 영향분석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 단계인 영향분석 준비(작성)에서의 주요 작성항목은 ‘표지’, ‘소개 및 요약’, ‘정책 배경 및 현황’, ‘결론 또는 요약’을 제외하고 총 7가지로 구성됨
  - 주요 작성항목 7가지는 질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할 항목으로 구성됨
- 주요 작성항목 7가지를 제외한 ‘표지’, ‘소개 및 요약’, ‘정책 배경 및 현황’, ‘결론 또는 요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함
  - 표지에는 정책 제안 제목, 정책 제안 기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함
  - 소개 및 요약은 자유양식으로 정책 제안 관련 소개 및 요약을 작성함
  - 정책 배경 및 현황은 정책 제안의 배경 및 기존 정책(또는 규제)의 문제점을 작성함
  - 결론 또는 요약은 정책 제안의 요약과 함께, 추가로 제공해야 할 정보가 있을 경우 작성함
- 주요 작성항목 7가지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자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16) 자료: PM&C(2023b). Australian government guide to policy impact analysis.  
PM&C(2023c). Impact analysis template.

- 둘째, 정책 목표는 무엇이며,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책 목표달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셋째, 어떠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였는가?
  - 넷째, 각 대안의 효과는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는가?
  - 다섯째, 정책 제안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협의하였으며,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였는가?
  - 여섯째, 다양한 정책 대안 중 가장 좋은 정책 대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일곱째, 정책 대안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 첫 번째 질문은 정책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의미함
- 세부적으로 문제 정의, 근거, 규모, 영향력을 작성하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작성함
  - 정책문제 영향의 본질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제시함
- 두 번째 질문은 모든 문제를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개입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즉, 정부의 책임성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함
- 세부적으로 정책 목표, 정책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작성함
  - 영향분석은 정책문제 해결을 통해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목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통해 최적의 정책 대안을 결정할 수 있음
- 세 번째 질문은 영향분석에서 실행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였음을 의미하며, 영향분석에서 검토한 대안의 수는 정책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결정하지만,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대안을 검토해야 함

- 세부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작성하되, 정부의 개입이 없는 대안까지 검토하여 작성함
- 네 번째 질문은 각 대안이 호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토하는 것으로 각 대안의 영향은 편익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의미함
  - 세부적으로 각 대안에 대한 명확한 편익을 제공해야 하며, 편익은 최대한 정량적인 비용을 통해 제시하여야 하지만, 정성적인 방법으로 작성이 가능함
  - 기본적인 분석방법은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며, 비용-편익분석 결과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함
- 다섯 번째 질문은 정책 대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
  - 세부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방법, 이해관계자 의견, 정책 대안과의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 등을 작성함
  - 정책 대안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을 통해 영향분석은 투명성을 강조함
- 여섯 번째 질문은 다양한 대안 중 효율성·적절성·효과성·경제성 등을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함
  - 세부적으로 각 대안의 정책목표 달성도 및 비용-편익의 균형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작성함
  - 정책 대안의 결정이 명확하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일곱 번째 질문은 제시된 정책 대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함
  - 세부적으로 두 번째 질문에서 검토한 정책 목표에 따라 정책의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계획을 작성함

| 표 3-12 | 호주 규제영향분석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내용
표지	• 정책 제안 제목, 해당 기관 정보
소개 및 요약	• (자유양식)정책 제안 관련 소개 및 요약
정책 배경 및 현황	• 정책 배경 • 기존 정책(또는 규제) 문제점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자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문제 현황, 근거 및 규모 • 현재 유지시 발생할 현상 및 근거 • 기존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할 자료 제시
정책 목표는 무엇이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책 목표달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정책 목표, 정책 예상 결과 • 정책 목표달성 방해요인 • 정부개입 근거(정부의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 입증)
어떠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였는가?	• 다양하고 실행가능한 정책 대안 검토(최소 3개 이상) • 각 정책 대안의 목표달성 가능성 검토 • 정부의 개입이 없는 대안 검토
각 대안의 효과는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는가?	• 각 대안의 효과(정량적 및 정성적) 제시 • 각 대안의 이해관계자 검토 • 비용-편익분석
정책 제안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협의하였으며,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였는가?	• 이해관계자 협의 목적 및 방법 • 이해관계자 의견 및 정책 대안 간 의견 차이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다양한 정책 대안 중 가장 좋은 정책 대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최적 정책 대안 • 의사결정 과정 • 각 대안의 정책목표 달성도 및 비용-편익분석 비교 • 정부의 정책 실행 방안
정책 대안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 사후영향평가 실시 방법 • 정책 실시 전·후 비교 방법
결론 또는 요약	• 정책 제안 요약 및 추가 자료

자료: PM&C(2023b: 14-42). PM&C(2023c).

- 세 번째 단계인 투명성 확보 단계에서는 별도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은 없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규제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는 분석의 엄격성을 높이는 동기가 됨

### 3. 미국

#### 1) 개요

##### □ 규제영향분석 발전 과정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규제심사)은 1971년 닉슨행정부에서 “Quality of Life Review”로 시작함
  - 초기 규제심사는 환경규제에 대해 기업의 관점에서 검토되었으며, 비용-편익분석은 포함되지 않음
- 실제 규제영향분석(규제심사)은 1974년 포드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행정부 모든 기관의 제안 정책, 입법 및 규칙에 대해 규제심사를 실시함
  - 제안되는 정책, 규칙 등에 대해 인플레이션 영향 평가(Inflation impact assessment)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별 행정기관에서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를 심사하기 시작함
- 카터행정부(1977~1981년)에서는 규제도입절차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규제심사를 강화함
  - 특히, 규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경제, 개인, 사회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것을 강조함
  - 하지만, 규제가 증가하여 규제준수비용도 증가하면서 강력한 규제개혁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됨
- 1981년 이후 레이건행 정부는 기존 및 향후 규제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중복 또는 상충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함
  - 새로운 규제심사와 기존 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규제에 의한 잠재적 편익이 잠재적 비용보다 높지 않을 경우 규제의 도입을 금지함
  - 이와 함께, 중요한 규제조치(significant regulatory actions)에 대해 엄격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클린턴행정부는 규제 계획 및 검토(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를 행정명령으로 제정하여 규제영향분석의 지원기관인 정보규제관리국(OIRA)의 규제검토 절차를 신설함
  - 중요한 규제조치는 OIRA의 검토를 의무화하였으며, 행정기관은 규제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함(임원혁 외, 2014: 67-68)
  - 1993년 9월 지금까지 미국 규제영향분석의 법적 기초인 “Circular No. A-4”가 제정되었으며, Circular No. A-4는 좋은 규제의 분석을 정의하고 규제기관이 높은 품질의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의미함(안혁근, 2014: 61; 이현정 외, 2024: 247)
-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부절적인 규제 체계로 지목되어 규제 문화에 대한 변화를 추진함
- 2011년 오바마행정부는 규제결정과정에서의 5개 원칙을 제시함
  - 첫째, 투명성 강조로 규제안의 자료를 홈페이지 탑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함, 둘째, 행정기관이 불필요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및 중복적인 행정요소를 정비하기 위해 규제를 간소화함, 셋째, 규제 대신 경고 또는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함, 넷째, 행정기관의 도덕성을 도모함, 다섯째, 현행 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규제를 정비함(임원혁 외, 2014: 68)
- 2021년 바이든행정부는 규제 검토 체계를 개선하고 현대화할 것을 발표함
  - 미국의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규제 검토 과정에서 효율성, 투명성 및 포용성을 강조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함
- 2023년 9월 OMB 산하 OIRA에서는 개정된 최종 Circular No. A-4를 발표하였으며, 2024년 3월(해당 규제영향분석) 및 2025년 1월(타 규제 뒷받침을 위한 규제영향분석)부터 시행됨

- 2023년 Circular No. A-4에서는 크게 3가지의 내용이 변경되었음
- 첫째, 규제영향분석의 수행 요건인 중요한 규제조치의 기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억 달러 이상인 규제에서 2억 달러 이상인 규제로 개정됨, 둘째, 포용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함, 셋째, 규제영향분석 개선을 위해 분배 효과 및 형평성을 강조함(이현정 외, 2024: 246)

#### □ 규제영향분석 목적<sup>17)</sup> 및 기준<sup>18)</sup>

- 미국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OMB(2023)의 Circular No. A-4에 명시되어 있음
  - Circular No. A-4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을 연방 기관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법률을 해석하는 데 필요하거나 민간 시장이 대중의 건강과 안전, 환경 또는 미국 국민의 복지를 보호하거나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실패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규정함
  - 이와 함께, 각 기관은 해결하려는 문제(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 조치가 필요한 민간 시장 또는 공공 기관의 실패 포함)를 파악하고 해당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함
- 규제안이 중요한 규제조치(significant regulatory actions)에 해당하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며, 중요한 규제조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거나(1억 달러에서 2023년 2억 달러로 개정), 경제, 경제 부문, 생산성, 경쟁, 고용, 환경, 공중 보건, 안전, 주(state), 지방(local), 영토, 부족 정부 또는 사회(Tribal governments or communities)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임
  - 둘째,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규제(또는 조치)에 심각하게 불일치하거나 충돌하는 규제임

17) 자료: OMB(2023: 14). Circular No. A-4.

18) 자료: <https://www.epa.gov/laws-regulations/summary-executive-order-12866-regulatory-planning-and-review>(자료검색일: 2024.09.24.)

- 셋째, 재정지원, 보조금, 대출 관련 예산 또는 대상자의 권리 및 의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규제임
- 넷째, 법적 조치,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또는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는 규제임

## 2) 작성방법

### □ 분석방법<sup>19)</sup>

- OMB(2023)의 Circular No. A-4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으로 비용-편익 분석(BCA) 및 비용-효과분석(CEA)을 제시함
  - 규제의 비용 및 편익을 정량화된 화폐단위로 표현이 가능하면 비용-편익 분석을 활용하며, 정량화된 화폐단위로 표현이 불가능하면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함
  - 다만, 두 가지 분석방법 중 비용-편익분석이 비용-효과분석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정량화된 화폐단위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공통된 측정 기준을 사용하여 다양한 규제 대안을 평가할 수 있음
  -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여 순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
  - 비용 또는 편익을 정량화된 화폐단위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물리적 단위로 측정해야 하며, 물리적 단위로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비용 또는 편익을 설명해야 함
  - 다만, 비용과 편익을 정량화된 화폐단위로 표현할 수 없으면 비용-편익분석은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유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용 및 편익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함
  - 따라서 정성적으로 비용 또는 편익을 설명할 때는 설명과 함께 증거자료도 함께 포함해야 함

19) 자료: OMB(2023). Circular No. A-4.

- 비용-효과분석은 규제의 비용 또는 편익을 정량화된 화폐단위로 표현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규제대안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임
  - 일반적으로 비용-효과분석은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규제안을 비교하거나 여러 가지 규제 효과를 하나의 지표로 통합할 수 있는 경우 규제안을 비교하기 위해 활용됨
  - 비용-효과분석은 다양한 규제 대안에 대한 분석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비용과 효과성을 신중하게 측정해야 함
  - 단, 규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최대한 하나의 효과성 지표로 나타내어야 하므로, 비용-편익분석과 같이 정량적인 화폐단위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점이 존재함
  - 따라서, 규제안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구성 및 작성내용<sup>20)</sup>

- 일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규제의 필요성 및 평가, 둘째, 평가 기준 정의, 셋째, 다양한 규제 대안 검토, 넷째,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규제 분석에 대한 요약임
  - 세부적으로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규제 대안의 효과에 대한 증거 제시,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추정하거나 제시하여야 함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주요 작성항목은 ‘규제 필요성 검토’, ‘분석 범위’, ‘분석 기준 개발’, ‘규제 대안 검토’, ‘비용 및 편익 검토’ 및 ‘기타 중요 고려사항’ 총 6가지로 구성됨
- 첫째, 규제 필요성 검토에서는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함

20) 자료: OMB(2023). Circular No. A-4. OMB(2011). Regulatory Impact Analysis: A Primer.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개입인 규제가 시장 실패(시장 지배력, 외부성, 공공재, 비대칭 정보, 행동 편향 등)가 원인인지, 정부 절차 개선이 원인인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 즉, 문제 현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한, 정부의 개입이 적절한 방법인지 검토함
- 둘째, 분석 범위는 크게 분석의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작성함
-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규제 시행에 따른 규제의 효과가 국내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해외에도 규제의 영향이 미치는지 검토하며, 이와 함께, 공간적 범위에 따른 분석의 대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시민만 분석할 것인지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도 포함할 것인지 결정함
  -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규제영향분석의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으로 기간 설정에 따른 규제의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분석 기간이 지나더라도 정량적인 영향이 아닌 정성적인 방법으로 규제의 영향을 작성할 수 있음
- 셋째, 분석 기준 개발은 분석을 통한 규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의미함
- 분석 기준 개발은 규제가 없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인 인구 증가, 경제성장, 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함
  - 분석 기준 개발을 통해 규제 시행에 따른 규제의 예상 효과를 작성함
- 넷째, 규제 대안 검토는 문제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규제 대안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으로 대안의 수는 분석의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최소 세 가지 이상의 대안을 분석 및 검토해야 함
- 기준 규제안과 함께, 규제의 비용이 더 큰 대안, 규제의 비용이 더 적은 대안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대안을 분석 및 검토해야 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세 가지 이상의 대안을 분석 및 검토하는 것이 아닌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강조해야 함

- 다섯째, 비용 및 편익 검토로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으로 제시된 비용-편익분석(BCA) 및 비용-효과분석(CEA) 중 선택하여 검토함
  - 비용 및 편익 검토시 정량화된 화폐화가 가능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시기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정량화된 화폐화로 비용과 편익을 설명할 수 없을 경우 정성적인 방법으로 비용과 편익을 설명하고 그 근거를 반드시 포함함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기회비용” 개념을 활용함
- 여섯째, 기타 중요 고려사항으로는 규제 비용 관련 내용 및 규제준수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함
  - 규제 비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화폐 가치에 대한 추정치, 규제에 인한 기술적 변화 등을 작성함
  - 규제준수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규제가 시행되면 완전한 준수를 가정할 수 있으나, 규제의 불완전한 준수(미준수 또는 과도한 준수)가 예상될 경우 예상되는 현상과 그 이유에 대해 작성함

**| 표 3-13 | 미국 규제영향분석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내용
규제 필요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현황 및 근거</li> <li>• 정부 개입 필요성</li> <li>• 정부 개입 적절성 검토</li> </ul>
분석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영향분석의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li> <li>• 공간적 범위(국내, 해외 구분)</li> <li>• 시간적 범위(규제영향 분석 기간)</li> </ul>
분석 기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미 개입시 발생할 영향</li> <li>• 규제 예상 효과</li> </ul>
규제 대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대안 검토</li> <li>• 최소 세 가지 이상 대안의 규제 비용 분석 및 비교</li> </ul>
비용 및 편익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편익분석(BCA) 및 비용-효과분석(CEA) 중 선택</li> <li>• 비용 및 편익 설명, 근거자료 제시</li> <li>• 기회비용 개념 활용</li> </ul>
기타 중요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비용 관련 기타 사항(화폐 가치 추정치, 기술적 변화 등)</li> <li>• 규제준수 관련 기타 사항(불완전한 규제 준수(미준수 또는 과도한 준수 등)의 원인 및 현상 등)</li> </ul>

자료: OMB(2023). Circular No. A-4. OMB(2011). Regulatory Impact Analysis: A Primer.

### □ 규제영향분석 체크리스트<sup>21)</sup>

- OMB에서는 규제영향분석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함
  - 총 16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규제영향분석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함

【표 3-14】 미국 규제영향분석 작성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리스트 내용
1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2	• 규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3	• 현재 상황 유지(규제 미시행)에 따른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4	• 제공된 정보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명확한가? • 제공된 정보가 완전하고 편파적인지 않는가?
5	• 규제영향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공개되어 국민이 분석을 재현할 수 있는가?
6	• 규제 조치에 따른 편익을 정량적으로 화폐화하였는가?
7	• 규제 조치에 따른 비용을 정량적으로 화폐화하였는가?
8	• 규제영향분석의 결과가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9	• 규제영향분석에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을 평가하고 있는가?
10	• 대안으로 제시한 규제안이 가장 높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가?
11	• 제시된 규제 조치가 다른 대안보다 더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12	•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고 있는가?
13	•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가?
14	• 자본의 분배적 영향과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15	• 명확하고 투명하게 작성된 요약이 포함되어 있는가? 요약에는 규제 조치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비용과 편익은 정량화 및 정성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16	• 예상되는 (정량적 및 정성적인)비용과 편익을 제시하는 표가 작성되어 있는가?

자료: OMB(2010). Agency Checklist: Regulatory Impact Analysis.

21) 자료: OMB(2010). Agency Checklist: Regulatory Impact Analysis.

## 제3절 국내사례 검토

### 1. 국내사례 개요

#### □ 국내 규제영향분석서 유형

- 규제영향분석서의 국내사례로는 중앙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존재함
  - 중앙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이 존재함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서는 행정안전부(2024)의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이 존재함
  -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 및 규제혁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통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이 존재함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은 제3장 1절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절에서는 행정안전부(2024)의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을 중심으로 국내사례를 검토함<sup>22)</sup>

#### □ 광역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서식 현황<sup>23)</sup>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 광역자치단체는 규제개혁 및 규제혁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통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이 존재함
  - 광역자치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시행규칙),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시행규칙),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행정규제 혁신 조례(시행규칙) 등을 통해 신설 또는 정비하는 규제에 대해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22)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의 자체 규제영향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함

23)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자료검색일: 2024.09.27)

-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이 존재하는 11개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임
  - 부산은 타 광역자치단체와 다르게 규제개혁 및 규제혁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운영 업무 규칙에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이 존재함
  - 이와 함께, 경기도도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로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서 서식도 존재함
-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이 존재하지 않는 6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충북, 경북임
  - 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충북, 경북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함
  - 단, 인천, 광주, 울산은 규제개혁 및 규제혁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음

| 표 3-15 | 광역자치단체 자체 규제영향분석서 서식 여부

지역	규제개혁 및 규제혁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서식	비고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li> </ul>	X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영향분석서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li> <li>•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li> </ul>	○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li> <li>•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li> </ul>	○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ul>	X	관련 내용 없음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li> </ul>	X	관련 내용 없음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li> </ul>	○	

지역	규제개혁 및 규제혁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서식	비고
울산	•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X	관련 내용 없음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기	•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영향분석서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충북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X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영향분석서
충남	•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전남	•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경북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X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영향분석서
경남	•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자료검색일: 2024.09.27)

## 2.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sup>24)</sup>

### □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서 표준서식(안) 구성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서 표준서식(안)의 구성은 크게 분석 대상 규제의 개요 및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으로 구분됨
  - 단, 표준서식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분석 대상 규제의 개요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의 규제개요와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됨

24) 자료: 행정안전부(2024: 133-134).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은 규제 필요성, 대안선택, 규제 적정 및 실효성, 추진 계획, 종합계획 등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서 내용 중 규제개요 부분을 제외한 내용과 유사함
  - 단,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보다 세부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음

#### □ 구성 및 작성내용

- 분석 대상 규제의 개요의 세부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규제사무명, 분석 대상 규제 구분(신설, 강화, 존속(재검토)기한연장 중 택1), 규제조문,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근거 법령, 규제 근거, 추진배경 및 규제 필요성, 규제 내용,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규제 신설 및 강화의 장·단점,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규제 정비계획, 일몰설정여부 등으로 구성됨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을 작성하는 세부 작성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규제 필요성, 대안선택, 규제 적정, 규제 실효, 규제 신설 및 강화의 장점 및 단점, 추진계획, 관련 참고사항임

### 3. 광역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검토<sup>25)26)</sup>

#### □ 부산

- 부산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의 구성은 분석대상 규제개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으로 구성됨
- 부산 규제영향분석서의 분석대상 규제개요의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규제사무명, 구분(신설,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 연장 중 택1),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근거법령 등(관련 규제수),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기존 규제와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의 내용, 규제 존속기한으로 구성됨

25) 광역자치단체 중 자체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을 보유한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함

26)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자료검색일: 2024.09.27)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의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작성항목은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실시 및 결과 비용, 규제 내용이 적정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항목으로 구성됨

## □ 대구

- 대구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의 구성은 분석대상 규제개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으로 구성됨
- 대구 규제영향분석서의 분석대상 규제개요의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규제사무명, 구분(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중 택1),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 사항, 근거법령, 분석방법, 규제의 내용, 규제 존속기한, 규제 존속사유로 구성됨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의 작성항목은 크게 9가지로 구성됨
  - 첫째,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필요성, 둘째,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셋째, 규제가 아닌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기존 규제와 대안 규제가 중복되는지 여부, 넷째,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다섯째,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여섯째,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일곱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여덟째, 규제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발생시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이 적정한지 여부, 아홉째,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로 구성됨

## □ 대전

- 대전의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의 구성은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우선 허용·사후 규제원칙 적용 가능성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의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규제사무명, 구분(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중 택1),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근거법령 등(관련 규제수),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으로 구성됨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필요성, 규제의 목표와 기대효과, 규제가 아닌 대체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존 규제와 개선 규제의 관계를 작성함
- 규제 내용이 적정한지 또는 실효성이 있는지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가 얼마나 명료한지,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작성함

## □ 세종

- 세종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의 구성은 분석대상 규제개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규제개요의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규제사무명, 구분(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중 택1),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근거법령 등, 규제유형, 규제의 존속기한, 현행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참고사항으로 구성됨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은 8개 항목 19개 평가요소로 구성됨
  - 8개 항목으로는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필요성, 규제의 목적이 실현가능한지, 규제가 아닌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존 규제와 중복이 되는지 여부, 규제 비용-편익분석(비교분석),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규제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료한지,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규제와 관련된 민원사무 발생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이 적절한지로 구성됨
- 그 밖의 기재사항은 사후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및 참고사항을 작성함

## □ 경기<sup>27)</sup>

- 경기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의 구성은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자체심사의견, 규제의 존속기한,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 의견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의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규제사무명, 구분(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중 택1),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및 인적사항, 근거법령 등, 관련규제 수,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으로 구성됨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8개 항목 19개 평가요소로 구성됨
  - 8개 항목은 세종과 동일하게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필요성, 규제의 목적이 실현가능한지, 규제가 아닌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존 규제와 중복이 되는지 여부, 규제 비용-편익분석(비교분석),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규제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료한지,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규제와 관련된 민원사무 발생시 구비서류 및 처리 절차 등이 적절한지로 구성됨
- 이와 함께, 자체심사의견, 규제의 존속기한,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 의견을 작성하며,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의 사용 및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 □ 강원

- 강원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의 구성은 분석대상 규제개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규제개요의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규제의 구분, 소관부서 및 책임자, 근거법령 등, 규제 근거의 분류, 종전 규제의 내용, 규제의 신설(변경) 내용, 기타로 구성됨

---

27) 경기는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규제영향분석이라는 용어 대신 규제심사 요청서로 표현함. 하지만, 구성 및 내용은 규제영향분석과 동일하므로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으로 판단함

- 단, 규제 근거의 분류는 강원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강원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개별법 위임 규제, 자치사무 규제 4개 중 선택하도록 구성됨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은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필요성, 규제의 목적이 실현가능한지, 규제가 아닌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존 규제와 중복이 되는지 여부,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규제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료한지,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이외의 관련 자료로 구성됨
- 단, 강원은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의 작성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시함

## □ 충남

○ 충남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의 구성은 분석대상 규제개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의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규제사무명 등, 구분(등록변경사유, 등록단위, 성격별 분류, 유형/구분),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근거법령명 등,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규제 존속기한, 기존의 규제와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내용, 규제체계도로 구성됨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의 작성항목은 크게 3개 항목으로 구성됨

- 3개 항목으로는 규제가 필요한지, 규제의 대안에 대해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실시와 그 분석결과와의 비교, 규제가 적정한지 및 실효성이 있는지로 구성됨
- 세부적으로 규제가 필요한지에는 문제를 정의하고,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하는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함
- 이와 함께, 규제의 대안을 검토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비교하는 항목은 규제 대안을 검토와 비용-편익 분석을 비교함

- 규제가 적정한지 및 실효성이 있는지는 규제의 적정성 여부, 이해관계자 간 협의 여부, 규제의 집행 시 실효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함

#### □ 전북

- 전북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의 구성은 분석대상 규제개요,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 분석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규제개요의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규제사무명, 구분(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중 택1),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근거법령 등,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규제 존속기한, 신설 규제의 내용으로 구성됨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됨
  -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필요성, 규제의 목적이 실현가능한지, 규제가 아닌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존 규제와 중복이 되는지 여부, 규제 비용-편익분석,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규제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료한지,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규제와 관련된 민원사무 발생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이 적절한지로 구성됨

#### □ 전남

- 전남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의 구성은 분석대상 규제개요,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 분석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규제개요의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규제사무명(관련규제 수), 구분(등록변경사유, 유형/구분, 성격별 분류),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근거법령 등,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규제 존속기한,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으로 구성됨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의 작성항목은 크게 3개 항목으로 구성됨
  - 3개 항목은 충남과 동일하게 규제가 필요한지, 규제대안을 검토한 내용,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실시 및 결과 비교, 규제가 적정한지 및 실효성이 있는지로 구성됨

- 세부적인 내용 역시 충남과 동일하게 규제의 필요성에는 문제정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을 작성하며, 규제대안의 검토와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부분에서는 규제 대안을 검토하고,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함
- 규제가 적정한지 및 실효성이 있는지에는 규제의 적정성,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집행의 실효성을 작성함

#### □ 경남

- 경남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의 구성은 분석대상 규제개요,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 분석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규제개요의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규제사무명, 구분(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중 택1), 작성자 인적사항, 근거 법령 등, 비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기존규제 및 신설, 강화되는 규제 내용, 규제 존속 기한과 사유로 구성됨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됨
  -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필요성, , 규제의 목적이 실현가능한지, 규제가 아닌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존 규제와 중복이 되는지 여부, 규제 비용-편익분석,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규제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료한지,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규제와 관련된 민원사무 발생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이 적절한지,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원칙의 적용가능으로 구성됨

#### □ 제주

- 제주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의 구성은 분석대상 규제개요,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 분석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규제개요의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구분(신설, 강화, 완화, 폐지 중 택1), 소관부서 및 책임자, 근거법령 등, 규제 근거의 분류, 종전 규제의 내용, 규제의 신설(변경) 내용, 기타로 구성됨
- 단, 규제 근거의 분류는 제주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제주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개별법 위임 규제, 자치사무 규제 4개 중 선택하도록 구성됨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됨

- 규제 신설·변경의 필요성, 규제 관련 일반 현황, 규제 신설·변경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규제 신설·변경에 따라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보 방안, 그 밖의 관련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됨

□ 광역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유형화

○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을 보유한 11개 광역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을 검토한 결과 공통점은 다음과 같음

- 11개 광역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영향 분석서 표준서식의 작성항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작성항목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서 표준서식과 유사하게 크게 분석 대상 규제 개요와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으로 구분됨

○ 11개 광역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의 분석 대상 규제 개요 항목은 작성 항목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신설, 강화, 존속을 위한 규제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이 구성되어 있음
- 분석 대상 규제 개요는 표지의 역할과 함께 규제개선의 필요성, 목적 및 효과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11개 광역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은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의 작성항목 차별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 유형은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의 작성항목이 7~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작성해야 할 세부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유형임
  - 첫 번째 유형에는 강원, 전북, 경남의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이 포함됨
  - 세부적으로, 강원은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작성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남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을 작성하는 항목이 존재함
- 두 번째 유형은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작성항목이 3~5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항목에 작성해야 할 세부항목이 작성되어 있는 유형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서 표준서식과 가장 유사함
  - 두 번째 유형에는 부산, 대전, 충남, 전남, 제주, 총 5개의 지역이 포함됨
  - 두 번째 유형은 규제의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항목으로 구성됨
- 세 번째 유형은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작성항목이 8~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작성해야 할 세부항목이 총 19개로 구성된 유형임
  - 세 번째 유형에는 대구, 세종, 경기의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이 포함됨
  - 세부적으로 대구, 세종, 경기의 작성항목 8개 및 세부항목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구에는 추가로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세종은 사후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제시 항목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 표 3-16 | 광역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유형화 및 작성항목

구분	유형	작성항목
분석 대상 규제 개요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사무명</li> <li>• 구분(신설, 강화, 존속, 폐지 등)</li> <li>• 작성자 인적사항 및 규제 소관부처</li> <li>• 근거 법령(위임) 등</li> <li>• 위임규제, 자치사무규제 등 규제 분류</li> <li>• 현행 규제 내용</li> <li>• 개정되는 규제 내용</li> <li>•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등</li> <li>• 분석방법</li> <li>• 규제 존속 사유 및 기한</li> </ul>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유형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하는 필요성</li> <li>• 규제의 목적이 실현가능한지 여부</li> <li>• 규제가 아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의 존재 여부</li> <li>• 기존 규제와 중복되는지 여부</li> </ul>

구분	유형	작성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규제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료한지 여부</li> <li>• 규제 비용-편익분석 실시 및 결과</li> <li>• 규제 신설 또는 강화시 수요되는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 등</li> <li>•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li> <li>• 규제와 관련된 민원사무 발생시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이 적절한지 여부</li> </ul>		
	유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신설, 강화 필요성</li> <li>• 규제가 목표한 내용과 기대효과</li> <li>• 규제 내용이 적정한지 및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li> <li>•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내용(전문가 등 의견 수용 여부 작성)</li> <li>•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등의 규모 및 현황</li> <li>•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따른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li> <li>• 규제 집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li> <li>• 규제 비용-편익분석 실시 및 결과</li> <li>• 규제가 아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의 존재 여부</li> <li>•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li> </ul>		
	유형3	<table border="0"> <tr> <td data-bbox="392 838 744 1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신설, 강화 필요성</li> <li>• 규제 목적이 실현가능한지 여부</li> <li>• 규제가 아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의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 중복되는지 여부</li> <li>• 규제 비용-편익분석 실시 및 결과</li> <li>•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규제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료한지 여부</li> <li>• 규제 시행시 소요되는 예상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 등</li> <li>• 규제 시행시 민원사무 발생에 대비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이 적절한지 여부</li> <li>•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li> <li>• 기업활동을 수행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규제 기준이 명확한지 여부</li> </ul> </td> <td data-bbox="744 838 1122 1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의 내용과 원인</li> <li>• 규제가 필요한지 및 규제의 목표</li> <li>• 사회가 제약하는 요소</li> <li>• 기술의 수준 정도 및 규제 실현가능성</li> <li>• 기존 규제로 현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li> <li>• 규제가 아닌 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li> <li>• 기존 규제와 중복되는지 여부</li> <li>• 경제·사회적인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 실시 및 결과</li> <li>• 비용·편익 분석 비교 및 검토 제시</li> <li>• 시장경제적인 제한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법적인 근거와 존속기한이 타당한지 여부</li> <li>• 조직, 인력 및 예산의 예상되는 내용</li> <li>• 규제 관련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li> <li>• 규제 처리기관과 처리절차가 적정한지 여부</li> </ul>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신설, 강화 필요성</li> <li>• 규제 목적이 실현가능한지 여부</li> <li>• 규제가 아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의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 중복되는지 여부</li> <li>• 규제 비용-편익분석 실시 및 결과</li> <li>•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규제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료한지 여부</li> <li>• 규제 시행시 소요되는 예상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 등</li> <li>• 규제 시행시 민원사무 발생에 대비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이 적절한지 여부</li> <li>•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li> <li>• 기업활동을 수행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규제 기준이 명확한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의 내용과 원인</li> <li>• 규제가 필요한지 및 규제의 목표</li> <li>• 사회가 제약하는 요소</li> <li>• 기술의 수준 정도 및 규제 실현가능성</li> <li>• 기존 규제로 현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li> <li>• 규제가 아닌 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li> <li>• 기존 규제와 중복되는지 여부</li> <li>• 경제·사회적인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 실시 및 결과</li> <li>• 비용·편익 분석 비교 및 검토 제시</li> <li>• 시장경제적인 제한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법적인 근거와 존속기한이 타당한지 여부</li> <li>• 조직, 인력 및 예산의 예상되는 내용</li> <li>• 규제 관련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li> <li>• 규제 처리기관과 처리절차가 적정한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신설, 강화 필요성</li> <li>• 규제 목적이 실현가능한지 여부</li> <li>• 규제가 아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의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 중복되는지 여부</li> <li>• 규제 비용-편익분석 실시 및 결과</li> <li>•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규제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료한지 여부</li> <li>• 규제 시행시 소요되는 예상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 등</li> <li>• 규제 시행시 민원사무 발생에 대비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이 적절한지 여부</li> <li>•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li> <li>• 기업활동을 수행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규제 기준이 명확한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의 내용과 원인</li> <li>• 규제가 필요한지 및 규제의 목표</li> <li>• 사회가 제약하는 요소</li> <li>• 기술의 수준 정도 및 규제 실현가능성</li> <li>• 기존 규제로 현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li> <li>• 규제가 아닌 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li> <li>• 기존 규제와 중복되는지 여부</li> <li>• 경제·사회적인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 실시 및 결과</li> <li>• 비용·편익 분석 비교 및 검토 제시</li> <li>• 시장경제적인 제한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법적인 근거와 존속기한이 타당한지 여부</li> <li>• 조직, 인력 및 예산의 예상되는 내용</li> <li>• 규제 관련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li> <li>• 규제 처리기관과 처리절차가 적정한지 여부</li> </ul>			

주1: 유형1) 강원, 전북, 경남

주2: 유형2) 부산, 대전, 충남, 전남, 제주

주3: 유형3) 대구, 세종, 경기

주4: 작성항목의 용어가 모두 동일하지 않으나, 유사한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목록화함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자료검색일: 2024.09.27)

##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 검토 사례 비교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를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규제영향 분석 사례를 검토함
  - 국내 규제영향분석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검토함
  - 중앙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을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서 및 광역자치단체 중 자체 규제영향 분석서를 보유한 지역의 서식을 검토함
  - 해외사례는 영국, 호주,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을 검토함
- 먼저, 규제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의 작성 항목을 비교·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사례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서는 해외 사례보다 많은 항목을 작성하도록 구성됨
  - 국내의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은 세부적인 작성항목을 제시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을 하도록 하지만, 작성 분량은 많지 않게 작성하여 표지 역할을 수행함
  - 반면, 해외 규제영향분석서 서식은 규제사무명 및 담당자 정도만 작성하고, 기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자유형식으로 작성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함
  - 국내 및 해외 규제영향분석서의 규제 개요 부분의 작성 공통 항목으로는 규제 사무명, 담당기관 및 담당자 항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7】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사례 작성 항목 비교(규제 개요 비교)

작성 항목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례		
구분1	구분2		자치법규	유형1	유형2	유형3	영국	호주	미국
규제 개요	규제사무명	○	○	○	○	○	○	○	○
	구분(신설, 강화, 존속, 폐지)	○	○	○	○	○			
	규제조문	○	○	○	○	○			
	담당부서 및 인적사항	○	○	○	○	○	○	○	○
	근거(위임) 법령	○	○	○	○	○			
	규제 분류	○	○	○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	○			○
	현행 규제 내용(문제점)	○	○	○	○	○	○	○	○
	개선 규제 내용	○	○	○	○	○	○	○	○
	분석방법	○			○				
	목표 및 기대효과	○	○				○	○	○
	규제 장·단점		○						
	이해관계자 검토	○	○			○			
	일몰설정여부	○	○						
	규제 존속기한				○	○			

주1: 중앙정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주2: 자치법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서 표준서식

주3: 유형1) 강원, 전북, 경남, 유형2) 부산, 대전, 충남, 전남, 제주, 유형3) 대구, 세종, 경기

주4: 작성항목의 용어가 모두 동일하지 않으나, 유사한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목록화함

- 다음으로 규제영향분석서의 세부작성 항목을 비교·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내·외 규제영향분석서에 공통으로 작성해야 할 항목으로는 규제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규제 내용, 비용-편익분석으로 나타남
  - 국내·외 규제영향분석서는 일반적으로 규제 목적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국내 규제영향분석서의 특징은 비용-편익분석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의 방법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 집행가능성(행정 능력) 검토를 강조함

- 하지만, 유사한 국내·외 사례검토, 규제 대안 외 다양한 대안 검토 등 다양한 규제 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해외 규제영향분석서의 특징은 규제영향분석의 분석을 통한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강조함
  - 해외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효과를 정량적인 화폐단위로 표현하는 등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강조하고 있으며, 규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시함
  - 이와 함께, 대안으로 제시한 규제 대안을 제외한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한 규제 대안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특히, 정부 미개입시 발생할 현상 및 문제점을 예상하여 정부 개입의 타당성을 강조함

| 표 3-18 |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사례 작성 항목 비교(세부작성내용 비교)

작성 항목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례		
구분1	구분2		자치법규	유형1	유형2	유형3	영국	호주	미국
세부 작성 내용	규제 필요성	○	○	○	○	○	○	○	○
	목적 및 기대효과	○	○	○	○	○	○	○	○
	규제 내용 및 검토	○	○	○	○	○	○		○
	기존 규제 차별성	○		○		○	○		
	유사사례 검토	○							
	성과 측정 지표						○		○
	비용-편익분석	○	○	○	○	○	○	○	○
	규제 타당성	○	○			○	○	○	○
	사회·경제적 영향	○				○	○		○
	이해관계자 검토	○			○	○	○	○	
	규제 시행 방안	○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	○	○
	경쟁 제한적 요소								
	규제 집행가능성(행정 능력)	○	○	○			○		
규제정비계획	○	○					○		

구분1	작성 항목 구분2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례		
			자치법규	유형1	유형2	유형3	영국	호주	미국
	우선 허용·사후 규제원칙 가능성			○	○	○			
	처리 절차 적정성	○		○		○			
	정부정책과 정합성 검토	○					○		
	다양한 대안 검토	○					○	○	○
	정부 미개입 검토						○	○	○

주1: 중앙정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주2: 자치법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서 표준서식

주3: 유형1) 강원, 전북, 경남, 유형2) 부산, 대전, 충남, 전남, 제주, 유형3) 대구, 세종, 경기

주4: 작성항목의 용어가 모두 동일하지 않으나, 유사한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목록화함

####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도출 시사점

- 국내·외 규제영향분석서 사례 검토를 통해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음
  - 국내·외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 목적이나 규제 영향에 따라 강조해야 할 항목이 있으며, 반드시 작성이 필요한 항목이 존재함
  - 반면, 국내·외 규제영향분석서 사례에 나타난 모든 작성항목을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에 포함하는 것은 지방규제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서 표준서식을 토대로,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반드시 작성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규제 개요(표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규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작성 항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 규제사무명, 규제 구분, 규제조문, 담당부서 및 인적사항, 근거(위임)법령, 규제 분류 항목 항목. 규제 존속기한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제 장·단점, 이해관계자 검토, 일몰설정여부 항목은 규제 개요에는 삭제하고 영향분석서 세부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함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문제점, 개선 규제 내용, 목표 및 기대효과,

분석 방법은 1~2개의 항목인 추진배경, 개선방안 항목으로 줄여서 규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세부작성내용은 지방규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작성항목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규제 필요성, 목적, 기존 규제의 문제점 등의 항목은 규제 필요성 항목으로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단, 규제의 필요성은 기존 규제의 문제점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함
- 셋째, 중앙정부 및 해외의 규제영향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방규제는 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중앙규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되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규제의 비용 및 편익은 정량적인 화폐단위로 표현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능 시 정성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규제의 비용 및 편익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지방규제는 해당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유형,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함



# 제 4 장

## 자치규제 영향분석 추진방안

제1절 자치규제 영향분석 추진방안  
개요

제2절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제3절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의  
항목별 작성방법



# 04 자치규제 영향분석 추진방안

## 제1절 자치규제 영향분석 추진방안 개요

### 1. 추진방안 도출의 전제조건과 범위

#### □ 우리나라에서의 규제영향분석의 적용 현황

○ 중앙행정기관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023.4)」에 따라 규제영향 분석을 수행해야 함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제개혁)위원회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호~제12호 생략)

- 규제영향분석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와 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시 활용됨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후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이하 생략)
-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제심사 조항은, 제11조의 예비심사 및 중요규제 판단(비중요규제시 심사 종료), 제12조의 본심사, 제15조의 재심사 등으로 구체화됨 (자세한 조문내용 생략)

#### □ 규제영향분석의 자치규제 적용의 전제조건과 본 연구의 범위

- 이상과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의 분석 수행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이며, 자치단체의 분석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 역시 적용을 필요로 함(최무현, 2023: 115-116)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입법예고시 신설·강화되는 규제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 분석서를 함께 공표하도록 함
- 자치규제에 규제영향분석을 적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와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나, 현재 관련 제도나 추진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활용방안 등을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움
  - 1) 자치단체(시·도)의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 2) 각 자치단체(시·도)의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자치규제 심사에 대한

역할부여, 3) 행정안전부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중 사전협의 및 중요 규제의 판단 및 자체심사에 대한 예비심사·본심사·재심사 등 자치규제 심사 관련 제도의 명확화, 4)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의 지방규제 적용(기존 시스템 활용 또는 별도 구축 등), 5) 전문기관의 영향분석서 검토역할 부여 등 정책적 결정과 제도적인 정비가 선결되어야 함

- 현재 시·도의 자체심사를 담당할 시·도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근거(전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가 구비되어 있으나 실제로 모든 시·도에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 조례상 규제영향분석의 의무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최무현, 2023: 118-119) 있으나 실제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최무현, 2023: 129)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통한 제도적 기반의 공고화 필요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322호) 제2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능 중 자치규제 관련 제3호: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시·도 자체심사 및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의 예비심사(중요규제 판단 포함), 본심사, 재심사 등의 제도적 도입에 대한 정책적 결정 필요

○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023.4)」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과 법적 근거, 규제심사 절차 및 활용방안 등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제도·체계 등이 완비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영향분석서의 구성 및 작성 내용을 중심으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제도·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특히 중요규제에 대한) 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필요성과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니즈가 높음(최무현, 2023: 131, 135, 140)
- 규제영향평가를 자치규제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의 도출은, 현재 지방규제혁신 관련 제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심사나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어려우므로, 지방규제혁신 추진체계 내에서 법적 근거 및 절차, 활용방안 등은 추후 논의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자치법규에 의한 자치규제에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작성시 작성유형의 선택, 분석서의 구성 및 세부항목,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작성방법, 사회적 비용편익 및 기타 정책적 고려요인 등을 다룸

## 2.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의 유형과 구성

### □ 규제영향분석의 작성유형 (표준형 vs 간이형)

-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023.4)」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쟁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표준형 및 간이형을 택일하여 작성
  -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 등 규제의 신설·강화시,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에 규제심사 사전검토 의뢰를 통해 규제심사 대상여부 및 영향분석서 작성유형(간이형 또는 표준형)을 통보받고, 입법예고 7일 전까지 영향분석서 초안을 작성하여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검토를 요청하면, 전문기관 등의 검토와 수정·보완을 거쳐 확정되며, 이후 자체심사 등 진행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의무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내용의 구체화,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 및 관련 규제는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며, 간이형을 제외한 모든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는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함(국무조정실, 2023: 16)
  - [표준형]의 경우 3개의 대안(현행 유지안, 현재 고려하고 있는 규제대안 1, 여타 규제대안 2)을 필수적으로 기술하며, 규제대안 1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및 해외사례 분석 등 수행하며, [간이형]의 경우 현행 유지안 및 규제대안 2의 작성 및 비용·편익 분석 등 생략이 가능함
    - 간이형의 경우, 규제대안 1의 비용·편익 분석시 정성분석이 가능하며, 피규제자(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의 생략이 가능하되, 단, 정성분석시 규제대상(피규제자) 수 예측자료는 작성해야 함
    - 표준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량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명시하여 정성적 비용·편익분석 실시 가능

## □ 지자체 담당자 의견조사로부터의 구성안 제안

- 자치규제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최무현, 2023: 131-133)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이 필요하되,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 보다는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수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의 어려움, 외부전문가 활용의 어려움, 분석수행을 위한 인력·예산·정보의 부족, 중앙부처의 지원, 작성대상이 과도하게 넓은, 작성항목의 불명확성 및 지침·매뉴얼·작성양식 부족, 담당공무원 역량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모든 항목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느끼는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특히 비용편익 분석의 어려움의 경우 97.5%가 동의하고 있음
    - 따라서 자치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적용시 비용편익 분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전문가 거버넌스가 불가피하며, 작성대상과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제시 등이 요구됨
  - 작성유형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72%가 “간이형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형을 예외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규제의 파급성을 감안한 중요규제를 중심으로 표준형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기타 국조실 규제영향분석서의 세부 구성항목을 자치규제에 적용 시 각 항목별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최무현, 2023: 135-139)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대안의 선택 및 근거(64.7%) >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59.7%) > 대안의 비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각 58.0%)
    -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필요(60.5%) > 기타 고려사항 필요(55.5%) > 국내 유사입법 사례 필요(53.8%) > 영향평가(기술·경쟁·중소기업영향평가) 필요(52.9%). 단. 비용·편익분석 필요(47.9%) > 해외 사례 필요(37.8%) 등 과반 이하
    - [규제의 실효성] 행정적 및 재정적 집행가능성 필요(각 65.5%) > 규제의 순응도 필요(62.2%)

-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종합결론 필요(68.1%) > 규제정비계획 필요(63.0%) > 추진경과 필요(61.3%) > 향후 평가계획 필요(56.3%)
- 선행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의견조사 및 실제 작성사례 검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성안을 제안함

표 4-1 |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지자체 규제영향분석 구성안

구분	항목	
I.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포함)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규제의 유형 (일부 포함)	• 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포함 • 기타 제외항목: 완화, 폐지, 내용심사, 등록변경사유, 등록단위 (이상 영향분석서 작성필요 없음), 규제의 성격별 분류 (분류의 어려움, 실익이 없음)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포함)	• 소관 실·국장, 과장·담당관 등을 명기, 국장 서명 (규제실명제 관련)
	근거법령 등 규제 근거의 분류, 관련 규제수 (일부 포함)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및 조례·고시 등 자치법규 등 명칭과 조항 • 관련 규제수 항목 제외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포함)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 등의 현황 및 규모 등
	비용편의 분석결과 (포함, 변경 고려)	• 필요시 계량적 비용편의 분석 요약표 작성 • 규제·신설 강화의 장·단점으로 변경 고려
	규제의 내용 (포함)	•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대안에 대한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
	규제 존속기한·사유 (포함)	• 규제일몰제 관련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기타 제외항목	•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자치규제의 경우 중요·비중요 규제 판단의 어려움), 국제기준 (자치법규에 적합하지 않음), 규제체계도 등 • 경쟁제한적 요소는 필요시 작성 • 기타 참고사항·특이사항 등은
	규제의 필요성,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포함)	• 규제의 신설·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현황자료, 경위 등 기술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목표설정 (포함)	• 선택대안(규제)의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또는 규제 도입의 효과 등 기술

구분	항목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기술수준, 기타 행정여건 고려 규제집행의 실효성 (집행자원과 능력), 집행상 예상 문제점 등</li> </ul>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포함, 변경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계량적 분석결과를 작성하되, 규제·신설 강화의 장·단점으로 변경 고려</li> </ul>
	기타 고려사항 (일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 협의사항,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대립 실태 등 필요시 포함</li> <li>• 유사사례,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기존 규제에 대체가능 여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 활동 저해요소, 존속기한의 타당성 등 필요시 포함</li> <li>• 규제의 명료성,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기존 조직과 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관련 민원사무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절성 등 행정효율성 관련 내용 제외</li> <li>•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사후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등 제외</li> </ul>

자료원: 최무현(2023: 171-173)로부터 저자들이 재구성.

## □ 본 연구의 구성안

- 자치규제 영향분석 담당자는 시·도위원회 또는 그 사무국(또는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위 또는 그 사무국)에 작성유형(표준형·간이형)에 대한 협의를 통해 간이형 또는 표준형을 택일하여 작성하도록 함
  - 작성유형의 판단에 있어서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전문가 집단의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각 시·도위원회(또는 그 사무국)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또는 그 사무국)의 판단이 적절함
  - 작성유형의 판단: 1) 중요규제 여부(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 2) 비용·편익 분석의 실효성, 3) 주민 체감도(높은 경우 표준형 작성) 등
    - 비용·편익 분석의 실효성이 높지 않거나, 화폐단위로 정량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어려운 경우, 정성적인 분석(비용과 편익의 내용을 정성적으로 기술) 또는 비용·효과분석(화폐가치로 표현되는 편익 외에 특정 효과를 정량적으로 표현)을 수행

- 국조실의 규제영향분석서와 선행연구의 구성안, 지방자치단체 사후 영향평가 안<sup>28)</sup> 등을 종합하여 3개의 장으로 구분
  - **[1장] 자치규제 및 규제영향분석의 개요:** 1-1) 규제 사무명, 1-2) 유형, 1-3) 소관부서·작성자 1-4) 규제조문(근거법규 및 근거의 분류), 1-5) 규제의 내용, 1-6)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 1-7)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결과 요약, 1-8) 일몰설정 여부(규제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 및 사유)
  - **[2장]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2-1) 자치규제 신설·강화 필요성, 2-2) 자치규제 목표·기대효과, 2-3)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2-4) 자치규제의 지역경제 영향·파급효과<sup>29)</sup>, 2-5)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비교, 2-6) 정책적 고려사항<sup>30)</sup>
  - **[3장] 종합결론 및 기타:** 3-1) 분석결과 요약, 3-2) 기타 중요 의견, 3-3) 별첨자료(영향분석 항목의 증빙자료 및 기타 자료, 언론기사 등)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구성안:

【표 4-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자체 규제영향분석 구성안

구분	항목	비고
	1-1. 자치규제 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1-2. 분석대상 유형	• 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 28)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건의과제 분석서로서, 기존 규제의 개선대안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해당함(정기용·전대욱·김해솔, 2023: 149-151). 참고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규제의 신설·강화는 사전영향평가에 해당함. 사전영향평가와 사후영향평가는 모두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사전 및 사후 영향분석서의 핵심인 비용편익 분석은 규제당국,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 등의 영향관계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사전·사후 영향평가에 있어서 비용편익 구조의 통일성 및 지자체가 작성하는 두 서식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관련 영향평가서식의 반영이 필요함.
- 29) 자치규제의 지역경제 영향·파급효과: 경쟁제한 및 기업활동 영향(지역경제 위축요인 제외), 우선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가능성 등 필요시 작성
- 30)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규제정비계획, 규제순응도,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결과, 현재 기술수준, 유사사례,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존속기한의 타당성, 기타 행정적 영향요인·실효성(집행자원 능력, 절차·민원 등) 등 필요시 작성

구분	항목	비고
1. 자치규제 및 규제영향 분석의 개요	1-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 실·국장, 과장·담당관 등을 명기, 국장 서명 (규제실명제 관련)
	1-4. 규제조문 (근거법규 및 분류)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및 조례·고시 등 자치법규 등 명칭과 조항
	1-5. 규제의 내용	• 기존 자치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 대안에 대한 규제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요약
	1-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 등의 현황 및 규모 등
	1-7.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결과 요약	•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 요약표 또는 규제·신설 강화의 정성적인 장·단점 및 효과
	1-8. 일몰설정 여부	• 규제 존속·재검토 기한 및 사유 (규제일몰제)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2-1.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신설·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현황자료, 경위 등 • 공공부문이 개입할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인지 반드시 검토
	2-2 자치규제의 목표·기대효과	• 선택대안(규제)의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또는 규제 도입의 효과 등
	2-3.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는 위험 대비 규제대안이 과하지 않고 적절한지 여부 •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문제보다 편익이나 긍정적 효과가 더 상회하는지 여부
	2-4. 자치규제의 지역경제로의 영향·파급효과	• 경쟁제한 및 기업활동 영향,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가능성 등 체크, 필요시 내용 작성
	2-5.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비교	•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 또는 규제·신설 강화의 정성적인 금·부정적 효과 분석 세부사항 기술
	2-6. 정책적 고려사항	• 자치규제 정비계획, 규제순응도,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결과, 현재 기술수준, 유사사례,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존속기한의 타당성, 기타 행정적 영향 요인·실효성(집행자원·능력, 절차·민원 등) 등 해당 여부 체크, 필요시 내용 작성
3. 종합결론 및 기타	3-1. 분석결과 요약	•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 및 기타 고려사항을 종합한 영향분석의 결론
	3-2. 기타 의견	• 분석결과 요약 외 의사결정 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의견 및 기타 강조할 사항 등
	3-3. 별첨	• 영향분석 항목의 증빙자료 및 규제의 신설·강화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언론기사 등 별첨

## 제2절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 1. 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안)

#### □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체크리스트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2023: 9, 19)에 따르면 항목별 체크리스트는 “좋은 규제”의 요건으로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검토
  - 규제영향분석서에 제시된 “좋은 규제”의 요건
    - 목표적합성(Goal targeted): 국가전체 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규제가 도입된 구체적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여야 함
    - 투명성(Transparent): 규제 범규의 신설, 강화, 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실시와 그 반영결과 명시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는 공개하여야 함
    - 비례성(Proportional):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의 권익 침해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며, 규제로 인하여 피규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규제로 인한 편익이 커야 함
    - 책임성(Accountable): 규제자는 규제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져야 함
  - 국무조정실의 체크리스트는 전장에서 제시된 <표 3-7>에 제시된 바와 같음

#### □ 본 연구의 자치규제 영향분석 체크리스트(안)

- 국무조정실의 “좋은 규제”에 대한 요건 및 체크리스트, 기존규제 개선 건의에 관한 자치단체의 사후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자치규제의 특성과 자치단체의 역량 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 표 4-3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항목	주요내용	체크항목		
1. 문제 정의	1-1. 해결하려는 문제를 둘러싼 환경에 관하여 충분한 현황 분석과 이를 토대로 문제점의 본질, 규모, 발생이유 등을 분석·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사용한 정보는 정확하게 수집된 정보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 적절한 자료를 근거로 활용했고, 모든 자료는 그 근거(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자치단체 개입의 정당성	2-1.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설명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2. 기존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3. 규제 이외에 정부지원·교육·캠페인·민간 자율규제 등의 대안을 검토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규제목표 명확성	3-1. 신설·강화하는 자치규제의 목표가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2. 자치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의 일관성	4-1. 고려하고 있는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 정책수단은 중앙정부의 국정기조 및 규제개혁, 지방규제혁신 정책·제도와 일관성이 있고 조화로운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2. 규제의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 사유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3. 해당 규제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에 제시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4. (경제적 규제만 체크) 해당 규제대안으로 인해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협약가입 의무, 사업정보 공개 요구 등), 소비자의 선택 또는 정보 제한 등 경쟁 제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제외)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5. (경제적 규제만 체크) 피규제자 중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는가? (피규제자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없는 경우 제외)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6. (경제적 규제만 체크) 기타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발휘를 억제하는가?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제외)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세부항목	주요내용	체크항목	
5.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5-1. 해당 규제대안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를 충분히 인지하고 피규제자·이해당사자별 영향요인을 제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2. 해당 규제대안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활동의 사전·사후 등 전 과정(whole-life cycle)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3. 해당 규제대안이 발생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파급효과를 충분히 인지하며 정성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4. 제시된 규제대안들에 대한 정성적인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 또는 정량적인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이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5. 정량적 분석의 경우, 피규제자와 수혜자 등 이해당사자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관할구역 내의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의 규모가 제시되었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6. 정량적 분석의 경우, 규제의 집행·감시비용(행정당국) 외 규제순응 비용(피규제자)이 빠짐없이 성실히 추정되었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7. 정성적 분석의 경우, 이해당사자별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빠짐없이 충분히 기술되었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8.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비용대비 편익(또는 효과)를 비교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정책적 고려사항	6-1.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의 위임규제만 체크) 위임규제의 경우,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2. (경제적 규제만 체크) 해당 규제대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3. (경제적 규제만 체크) 자치규제의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주민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규제정비 추진사항 또는 계획을 제시하였나?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4.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의 협의, 의견수렴 또는 공론화 절차의 수행 결과 또는 찬·반의견을 를 제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6. 피규제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7. 해당 규제대안의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과 그 사유는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8. 해당 규제대안이 시행될 때, 피규제자가 기술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9. 관련된 유사사례를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10. 해당 규제대안을 시행하는 경우, 규제당국(지방자치단체)의 집행·감시에 있어서 인력·예산 등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이 존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11. 피규제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절차 등을 간소화 할 여지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결론 및 기타	7-1. 분석결과 요약 및 기타의견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 간략하게 기술하였나?	<input type="checkbox"/> 예
7-2. 동 영향분석의 항목별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3. 해당 규제대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 등 관련 입증자료는 첨부되었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2.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서식

- 전 절에서 제시한 구성안에 따른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의 서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그림 4-1]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1. 자치규제 및 규제영향분석 개요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1-1. 규제사무명					
1-2. 규제유형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강화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1-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자치단체명	○○○○	작성 자	이름	○○○
	담당부서(과)	○○○○○		직급	○○관
	국장	○○○		연락처	000-000-0000
	과장	○○○		이메일	_____@_____
1-4. 규제조문 (근거법규 및 분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별법 위임규제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 규제 <input type="checkbox"/> 기타(특별법·특례 등)				
1-5. 규제의 내용	기존				
	변경				
1-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이해당사자				
1-7. 비용대비 편익 또는 효과 요약	※ 시·도위원회(규개위 또는 지방규제혁신위 또는 그 사무국)에서 자치 규제의 파급효과·중요도·주민체감도 등에 따라 정성적·정성적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협의하여 결정 후 수행				
1-8. 일몰설정 여부	일몰설정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존속기한 미설정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 설정			
	존속기한 사유	※ 설정 혹은 미설정 사유 및 관련 자치법규			

**| 그림 4-2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2-1.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필요성**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내용과 원인  
 (2) 문제해결을 위한 자치규제의 필요성  
 ※ 공공부문이 개입할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인지 반드시 검토

**2-2. 자치규제의 목표·기대효과**  
 (1) 자치규제의 미래의 비전과 정량적 목표·기대효과  
 (2) 기존규제로의 대체여부 및 현 신설·강화 등 이외의 대안 (※ 표준형의 경우만 작성)

**2-3.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 신설·강화 등 변경하고자 하는 대안의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또는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거나 사회적 비용대비 편익이 더 크지, 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등 자유롭게 기술

**2-4. 자치규제의 지역경제로의 영향·파급효과 (※ 하기 각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1) 경쟁제한 요소에 대한 검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감소(협약가입 의무, 사업 정보 공개 요구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를 제한하는가? ※ 보다 자세한 판단기준은 작성요령 또는 국무조정실 「규제영향 분석지침」, p32 참조. 단,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아니오”로 응답.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와 “예”에 해당하나 상기와 같은 불가피한 조치로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간략히 기술	

(2) 기업활동으로의 영향 검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는가? ※ 보다 자세한 판단기준은 작성요령 또는 국무조정실 「규제영향 분석지침」, pp33~36 참조. 단, 피규제자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아니오”로 응답.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다음 페이지 계속)

## | 그림 4-2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계속)

## (3) 우선허용·사후규제 관련 사항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에 제시된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거나 또는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가?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및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은 작성요령 또는 국무조정실 「규제영향 분석지침」, pp36~41 참조. 상기 법에 제시된 “신기술 서비스·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위 질문에 체크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 2-5.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비교

## (1) 피규제자 및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타 이해당사자

- ※ 이해당사자별로 작성 필요, [규제당국] 자치규제의 집행·감시자인 지방자치단체, [피규제자] 권리 제한 또는 의무가 부여되는 이해당사자, [규제수혜자]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혜택이나 보호를 받는 이해당사자, [기타] 규제에 의해 긍·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 ※ 특히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민간인 경우, 표준형과 간이형 모두에서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규모(예: 주민 ○○○인, 사업체 ○○○개소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통계자료 등 규모 추정치의 근거를 제시

## (2)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로의 영향

- ※ 자치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이해당사자별 정성적으로 영향관계를 간략히 기술 (단, 규제당국,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는 반드시 작성, 이해당사자별 3줄 이내)

## (3) 이해당사자별 비용(규제집행·감시비용 및 규제순응비용) ※ 표준형의 경우만 작성

	연간 비용	추정근거
규제당국 (집행·감시비용)		
피규제자 (규제순응비용)	○○○원/년	
기타 이해당사자	○○○원/년	※ 기타 이해당사자가 없을 경우 해당 칸 삭제, 복수일 경우 여러 칸으로 표를 분할하여 작성

- ※ 규제당국의 집행·감시비용은 자치단체가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를 집행·감시하는데에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연간 비용을 의미하며,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비용은 자치규제에 의해 권리가 제한되거나 또는 의무를 부여받는 이해당사자가 해당 자치

(다음 페이지 계속)

**| 그림 4-2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계속)**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을 의미. 마찬가지로 기타 이해당사자의 경우 규제로 인해 비용추가가 예상되는 집단을 의미함.

(4) 이해당사자별 편익 또는 효과 ※ 표준형의 경우만 작성

	연간 편익 또는 효과	추정근거
규제수혜자	○○○원/년 또는 ○○○단위/년	
기타 이해당사자	○○○원/년 또는 ○○○단위/년	※ 기타 이해당사자가 없을 경우 해당 칸 삭제, 복수일 경우 여러 칸으로 표를 분할하여 작성

- ※ 규제수혜자의 편익은 자치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받는 혜택에 대해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화폐가치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기타 이해당사자의 편익은 직접적인 규제수혜자 외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혜택에 대해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화폐가치로 표현한 것을 의미
- ※ 화폐가치로 표현된 편익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관련 가격이나 비용절감분 등 관련 시장 정보가 없는 경우), 혜택을 다른 단위로 표현하는 것을 효과라고 함

(5) 비용과 편익(또는 효과)의 비교

- ※ 정량분석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B/C) 또는 비용대비 효과(B/E), 정성분석의 경우 비용 또는 편익의 정성적인 비교 등 간략히 기술

## 2-6. 정책적 고려사항

(1) 자치규제 정비계획

자치규제의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피규제자 등 이해당사자 또는 주민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규제정비 추진사항 또는 계획은 고려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2) 현재 기술수준 및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피규제자가 기술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다음 페이지 계속)

## | 그림 4-2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계속)

## (3)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자치법규 제·개정 전 피규제자 및 규제 수혜자, 이해당사자의 협의, 의견수렴 또는 공론화 절차를 수행하였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행사명, 날짜, 참석자 등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	---

피규제자 또는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신설·강화하는 규제에 대해 자치법규 제·개정 전 반대하거나 실익이 없다거나 또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	------------------------------

자치법규 제·개정 전 자치법규 제·개정 전 피규제자 또는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었나? ※ 반대 또는 우려되는 의견이 없는 경우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체크 사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	--------------------------------

## (4) 유사사례 검토결과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사례 및 검토내용 간략히 기술
-------	-------------------------------------

## (5)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행정적 영향요인 및 예상 애로사항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피규제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할 여지는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체크 사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사유를 간략히 기술
-------	---------------------------------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소속된 자치단체의 집행·감시에 있어서 인력·예산 등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이 예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체크 사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사유를 간략히 기술
-------	---------------------------------

(다음 페이지 계속)

**| 그림 4-3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및 3. 종합결론

(6)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상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자치규제의 경우, 상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가? ※ 위임규제가 아닌 경우 “아니오”로 체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사유 및 관련 검토내용 간략히 기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예: 자율규제, 강제조항보다 과태료·벌칙금 등 경제적 유인방식 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사유 간략히 기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해당 규제대안의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과 그 사유는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3-1. 분석결과 요약**

구분	[정량적 분석의 경우] 연간 비용 또는 연간 편익·효과 [정성적 분석의 경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규제당국 (지자체)	※ 정량적 분석의 경우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추가되는 자치단체의 연간 집행·감시비용을, 정성적 분석의 경우 집행·감시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되는 긍·부정적 사항을 간략히 기술
피규제자	※ 정량적 분석의 경우 피규제자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연간 규제순응비용을, 정성적 분석의 경우 피규제자의 규제순응시 변화가 예상되는 긍·부정적 사항을 간략히 기술
규제수혜자 등 이해당사자	※ 정량적 분석의 경우 규제수혜자의 연간 편익과 기타 이해당사자의 연간 비용 또는 편익을, 정성적 분석의 경우 규제수혜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의 긍·부정적 변화를 간략히 기술

**3-2. 기타 의견**

※ 기타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 또는 시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3-3. 별첨**

※ 자치규제의 신설·강화가 시급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거나 또는 본 영향분석서의 작성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첨

### 제3절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의 항목별 작성방법

#### 1. 자치규제 및 규제영향분석 개요

##### 1-1.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 신설규제는 새로운 사무명을 부여
- 강화규제는 기존 등록사무명과 연계하여 작성

##### 1-2. 규제유형 구분 : 해당규제가 신설규제인지 또는 강화규제인지를 구분

##### 1-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규제실명제에 따라 소관 실무 담당자, 실·국장, 과장·담당관 등을 명기

##### 1-4. 규제조문(근거법규 및 분류)

-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상위 위임법령, 자치법규, 특별법(특례, 특별법에 의한 사무위임) 등의 명칭과 조항

##### 1-5. 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 : 신설되는 규제의 주요 내용
- 기존규제의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 현행 규제의 내용과 변경하려는 내용

##### 1-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 규제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자

- 피규제자 : 지역 내·외의 기업 및 소상공인, 일반국민으로 구분
- 기타 이해당사자 : 규제당국(자치단체,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 규제의 시행에 따라 피규제자 외에 영향을 받는 집단 등

##### 1-7. 비용대비 편익 또는 효과 요약

- 규제의 정량적·정성적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 결과 요약표
- 정량분석의 경우 비용·편익 비율(B/C ration) 또는 비용효과 비율(B/E ratio), 정성분석은 비용 또는 편익의 정성적인 비교

### 1-8. 일몰설정 여부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규제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의 설정 여부를 표기하고, 설정 또는 미설정 사유를 표기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 2-1.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필요성

####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내용과 원인

- 자치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기술
  - 추진배경에서 다루어지는 현황과 문제점은 규제영향분석의 출발점이며 전체적인 논리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서 중요한 단계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과 규제의 도입목표를 설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통계나 사례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된 모든 자료는 출처와 함께 제시해야 함
- “현황”이란 지금 현재의 상태(status quo) 즉, 공공부문의 추가적인 개입이나 결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함
  -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지역 내 또는 필요시 지역 내·외 관련 산업계나 사회단체 등의 규모와 관련 활동 실적
  - 기존 법령이나 규제, 이미 취해진 자치단체의 정책·프로그램과 그 운영실태
  - 기존 규제가 없이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비규제나 자율규제 등의 제도와 운영실태를 분석
- “문제점”이란 규제의 신설(강화)을 통해 해결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상태를 의미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
  - 기존 현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개입이 없는 상태나 부족상태)에 따라 발생한 문제 상황 및 부정적 결과의 규모와 그 심각성
  - 단순한 사례 나열적 접근보다 추세와 경향성에 입각한 문제 상황 제시가 필요

- 부정적 결과의 영향을 받는 주체
-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제도 미비, 시장의 실패, 기존 규제의 실패, 재해·위험, 기타 지역특성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관련 요인)

## (2) 문제해결을 위한 자치규제의 필요성

- 시장기능 또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불가피하게 신규로 또는 추가적으로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근거자료 (출처명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
- 문제점에서 지적한 자치제도의 미비, 시장실패, 기존 규제의 실패, 재해나 위험 등의 요인, 기타 지역특성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등의 들로 인해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할에 대해 서술
- 자치규제 외의 대안이 지역문제 해결에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
- 신규조문 대비표 : 기존규제와 신설 또는 강화되는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

## 2-2. 자치규제의 목표·기대효과

### (1) 자치규제의 미래의 비전과 정량적 목표·기대효과

- 자치규제의 신설·강화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황을 서술
  - 정량적 목표치를 제시하되, 불가능한 경우 시·도위원회 또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또는 그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성적으로 기술
- 자치규제 도입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서술
  - ‘자치규제 도입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지역정책의 의도를 집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서, ‘추진배경’에서 검토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최종결과를 의미
  - 기존에 존재하던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가 가졌던 목표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하며, 기존규제의 목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원인을 파악하고, 목표가 바뀌는 경우에는 바뀌게 된 원인을 검토해야 함

- 규제도입의 목표가 다수인 경우에는 주된 목표와 부수적인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기술하여야 함
- 목표의 달성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적 측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2) 기존 규제로의 대체 여부 및 현 신설·강화 등 이외의 대안 (※ 표준형만)**

-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고려하고 있는 변경안 이외의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동일한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발굴·검토 필요)

**| 표 4-4 | 현 신설·강화 등 이외의 대안 기술**

현행 유지안	명칭	
	내용	
	장·단점	
신설·강화 등 현재 추진안	명칭	
	내용	
	장·단점	
대안	명칭	
	내용	
	장·단점	

- 현행유지안 :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의 규제 대안
  - 신설 규제의 경우 : 기존 규제 없음
  - 강화 또는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 또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관련 규제들을 서술
- 신설·강화 등 현재 추진안 : 현재 추진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기술

- 대안 : 신설·강화 등 현재 추진안과는 다른 방식의 규제대안으로서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규제 대안이나 현재 추진안에 비해 완화된 다양한 방식의 규제대안들을 검토
  - 비규제대안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적 특성이 제외된 대안(예: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세금감면 혜택 및 이차보전·저리융자 등 금융지원, 캠페인, 공익광고 등 사회운동, 민간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등)
  - 저강도 규제대안 : 현재 추진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더 완화하거나 피규제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등(예: 현재 추진안이 허가제인 경우 등록제·신고제 등을 대안으로 고려 가능), 기타 피규제자 집단(예: 사업체 협회 등)의 자율 규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여에 있어서 강행조항이 아닌 경제적 유인책(과태료·벌칙금 등)
  - 기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규제대안 : 현재 추진안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를 검토(예: 현재 추진안이 구비서류 서면접수인 경우 전자(온라인)접수 등을 대안으로 고려 가능)

### 2-3.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도입대상 규제대안이 규제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는지 검토하여 기술
- 비례적 타당성 판단기준: 1)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문제나 위험과 비교하였을 때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지 않고 적정한지 여부, 2)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편익이 많은지 여부
  - 비례적 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안과 추진 이후 기대되는 최종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사항들을 포함: (1)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집단의 규모, (2) 규제의 영향이 발생하는 기간 및 규제 영향의 분포·범위(규제영향이 특정집단에 집중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지 등), (3)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집단 간 이해충돌 정도

## 2-4. 자치규제의 지역경제로의 영향·파급효과 (※ 하기 중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1) 경쟁제한 요소에 대한 검토

-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각 검토항목별 (A~D)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 단,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해당여부 제외)

【표 4-5】 경쟁제한 요인에 대한 검토항목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 다음과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 부여 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예: 특정지역·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 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 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 (단, ②, ③, ⑤의 경우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해당여부 제외)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input type="checkbox"/> 해당	※ 다음과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①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 ②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함 ③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일반소비자가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 ④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증가 시킴(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단, ②, ④의 경우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해당여부 제외)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input type="checkbox"/> 해당	※ 다음과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①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②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에서 배제함 (단, ①, ②, ③의 경우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해당여부 제외)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해당	※ 다음과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제한) 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 시킴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좌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료 부과 등) 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한 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단, ①, ②, ③의 경우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해당여부 제외)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2) 기업활동으로의 영향 검토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피규제자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규제자에 포함된 경우 상기 법적 근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선행할 필요는 없으나, 동 평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제 차등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그 특성에 맞도록 규제부담을 경감시키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 유예 등)를 의미함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참조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예시
  - [규제 내용의 차등화] 공사 규모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기준 차등화 등 적용기준의 차별화, 매출액 규모 일정액 미만 기업은 인수합병 심사절차 생략 등 절차 차등화
  - [규제 시기의 차등화] 기업규모 등에 따라 HACCP 의무적용시기 차등화
  - [규제 순응 확보의 차등화] 작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사, 감독, 단속 등 완화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의 해당 부문에 자치규제의 피규제자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포함될 경우 피규제자 및 규제차등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간략히 기술
  - 차등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지역내 피규제자의 업종 및 규모, 규제차등화 내용 및 기대효과 등

### (3) 우선허용·사후규제 관련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상기 법령과 같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한 조치사항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적용 또는 미적용의 사유 등을 간략히 제시
    - 기타 포괄적 네가티브 규제,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 규제샌드박스 등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023.4)」 pp37-41 참조

## 2-5.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비교

-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은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관련된 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현금흐름을 추적하여 비용대비 그 편익(국민경제적 효과)이나 효과(그 외 다른 측정단위의 효과)를 비교하는 의사결정 방식임
  - 즉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은 우선적으로 각 대안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을 규명하고, 아울러 그 영향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영향관계를 화폐가치로 이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함
- 중요한 것은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은 어떠한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수단으로서, 비용과 편익이라는 화폐가치로 정량화 시키거나 또는 다른 측정단위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의 구조 하에서 보다 자세히 그 속성과 파급 효과를 감안해 봄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데에 있음
  - 따라서 화폐가치로 환산 여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이는 기술적인 사항에 불과하며), 보다 본질적으로 각 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규제비용 감축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성과측정을 시도하므로 정량적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나, 자치규제의 경우 피규제자의 지역적 한정(통상 비용·편익 분석은 국민경제 단위, 즉 국가 전체적인 수혜를 화폐가치로 환산) 등 적용을 위한 문제점 또는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향후 연구·분석 등을 통해 수행방안 고도화 필요
- 정량적인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어려운 경우 화폐가치로 무리하게 분석을 수행하는 것 보다는, 다른 측정단위로 분석 또는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각 대안의 평가도 가능함
  - 편익에 해당하는 긍정적 영향요인에 대한 화폐가치가 아닌 타 측정단위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이나, 또는 각 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별 영향받는 사항들을 정성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대안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음

**(1) 피규제자 및 기타 비용·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로는 1) 규제당국(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2) 피규제자(주민·사업체 등), 3) 규제수혜자 등으로 구분됨. 2)와 3)의 경우 반드시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일 수도 있음
- 비용·편익 분석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기술해야 하며,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미치는 다른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간략히 기술

**(2)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로의 영향 (일단 정성적으로 기술)**

- 규제당국의 경우, 규제의 신설·강화시 규제의 집행·감시활동에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음. 예컨대,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새로운 기준이 충족되는지 감시활동이 강화될 수 있음(감시비용 증가 예상)
- 피규제자의 경우 규제를 통해 그 활동에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음, 즉 규제의

순응비용이 변화할 수 있음. 예컨대,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로 기업활동에서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함(비용증가 예상)

- 규제수혜자의 경우, 규제가 없거나 기존 규제 하에서 발생된 문제가 있었다면, 새롭게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임. 즉, 사회경제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가 예상되는데, 예컨대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시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음

### ※ 표준형의 경우에만 (3) 및 (4) 작성

#### (3) 이해당사자별 비용

- 재정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 초기에 집중된 투자를 통해 관련 시설·장비 등의 내구년수 동안 창출되는 수혜자의 편익을 계산 하는데에 반해,
- 규제를 대상으로 한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 집행·감시비용 및 규제순응비용 등 매년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초기에 집중되지 않으므로 투자의 내구년수를 감안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현재가치에 의한 비교방식이 아닌 연간 비용(또는 연간 균등화 비용)으로 비교가 가능함
  - 즉, 일정기간을 감안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한 비용·편익 분석이 아닌 연평균 소요비용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편익의 비교가 가능함
-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의 기간과 할인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함
  -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 특정 사업의 수명주기(life-cycle) 전 과정의 기간(통상 30년)을 감안하여 각 시기별로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비용대비 편익 비교방법 외에도, 미래 편익의 발생으로 인해 초기 비용투자를 회수하는 미래 시점(payback period)에 관한 분석, 연간 균등화 비용과 편익(annualized cost & benefit)의 비교 등 다양한 분석방법이 존재함

- 규제당국은 전술한 규제집행·감시활동의 변화에 따른 연간 비용의 변화를 감안해야 하며, 피규제자의 경우 연간 규제순응비용의 변화를 감안해야 함
  - 즉 신설 규제의 경우 해당 규제의 집행·감시를 위한 규제당국의 인력·예산과 피규제자의 규제순응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감안해야 함
  - 기존 규제의 강화의 경우, 규제당국의 집행·감시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과 피규제자의 규제순응을 위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야 함
  -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기존 집행·감시 비용대비 편익을 연장되는 기간 동안 고려함

#### (4) 이해당사자별 편익 또는 효과 (※ 표준형의 경우만 작성)

- 규제순응비용의 지출로부터 규제수혜자가 받는 혜택 또는 긍정적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을 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며, 전술한 것과 같이 규제의 시행에 따른 연간 비용외에 수혜자들이 받는 연간 편익을 계산
- 수혜 또는 긍정적 효과를 화폐가치로 추정하지 않고 다른 측정단위로 측정하는 것(예: 안전 규제 강화로 지진·해일시 생존률 〇〇% 증가 등)을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라고 하며, 특히 여러 대안을 비교할 때 이와 같은 다른 측정단위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대안의 우월성 평가가 가능함
  - 규제영향분석 표준형에서 신설·강화 등 현재의 추진안 외에 현행 유지안 및 기타 대안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규제영향분석에서 비용·효과분석은 큰 의미는 없으나,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환산하는 것보다는 추후 타 대안과의 비교 등을 염두에 둘 때 관련 긍정적 효과의 정량화라는 점에서 정성적인 분석보다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비용·편익 계산의 경우 필요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함

### (5) 비용과 편익(또는 효과)의 비교

- 정량적 분석, 즉 화폐가치로 환산한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B/C ratio = Benefit 총합 ÷ Cost 총합), 비용·효과분석의 경우 비용대비 효과의 비율(B/E ratio = Effectiveness 총합 ÷ Cost 총합)을 제시
- 정성적인 분석의 경우, 각 이해당사자별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했을 때 현재 추진안이 바람직한 대안임을 설득력있게 기술함
- 기타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 기타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2023.4)」 pp44-56, 61-69 참조

## 2-6. 정책적 고려사항 (※ 하기 각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1) 자치규제 정비계획

- 자치규제 정비계획은 해당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규제 정비 추진사항 또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개정 등의 일정계획 등을 간략히 제시

### (2) 현재 기술수준 및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

- 피규제자가 처한 현실(기술수준, 경제적 순응가능성, 유사분야 순응도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규제준수의 수월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장애 및 그 해소방안에 대해 기술

### (3)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 규제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하고 반영여부 등 조치 결과를 제시

### (4) 유사사례 검토결과

- 현재 추진안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외의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진사례 등의 검토내용을 필요시 요약

### (5)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행정적 영향요인 및 예상 애로사항

- 자치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규제당국의 집행·감시비용의 변화에 대해 앞서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인력이나 비용의 조달 등 추가되는 비용의 조달방안 및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절차상 영향요인 등을 필요시 기술

### (6)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의무는 없으나 중앙의 규제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자치규제 역시 일몰기한의 설정을 권장하며, 존속기한과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3. 종합결론 및 기타

### 3-1. 분석결과 요약

-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따른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 등 이해당사자별 영향관계 요약, 정량분석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또는 효과) 비율 제시
- 현재 추진안이 적절한 수준이며, 현재까지 고려되는 안 중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제시

### 3-2. 기타 의견

- 3-1. 분석결과 요약 외에 3-1에서 언급하지 못하였으나 의사결정 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의견 및 기타 강조할 사항 등

### 3-3. 별첨

- 영향분석 항목의 증빙자료 및 규제의 신설·강화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언론기사 등 필요시 별첨



# 제 5 장

## 결 론

제1절 정책제언 및 법제개선안

제2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한계



# 05 결론

## 제1절 정책제언 및 법제개선안

### 1. 자치규제 영향분석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 자치규제 품질관리 체계의 마련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그 소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 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며, 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쟁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이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 기본법에 명시적 규제영향분석 의무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동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른 규제등록제 및 규제심사 등 규제품질관리의 시행을 규정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의 규제절차에서는 상기 기본법에 의해 규제등록 및 시행에 앞서 규제심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므로, 자치규제 영향분석 제도 역시 자치규제에 대한 규제심사를 전제로 함
  - 규제절차는 행정기관의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규제가 선택 및 도입되고 규제안이 규제로 성립되는 과정과 법령이 개폐됨으로써 변경 및 폐지되는 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 따라서 규제도입, 조례·규칙 입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의회 심의·확정, 규제 등록 및 시행, 규제 변경 및 폐지의 단계로 구성됨

〈그림 5-1〉 자치법규 규제절차

단계	내용
규제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도입, 조례·규칙 입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의회 심의·확정 과정이 포함</li> <li>• 지자체가 규제도입 여부 검토 후 규제도입이 필요한 경우 규제안 마련 및 법령의 형태로 입안하여 규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li> <li>• 규제형성 여부 판단은 30일 이내 진행</li> </ul>
▽ 규제등록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공포 및 시행에 따른 효력 발생 단계로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li> <li>• 법령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규제 전담 부서에 규제 명칭, 내용 및 법적 근거 등록</li> </ul>
▽ 규제변경 및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목적이 달성한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후 규제의 변경 또는 폐지하는 단계</li> <li>• 규제 입증책임제에 따라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함</li> </ul>

자료: 행정안전부(2024: 68-69)

- 자치규제 영향분석 제도는 따라서 자치법규 규제심사 제도의 명확한 법령 규정을 전제로 영향분석의 의무화 및 시행방안 등의 제도화가 필요함
  - 1) 자치단체(시·도)의 자치규제에 대한 심사제도 및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규제 영향분석 의무화(지방규제혁신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2) 각 자치단체(시·도)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또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자치규제 심사에 대한 역할 부여(신설·강화시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활용)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작성 전 시·도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에서 간이형 또는 표준형 작성 판단 필요
    - 판단기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의무제출이 요구되는 서류 내용의 구체화 정도,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 및 관련 규제, 기타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는 주민생활 체감도 등
  - 3) 행정안전부 및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 중 사전협의, 중요규제의 판단 및 자체심사에 대한 예비심사·본심사·재심사 등 자치규제 심사관련 제도의 고도화 및 정비

- 4)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의 지방규제 적용(기존 시스템 활용 또는 자치규제를 위한 별도 구축 등)
- 5) 전문기관의 영향분석서 검토역할 부여 등

#### □ 자치규제 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1)

- [1안]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규제 심사 도입 및 규제영향분석 활용 방안
  - 현 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조항 추가를 통해 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및 영향분석 의무화를 기본법에서 규정
  - 단, 자치규제 심사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각 시·도위원회의 연계 및 역할분담 등은 추후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치규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전제로 한 자체심사를 전제로 함
    - 현 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심사·본심사(중요 규제의 판단 여부) 및 재심사 등은 시·도의 ‘자체심사’의 틀 안에서 시·도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추진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자치법규의 규제등록제 개정안:
    - 기본법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지자체 관련 제4항 추가: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시행령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도 항 추가: ⑤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또는 하위법규)으로 정한다.)

- 자치법규의 규제심사 체계: 시·도 규개위 및 역할 부여
  - 기본법 제23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시·도위원회 항 추가: ② 시·도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중앙위원회)의 경우, 규개위 산하 자문기구로서 현행 법체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인 역할 확대 및 성과 견인을 통해 기본법 개정 필요(독립기구로서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대한 항 추가)
  - 대통령령 제29조의 2(시·도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신설 : ① 법 제23조 제2항의 시·도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또는 하위법규)로 정한다.
- 자치법규 심사를 위한 사무처리:
  - 기본법 제31조(규제개혁위원회 사무처리) 항 추가: ③ 제23조 제2항의 시·도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대통령령 제29조의 2(시·도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신설 : ②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도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또는 하위법규)로 정한다.
- 자치규제에 대한 시·도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자치법규의 개선 관련 항 추가: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자치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자치규제 영향분석을 하고 자치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자치규제 영향분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의 주요내용(대령 또는 부령 위임 각호의 내용)
    1. 자치규제의 근거 법규 및 위임 범위
    2. 자치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3. 자치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4. 자치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5. 자치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키한(일정기간마다 그 자치규제의 시행 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6. 자치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7. 자치규제의 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8.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9. 자치규제가 현재 기술수준 등을 등을 감안할 때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치규제의 준수에 용이한지 여부
  10. 자치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1. 자치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기타 규제등록제의 운영 및 등록규제 정비방안:
-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부적절한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정비 관련 항 추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적절한 자치법규 등록규제에 대한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적절한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범위 :

판단오류 등록규제 정비 필요사항	오등록(행정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한 경우) 및 등록(행정규제임에도 규제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제 판단 명확화 및 등록규제 정비
갱신오류 등록규제 정비 필요사항	조례 미갱신 오류(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개·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의 개·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등록 미갱신 오류(지자체 조례 개·폐에도 불구하고 규제 등록을 미갱신한 경우 탐지 및 정비
등록오류 등록규제 정비 필요사항	축소 등록(여러 개의 조문에 걸친 규제를 하나의 규제로 등록한 경우), 분할 등록(하나의 조문을 여러 개의 규제로 등록한 경우), 불일치 등록(자치법규명 또는 조문번호 오류, 미기재 등) 탐지 및 정비

- 자치규제 품질관리 지원체계 및 기반구축:
  -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에 전문기관 관련 항 추가: ③ 시·도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도 전문 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또는 행정안전부 훈령)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행정안전부 훈령)의 근거를 유지하며, 시·도위원회 전문기관(시·도연구원, 대도시 연구원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원칙과 지원근거 등 하위법규·자치법규에서 규정 필요
  - 자치규제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관련, 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 개정 필요(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개정 및 제3항 추가) :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를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와 지방규제혁신을 위하여...”로 개정.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규제혁신과 관련된 규제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 자치규제 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2)

- [2안] 별도의 법령 제정을 통해 시·도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본심사·재심사 등 자치규제 심사를 규정하고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
  - [1안] 기본법 개정은 국무조정실과의 업무분장 및 협의 등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안]으로 “지방규제혁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신규 법률 제정시 지방규제혁신과 관련된 장을 추가하는 안을 고려함
  - 지역특화 규제혁신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제○조(지역특화 규제혁신 전략)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규제혁신(이하 “지역특화 규제혁신”이라 한다)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시도위원회는 제○조의 제1항의 심사·정비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특화 규제혁신의 취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중앙위원회는 지역특화 규제혁신 전략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자치규제 품질관리 추진체계, 심사제도 및 사무처리:
- 제○조(중앙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규제혁신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지방규제규제혁신을 위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0. 자치규제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0.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자치규제 관련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조(시·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도의 지방규제혁신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지방규제규제혁신을 위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방규제혁신[또는 개혁]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0. 자치규제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0. 지방규제혁신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지역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제○조(사무기구): 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중앙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가 수행한다. ② 시·도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사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자치규제에 대한 시·도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 제○조(자치법규의 개선)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자치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규제 영향분석을 하고 자치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각 호의 내용은 [1안]과 동일)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적절한 자치법규 등록 규제에 대한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적절한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범위는 [1안]과 동일)
- 자치규제 품질관리 지원체계 및 기반구축:
  - 제○조(전문 연구기관) :
    - ① 중앙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 ② 시·도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전문 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자치규제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관련 제○조(종합정보시스템) :
    -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조의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의 정비에 대한 건의 및 이행관리, 제○조의 자치규제의 정비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자치규제 영향분석 제도를 위한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 □ 전문가 지원의 필요성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 자치규제 심사제도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해서는 시·도별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체의 마련이 시급함
  - 지방규제혁신의 영역 중 자치법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및 품질 관리<sup>31)</sup>에 있어서, 규제당국 및 피규제자·규제수혜자 등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넘어선 전문적 지원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sup>32)</sup>을 작성함에 있어서 정책 타당성 분석, 지역경제 효과분석 등의 전문가 집단의 도움과 작성내용에 대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함
- 대상 전문가와 거버넌스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 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역소재 대학, 중앙 및 시도·대도시 연구기관(인구 50만·100만 도시) 등 규제개혁 또는 정책타당성 분석, 지역경제 효과분석 등의 분야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 필요
  - 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하위 추진체계 구성방안과 전문가 거버넌스 체계의 역할 및 참여방안
    - 현행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1·2분과, 행정사회분과), 사무기구(국조실 규제조정실, 규제심판부 포함), 전문기관 외에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규제혁신위원회 운영세칙」(국조실 훈령) 제18조에 따른 규개위 산하 4개 자문기구(비용분석위, 신산업규제혁신위, 기술규제위, 지방규제혁신위)를 설치함
    - 시·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규제와 기술규제가 많지 않고 규제 집행·감시 및 순응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치규제의 특성 상,

31)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의 선택 및 작성지원(비용-편익분석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인증책임제도 운영 등

32) 자치규제의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지역경제로의 영향·파급효과(경쟁제한 및 기업활동 영향요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가능성 등),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이해당사자 파악 및 영향관계 도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한 화폐단위 비용-편익의 추정 등

상기와 같은 자문기구를 감안할 때 비용-편익관련 자문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며 현실적임

- 비용편의 전문 자문기구(안): 1)시·도연구원의 공공투자분석센터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 지원담당 전문가 중심의 구성, 2)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규제개선 건의를 위한 사후영향분석(정기용·전대욱, 2023) 뿐만아니라, 신설·강화되는 자치법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관규제의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및 검토기능 담당, 3)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규제혁신 관련 행정안전부의 특고세 지원 등

- 기타 고려사항:

-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사항: 행안부 전문기관은 17개 시도의 중앙규제 건의과제 분석서의 검토는 가능하나, 17개 시·도 전체의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검토는 업무량 등에서 무리가 따름
- 따라서 각 시·도위원회의 비용편의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1) 시·도자문기구 지원 및 담당자 네트워킹, 교육·역량강화 지원, 2)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역량강화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 지방규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연계방안

○ 현 국조실의 중앙행정기관 소관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요구되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에 대해, 이를 자치규제 영향분석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이 존재:

- [1안] 현존하는 국무조정실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 현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가 규제정책 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확보, 관련 데이터의 국가 수준에서의 축적·관리 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 중앙규제에 대한 작성항목과 자치규제의 작성항목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중앙규제의 경우 규제비용감축제 등을 배경으로 폐지·완화 및 규제

대안의 모색 등 자치규제와 정책적 관리의 배경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시스템 내에 별도의 ‘자치규제 영향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결하는 방안이 적절하나, 이는 다음 [2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음
- [2안]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종합정보시스템의 하위시스템으로 ‘e-자치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안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의 정책범위인 1)중앙행정기관 소관규제의 개선 건의 및 처리, 2)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관리 및 정비, 3)지방자치단체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을 아우르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특히 지자체 등록규제 관리 관련 별도의 ‘e-자치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
  - 이는 지방규제혁신 관련 법령의 정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상 및 설계·구축 등 장기적인 과정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치단체의 영향분석서 작성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 등의 관찰·수집을 통해 시스템 구축의 범위와 효율적인 기능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무조정실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은 해당 규제의 특성에 맞게 기능이 설계되고 최적화되어 지방규제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에 맞는 연구가 불가피하며, 현재 동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원활히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시스템의 구축이 규제영향분석이나 비용편익 분석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 역시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의 작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e-자치규제 영향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 등은 최대한 국무조정실 ‘e-규제영향 분석시스템’과 유사하게 유지하여 중앙-지방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 필요
  -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력 편집화면, 규제사무명 및 신규조문 비교, 표준형 및 간이형 유형선택 등 기본적인 사항은 현행 유지
  - 단, 자치규제 영향분석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함

- 현재 국조실 시스템에서 “신설·강화규제의 영향분석”과 “폐지·완화규제의 비용분석”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비용총량감축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자치규제 영향분석 시스템에서는 단일화 필요
- 자치규제는 중앙규제와 달리, 규제의 집행·감시 등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운용에 필요한 비용과 경제규제에 따른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의 타당성에 있어서 규제비용총량제나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비례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크지 않음
- 또한 규제당국 및 피규제자의 비용추정 방법의 경우 중앙규제와 같이 원가추정방식(직접비용 추정을 위한 9가지 산출공식 등)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치규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전제한 바와 같은 이해당사자별 연평균 비용(규제당국의 집행·감시비용의 연간 비용 추정치, 피규제자의 연평균 규제순응비용 추정치 등, 원단위 추정 등 간단한 방식으로 추정 필요)과 같은 추정방식에 적합하도록 비용-편익 분석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조실 시스템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시 분석기간·할인률, 이해당사자 비용추정 방법 등이 중앙규제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치규제 영향분석의 정성적 기술이나 간소화된 분석 방법에 따라 간소화된 비용-편익 분석방안을 구체화·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화폐가치로 계량화된 비용-편익 분석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때로는 비용-효과분석이나 정성적인 영향관계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시스템에서 세부항목 중 비용-편익 분석의 기능적 최적화에 대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자치규제의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서식은 체크리스트 및 체크사유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작성방식에 맞게 입력항목 재구성 필요

- 특히 이러한 자치규제 영향분석에 적합한 시스템의 도출을 위해서는 자치규제 및 신설·강화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규제의 특성과 비용-편익 등 분석의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즉, 자치규제의 영향분석에 관한 다양한 사례의 축적과 분석을 통해, 전술한 자치규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의 효과적 적용 방안 등을 도출하여 이를 시스템에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 아울러 자치규제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제도적 의사결정의 병행과 함께, 시·도위원회 및 시·도 전문기관과의 거버넌스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기능과 범위를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한계

### □ 연구의 목적·범위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고시, 훈령 등)에 의한 등록 규제의 신설·강화를 전제로 한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방법론을 개발·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적인 규제정책에서 지향하고 있는 규제일몰제 등 규제품질관리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지침을 자치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함
  - 자치규제의 사전적 타당성 검토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여건,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반영한 간소화되고 표준화된 방법론을 도출함

### □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본 연구는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한 자치규제 및 등록제도, 영향분석서 작성 등 자치규제 현황 분석
  -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개념·이론적 접근 및 국·내외 사례분석
  - 지방규제 영향분석과 관련된 법·제도 분석, 자치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추진 필요사항, 영향분석서(안),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매뉴얼(항목별 세부 작성 방법)의 도출 등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의 실제사례 시범적용(연구과제 종료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대상 지자체 공모 후 별도 시행) 및 영향분석서(안)의 시행을 위한 정책제언 등

## □ 자치규제 규제영향분석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 ○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규제등록 및 사전영향분석 운영현황

- 2023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총제·개정건수는 33,706건(제정 8,538건, 개정 25,168건)
- 이로부터 등록된 자치규제는 총 771건(신설 358건, 강화 116건, 완화 295건)이고, 자치규제의 등록률은 2.3%에 불과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설 64건, 강화 30건, 완화는 82건으로 총 176건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신설 294건, 강화 86건, 완화는 213건으로 총 593건임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2023년 기준 46건으로, 경기·전북·대구·대전·서울·제주의 총 6개의 지역에 표준양식이 있음
  -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건수는 319건이고 84개 지역에 표준양식이 존재함
- 따라서 규제품질관리의 지방자치단체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규제 혁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자치규제의 특성에 맞는 영향분석서(안)를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개념·제도와 국내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담당자가 제기된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 및 비규제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대안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제의사결정 수단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님
  - 성공적 정책운영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좋은 규제를 지향,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하여 규제의 품질을 제고,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예방, 규제당국의 민주적·합리적 역량을 강화 등
- 우리나라에서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현재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시 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며,

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쟁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이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됨

- 또한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1개의 사례(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를 분석함
- OECD 및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법안의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메커니즘으로 대다수의 OECD 가입국에서 규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도구로 활용됨
  - 영국은 '06년 규제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A) 제도로 개편
  - 호주는 '22년 OIA(Office of Impact Analysis)을 통해 기존 규제영향분석(RIA) 및 규제영향진술서(RIS)가 영향분석(Impact Analysis: IA)으로 통합됨
  - 미국은 '23년 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의 Circular No. A-4의 개정·발표를 통해, 특정 규제영향분석('24.3월) 및 특정 규제의 타 규제 뒷받침을 위한 규제영향분석('25.1월)을 시행 등
- 국·내외 사례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1) 작성에 필요한 항목으로는 규제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규제 내용, 비용-편익분석으로,
  - 2) 국·내외 사례에서 비용편익-분석을 강조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검토가 중요하므로 보다 간소화된 방법이 필요하며,
  - 3) 특히 지방규제의 경우 해당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역내 이해관계자의 규명과 그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 자치규제 영향분석제도의 추진과 영향분석서(안)

○ 자치규제 영향분석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또는 제도화 방안

- 1) 자치단체(시·도)의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지방규제 혁신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2) 각 자치단체(시·도)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또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자치규제 심사에 대한 역할 부여(신설·강화시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활용)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작성 전 시·도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에서 간이형 또는 표준형 작성 판단 필요
    - 판단기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의무제출이 요구되는 서류 내용의 구체화 정도,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 및 관련 규제, 기타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는 주민생활 체감도 등
  - 3) 행정안전부 및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 중 사전협의, 중요규제의 판단 및 자체심사에 대한 예비심사·본심사·재심사 등 자치규제 심사관련 제도의 고도화 및 정비
  - 4)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의 지방규제 적용(기존 시스템 활용 또는 자치규제를 위한 별도 구축 등)
  - 5) 전문기관의 영향분석서 검토역할 부여 등
- 영향분석서(안): 체크리스트 및 서식, 세부항목별 작성방안 등 4장 참조

| 표 5-1 | 지방자치단체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안)의 주요 내용

구분	항목	비고
1. 자치규제 및 규제영향 분석의 개요	1-1. 자치규제 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1-2. 분석대상 유형	• 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1-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 실·국장, 과장·담당관 등을 명기, 국장 서명 (규제실명제 관련)
	1-4. 규제조문 (근거법규 및 분류)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및 조례·고시 등 자치법규 등 명칭과 조항
	1-5. 규제의 내용	• 기존 자치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 대안에 대한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요약
	1-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 등의 현황 및 규모 등
	1-7.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결과 요약	•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 요약표 또는 규제·신설 강화의 정성적인 장·단점 및 효과
	1-8. 일몰설정 여부	• 규제 존속·재검토 기한 및 사유 (규제일몰제)

구분	항목	비고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2-1.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 신설·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현황자료, 경위 등</li> <li>공공부문이 개입할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인지 반드시 검토</li> </ul>
	2-2. 자치규제의 목표·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대안(규제)의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또는 규제 도입의 효과 등</li> </ul>
	2-3.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는 위험 대비 규제대안이 과하지 않고 적정한지 여부</li> <li>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문제보다 편익이나 긍정적 효과가 더 상회하는지 여부</li> </ul>
	2-4. 자치규제의 지역경제로의 영향·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제한 및 기업활동 영향,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가능성 등 체크, 필요시 내용 작성</li> </ul>
	2-5.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량적 비용편익 분석 또는 규제·신설 강화의 정성적인 긍·부정적 효과 분석 세부사항 기술</li> </ul>
	2-6. 정책적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규제 정비계획, 규제순응도,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결과, 현재 기술수준, 유사사례,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존속기한의 타당성, 기타 행정적 영향요인·살효성(집행자원·능력, 절차·민원 등) 등 해당여부 체크, 필요시 내용 작성</li> </ul>
3. 종합결론 및 기타	3-1. 분석결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 및 기타 고려사항을 종합한 영향분석의 결론</li> </ul>
	3-2.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석결과 요약 외 의사결정 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의견 및 기타 강조할 사항 등</li> </ul>
	3-3. 별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향분석 항목의 증빙자료 및 규제의 신설·강화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언론기사 등 별첨</li> </ul>

## □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본 연구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통한 규제품질관리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자치법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규제에 동 규제영향분석의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님
  - 현재 광역·기초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의 전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을 통해, 지방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를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좋은 규제를 지향할 도모

- 전국적으로 다소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치규제 영향분석의 표준안을 보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의 수행을 지원하고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자치규제 품질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여건,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구성된 간소화된 규제영향분석서(안)를 도출하고, 정량적인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정성적인 비용-편익분석 또는 비화폐적인 비용-효과분석 등을 채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

○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님

-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영향분석서(안)의 실제사례에 대한 시범적용을 통한 분석서(안)의 고도화가 필요하나, 이는 연구과제의 종료 후 별도의 과정을 통해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한 간소화되고 용이한 영향분석 방안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영향분석의 본질상 비용-편익분석 등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시·도의 지원체계 구축 등 실제적 추진을 위한 더 깊은 고민과 정책·제도적 결정 및 추진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제 영향분석에 대한 제도적 의무화와 각 지역의 지방 규제혁신위원회(또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자치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자치규제 심사제도 등의 제도화와 병행되어 본 연구결과의 활용이 도모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자치규제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치규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서(안)의 보완 등 경험적이며 실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 국내 및 해외 문헌 ]

- 국무조정실.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 33개 지자체와 그림자 규제 해결전략 모색,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2022). 규제개혁 백서.
- 국무조정실. (202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 김건위·이병기. (2019).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태진·이병일·김정현. (2023). 지방규제 현황 분석 및 혁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박균성. (2009). 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3(1): 485-502.
- 박영도·장영일. (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 변병설. (2022). 「규제개선 건의과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규제혁신 전략 수립 연구」. 한국정책학회·행정안전부.
- 안혁근. (2014).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엄영호·손선화. (2018). 한국 지방규제의 변화 특성 분석: 신설·강화·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4.
- 이민호·원소연·심우현. (2018).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분석: 4개 재검토행 일몰규제를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이현정. (2024). 「규제체계와 규제영향분석의 주요국 제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임원혁 외. (2014). 「규제제도 및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 정기용·전대욱·김해솔. (202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석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창화. (2019). 독일의 규제체계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Luhmann 의 자기생산체계 이론적 시각에서. 한국행정연구, 28(2), 31-57.
-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최무현·황윤성. (2023). 그림자규제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개념화와 유형화를 중심으로, 정부행정19(2):29-55.
- 최무현. (2023).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행정안전부.
- 최유성. (2003). 「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최유성. (2015).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분류지침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최유성·이종한·김신·최무현. (2019). 「지방규제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유형별 규제 해결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 한국행정학회. (2023).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행정학회.
- 한귀현. (2016).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7(2): 219-242.
- 황해동·전대욱·김필. (2022). 「지자체 현장·수요자 중심의 지방규제 해소 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안전부. (2023). 「지방규제혁신 2023 우수사례집」.
- 행정안전부. (2024). ‘넓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2). 자치법규 업무매뉴얼(2022년판), 행정안전부.
- DBT. (2023). BETTER REGULATION FRAMEWORK.
- Mitnick, Barry M. (1980).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OECD. (1997).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ectoral Studies (Vol. 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2020).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 OMB. (2010). Agency Checklist: Regulatory Impact Analysis.
- OMB. (2011). Regulatory Impact Analysis: A Primer.
- OMB. (2023). Circular No. A-4.
- PM&C. (2023a). User guide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guide to policy impact analysis.

PM&C. (2023b). Australian government guide to policy impact analysis.

PM&C. (2023c). Impact analysis template.

UK. (2023).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emplate(2023 reforms)

### **[ 법령 및 관련 규정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국무조정실훈령 제204호, 2024. 4. 15., 일부개정]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행정안전부훈령 제322호, 2023. 12. 14.,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21호, 2024. 1. 9., 일부개정]

### **[ 웹사이트 ]**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 [2024. 10. 1.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4. 10. 1. 확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2024. 10. 1. 확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https://www.osmb.go.kr/>) [2024. 10. 1. 확인]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https://law.jeonnam.go.kr/law/index..do>  
[2024. 10. 1. 확인]



# 부 록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 신설·강화시 작성하는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시범적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 · 2024-12-10

### 1. 자치규제에 영향분석서 작성 개요

#### □ 작성목적 및 활용방안

-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은 성공적 정책운영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좋은 규제를 지향하고,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하여 규제의 품질을 제고시키며,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규제당국의 민주적·합리적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 등에서 수행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그 소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시 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며, 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쟁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이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 기본법에 명시적인 규제영향분석 의무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동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한 규제법정주의 및 규제품질관리의 시행을 규정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③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자치법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자치규제의 신설·강화시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자치

규제의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 작성 유형: 표준형 또는 간이형의 선택

- 현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은 상기 기본법 제8조의2에 의해, 규제의 시행에 따라 피규제자 및 국민의 비용부담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비용상 중요규제'거나 또는 피규제자의 규모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이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이후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단계에서 판단하므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이후에 결정됨
- 규제영향분석은 분석서의 작성 전 표준형과 간이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인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므로,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작성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사무국인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인 시·도 규제담당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준비를 검토 중에 있음
- 표준형과 간이형 작성유형의 선택 기준:
  - 판단기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의무제출이 요구되는 서류 내용의 구체화 정도,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 및 관련 규제 등의 경우 간이형 작성(정성적인 비용편익 분석 실시), 그 외 모든 경우 표준형 작성이 원칙이되,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거나 주민생활 체감도가 높은 규제의 경우 특히 표준형 작성(화폐가치로 계량화가 힘든 경우에만 정성적 비용편익 분석 가능)

## 2. 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 □ 참고사항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2023: 9, 19)에서 제시된 “좋은 규제”의 요건
  - 목표적합성(Goal targeted): 국가전체 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인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규제가 도입된 구체적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여야 함

- 투명성(Transparent): 규제 법규의 신설, 강화, 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실시와 그 반영결과 명시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는 공개하여야 함
- 비례성(Proportional):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의 권익 침해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며, 규제로 인하여 피규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규제로 인한 편익이 커야 함
- 책임성(Accountable): 규제자는 규제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하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져야 함

#### □ 자치규제 영향분석 체크리스트 : 이후 제시될 영향분석서 작성 전·후 검토사항

(※ 반드시 작성할 필요 없음, 작성 전·후의 확인사항으로 활용)

세부항목	주요내용	체크항목	
1. 문제 정의	1-1. 해결하려는 문제를 둘러싼 환경에 관하여 충분한 현황 분석과 이를 토대로 문제점의 본질, 규모, 발생이유 등을 분석·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사용한 정보는 정확하게 수집된 정보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 적절한 자료를 근거로 활용했고, 모든 자료는 그 근거(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자치단체 개입의 정당성	2-1.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설명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2. 기존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3. 규제 이외에 정부지원·교육·캠페인·민간 자율규제 등의 대안을 검토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규제목표 명확성	3-1. 신설·강화하는 자치규제의 목표가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2. 자치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세부항목	주요내용	체크항목		
4.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의 일관성	4-1. 고려하고 있는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 정책수단은 중앙정부의 국정기조 및 규제개혁, 지방규제혁신 정책·제도와 일관성이 있고 조화로운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2. 규제의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 사유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3. 해당 규제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에 제시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4. (경제적 규제만 체크) 해당 규제대안으로 인해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협약가입 의무, 사업정보 공개 요구 등), 소비자의 선택 또는 정보 제한 등 경쟁 제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제외)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5. (경제적 규제만 체크) 피규제자 중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는가? (피규제자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없는 경우 제외)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4-6. (경제적 규제만 체크) 기타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발휘를 억제하는가?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제외)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규제 대안 분석의 타당성	5-1. 해당 규제대안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를 충분히 인지하고 피규제자·이해당사자별 영향요인을 제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2. 해당 규제대안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활동의 사전·사후 등 전 과정(whole-life cycle)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3. 해당 규제대안이 발생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파급효과를 충분히 인지하며 정성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4. 제시된 규제대안들에 대한 정성적인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 또는 정량적인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이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5. 정량적 분석의 경우, 피규제자와 수혜자 등 이해당사자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관할구역 내의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의 규모가 제시되었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6. 정량적 분석의 경우, 규제의 집행·감시비용(행정당국) 외 규제순응비용(피규제자)이 빠짐없이 성실히 추정되었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세부항목	주요내용	체크항목	
	5-7. 정성적 분석의 경우, 이해당사자별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빠짐없이 충분히 기술되었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8.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비용대비 편익(또는 효과)를 비교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정책적 고려사항	6-1.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의 위임규제만 체크) 위임규제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2. (경제적 규제만 체크) 해당 규제대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3. (경제적 규제만 체크) 자치규제의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주민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규제정비 추진 사항 또는 계획을 제시하였나?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4.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의 협의, 의견수렴 또는 공론화 절차의 수행 결과 또는 찬·반의견을 를 제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6. 피규제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7. 해당 규제대안의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과 그 사유는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8. 해당 규제대안이 시행될 때, 피규제자가 기술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9. 관련된 유사사례를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10. 해당 규제대안을 시행하는 경우, 규제당국(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감시에 있어서 인력·예산 등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이 존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11. 피규제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절차 등을 간소화 할 여지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결론 및 기타	7-1. 분석결과 요약 및 기타의견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 간략하게 기술하였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2. 동 영향분석의 항목별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3. 해당 규제대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 등 관련 입증자료는 첨부되었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3.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서식

(※ 표준형 및 간이형 통합, 간이형의 경우 일부 항목 작성 불필요)

#### 〈1.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표지〉

1-1. 규제사무명					
1-2. 규제유형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강화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1-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자치단체명	0000	작성 자	이름	000
	담당부서(과)	00000		직급	00관
	국장	000		연락처	000-000-0000
	과장	000		이메일	____@____.____
1-4. 규제조문(근거 법규 및 분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별법 위임규제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 규제 <input type="checkbox"/> 기타(특별법·특례 등)				
1-5. 규제의 내용	기존				
	변경				
1-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이해당사자				
1-7. 비용대비 편익 또는 효과 요약	※ 시·도위원회(규개위 또는 지방규제혁신위 또는 그 사무국)에서 자치규제의 파급효과·중요도·주민체감도 등에 따라 정성적·정성적 비용·편익 또는 비 용·효과분석을 협의하여 결정 후 수행				
1-8. 일몰설정 여부	일몰설정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존속기한 미설정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 설정			
	존속기한·사유	※ 설정 혹은 미설정 사유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2-1.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필요성

-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내용과 원인
- (2) 문제해결을 위한 자치규제의 필요성
  - ※ 공공부문이 개입할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인지 반드시 검토

### 2-2. 자치규제의 목표·기대효과

- (1) 자치규제의 미래의 비전과 정량적 목표·기대효과
- (2) 기존규제로의 대체여부 및 현 신설·강화 등 이외의 대안 (※ 표준형의 경우만 작성)

### 2-3.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 신설·강화 등 변경하고자 하는 대안의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또는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거나 사회적 비용대비 편익이 더 큰지, 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지 등 자유롭게 기술

### 2-4. 자치규제의 지역경제로의 영향·파급효과 (※ 하기 각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1) 경쟁제한 요소에 대한 검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감소(협업가입 의무, 사업정보 공개 요구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를 제한하는가? ※ 보다 자세한 판단기준은 작성요령 또는 국무조정실 「규제영향 분석지침」, p32 참조. 단,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아니오"로 응답.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와 "예"에 해당하나 상기와 같은 불가피한 조치로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간략히 기술	

#### (2) 기업활동으로의 영향 검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는가? ※ 보다 자세한 판단기준은 작성요령 또는 국무조정실 「규제영향 분석지침」, pp33~36 참조. 단, 피규제자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아니오"로 응답.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 (3) 우선허용·사후규제 관련 사항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에 제시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거나 또는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가?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및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은 작성요령 또는 국무조정실 「규제영향 분석지침」, pp36~41 참조. 상기 법에 제시된 "신기술 서비스·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위 질문에 체크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다음 페이지 계속)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계속)〉

### 2-5.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비교

(1) 피규제자 및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타 이해당사자

- ※ 이해당사자별로 작성 필요, [규제당국] 자치규제의 집행·감시자인 지방자치단체, [피규제자] 권리 제한 또는 의무가 부여되는 이해당사자, [규제수혜자]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혜택이나 보호를 받는 이해당사자, [기타] 규제로 인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 ※ 특히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민간인 경우, 표준형과 간이형 모두에서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규모(예: 주민 000인, 사업체 000개소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통계자료 등 규모 추정치의 근거를 제시

(2)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로서의 영향

- ※ 자치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이해당사자별 정성적으로 영향관계를 간략히 기술(단, 규제당국,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는 반드시 작성, 이해당사자별 3줄 이내)

(3) 이해당사자별 비용(규제집행·감시비용 및 규제순응비용) ※ 표준형의 경우만 작성

	연간 비용	추정근거
규제당국 (집행·감시비용)		
피규제자 (규제순응비용)	000원/년	
기타 이해당사자	000원/년	※ 기타 이해당사자가 없을 경우 해당 칸 삭제, 복수일 경우 여러 칸으로 표를 분할하여 작성

- ※ 규제당국의 집행·감시비용은 자치단체가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를 집행·감시하는데에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연간 비용을 의미하며,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비용은 자치규제로 인해 권리가 제한되거나 또는 의무를 부여받는 이해당사자가 해당 자치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을 의미. 마찬가지로 기타 이해당사자의 경우 규제로 인해 비용추가가 예상되는 집단을 의미함.

(4) 이해당사자별 편익 또는 효과 ※ 표준형의 경우만 작성

	연간 편익 또는 효과	추정근거
규제수혜자	000원/년 또는 000단위/년	
기타 이해당사자	000원/년 또는 000단위/년	※ 기타 이해당사자가 없을 경우 해당 칸 삭제, 복수일 경우 여러 칸으로 표를 분할하여 작성

- ※ 규제수혜자의 편익은 자치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받는 혜택에 대해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화폐가치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기타 이해당사자의 편익은 직접적인 규제수혜자 외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혜택에 대해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화폐가치로 표현한 것을 의미
- ※ 화폐가치로 표현된 편익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관련 가격이나 비용절감분 등 관련 시장 정보가 없는 경우), 혜택을 다른 단위로 표현하는 것을 효과라고 함

(5) 비용과 편익(또는 효과)의 비교

- ※ 정량분석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B/C) 또는 비용대비 효과(B/E), 정성분석의 경우 비용 또는 편익의 정성적인 비교 등 간략히 기술

(다음 페이지 계속)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계속)〉

### 2-6. 정책적 고려사항

#### (1) 자치규제 정비계획

자치규제의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피규제자 등 이해당사자 또는 주민 및 지역사회 구 성원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규제정비 추진사항 또는 계획은 고려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 (2) 현재 기술수준 및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피규제자가 기술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해당 규 제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 (3)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자치법규 제·개정 전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 이해당 사자의 협의, 의견수렴 또는 공론화 절차를 수행하였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행사명, 날짜, 참석자 등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피규제자 또는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신설·강화하는 규제에 대해 자치법규 제·개정 전 반대하거나 실익이 없거나 또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자치법규 제·개정 전 자치법규 제·개정 전 피규제자 또는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 의 의견은 반영되었나? ※ 반대 또는 우려되는 의견이 없는 경우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 (4) 유사사례 검토결과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사례 및 검토내용 간략히 기술

#### (5)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행정적 영향요인 및 예상 애로사항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피규제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할 여지는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사유를 간략히 기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소속된 자치단체의 집행·감시에 있어서 인 력·예산 등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이 예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사유를 간략히 기술

(다음 페이지 계속)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계속)〉

(6)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상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자치규제의 경우, 상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가? ※ 위임규제가 아닌 경우 “아니오”로 체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사유 및 관련 검토내용 간략히 기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예: 자율규제, 강제조항보다 과태료·법칙금 등 경제적 유인방식 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사유 간략히 기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해당 규제대안의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과 그 사유는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 〈3. 종합결론〉

3-1. 분석결과 요약

구분	[정량적 분석의 경우] 연간 비용 또는 연간 편익·효과 [정성적 분석의 경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규제당국(지자체)	※ 정량적 분석의 경우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추가되는 자치단체의 연간 집행·감시비용을, 정성적 분석의 경우 집행·감시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되는 긍정·부정적 사항을 간략히 기술
피규제자	※ 정량적 분석의 경우 피규제자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연간 규제순응 비용을, 정성적 분석의 경우 피규제자의 규제순응시 변화가 예상되는 긍정·부정적 사항을 간략히 기술
규제수혜자 등 이해당사자	※ 정량적 분석의 경우 규제수혜자의 연간 편익과 기타 이해당사자의 연간 비용 또는 편익을, 정성적 분석의 경우 규제수혜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의 긍정·부정적 변화를 간략히 기술

3-2. 기타 의견  
 ※ 기타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 또는 시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3-3. 별첨  
 ※ 자치규제의 신설·강화가 시급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거나 또는 본 영향분석서의 작성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첨

## 참고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의 항목별 작성방법 (작성 참고사항)

### 1. 자치규제 및 규제영향분석 개요

#### 1-1.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 신설규제는 새로운 사무명을 부여
- 강화규제는 기존 등록사무명과 연계하여 작성

#### 1-2. 규제유형 구분 : 해당규제가 신설규제인지 또는 강화규제인지를 구분

#### 1-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규제실명제에 따라 소관 실무 담당자, 실·국장, 과장·담당관 등을 명기

#### 1-4. 규제조문(근거법규 및 분류)

-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상위 위임법령, 자치법규, 특별법(특례, 특별법에 의한 사무위임) 등의 명칭과 조항

#### 1-5. 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 : 신설되는 규제의 주요 내용
- 기존규제의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 현행 규제의 내용과 변경하려는 내용

#### 1-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 규제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자

- 피규제자 : 지역 내·외의 기업 및 소상공인, 일반국민으로 구분
- 기타 이해당사자 : 규제당국(자치단체,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 규제의 시행에 따라 피규제자 외에 영향을 받는 집단 등

#### 1-7. 비용대비 편익 또는 효과 요약

- 규제의 정량적·정성적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 결과 요약표
- 정량분석의 경우 비용·편익 비율(B/C ration) 또는 비용효과 비율(B/E ratio), 정성분석은 비용 또는 편익의 정성적인 비교

### 1-8. 일몰설정 여부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규제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의 설정 여부를 표기하고, 설정 또는 미설정 사유를 표기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 2-1.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필요성

####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내용과 원인

- 자치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기술
  - 추진배경에서 다루어지는 현황과 문제점은 규제영향분석의 출발점이며 전체적인 논리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서 중요한 단계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과 규제의 도입목표를 설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통계나 사례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된 모든 자료는 출처와 함께 제시해야 함
- “현황”이란 지금 현재의 상태(status quo) 즉, 공공부문의 추가적인 개입이 나 결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함
  -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지역 내 또는 필요시 지역 내·외 관련 산업계나 사회단체 등의 규모와 관련 활동 실적
  - 기존 법령이나 규제, 이미 취해진 자치단체의 정책·프로그램과 그 운영실태
  - 기존 규제가 없이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비규제나 자율규제 등의 제도와 운영실태를 분석
- “문제점”이란 규제의 신설(강화)을 통해 해결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상태를 의미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
  - 기존 현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개입이 없는 상태나 부족상태)에 따라 발생한 문제 상황 및 부정적 결과의 규모와 그 심각성
  - 단순한 사례 나열적 접근보다 추세와 경향성에 입각한 문제 상황 제시가 필요

- 부정적 결과의 영향을 받는 주체
-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제도 미비, 시장의 실패, 기존 규제의 실패, 재해·위험, 기타 지역특성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관련 요인)

## (2) 문제해결을 위한 자치규제의 필요성

- 시장기능 또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불가피하게 신규로 또는 추가적으로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근거자료 (출처명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
- 문제점에서 지적한 자치제도의 미비, 시장실패, 기존 규제의 실패, 재해나 위험 등의 요인, 기타 지역특성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등의 들로 인해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할에 대해 서술
- 자치규제 외의 대안이 지역문제 해결에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
- 신규조문 대비표 : 기존규제와 신설 또는 강화되는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

## 2-2. 자치규제의 목표·기대효과

### (1) 자치규제의 미래의 비전과 정량적 목표·기대효과

- 자치규제의 신설·강화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황을 서술
  - 정량적 목표치를 제시하되, 불가능한 경우 시·도위원회 또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또는 그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성적으로 기술
- 자치규제 도입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서술
  - ‘자치규제 도입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지역정책의 의도를 집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서, ‘추진배경’에서 검토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최종결과를 의미
  - 기존에 존재하던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가 가졌던 목표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하며, 기존규제의 목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원인을 파악하고, 목표가 바뀌는 경우에는 바뀌게 된 원인을 검토해야 함

- 규제도입의 목표가 다수인 경우에는 주된 목표와 부수적인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기술하여야 함
- 목표의 달성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적 측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2) 기존 규제로의 대체 여부 및 현 신설·강화 등 이외의 대안(※ 표준형만)

-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고려하고 있는 변경안 이외의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동일한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발굴·검토 필요)

현행 유지안	명칭	
	내용	
	장·단점	
신설·강화 등 현재 추진안	명칭	
	내용	
	장·단점	
대안	명칭	
	내용	
	장·단점	

- 현행유지안 :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의 규제 대안
  - 신설 규제의 경우 : 기존 규제 없음
  - 강화 또는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 또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관련 규제들을 서술
- 신설·강화 등 현재 추진안 : 현재 추진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기술
- 대안 : 신설·강화 등 현재 추진안과는 다른 방식의 규제대안으로서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규제 대안이나 현재 추진안에 비해 완화된 다양한 방식의 규제대안들을 검토

- 비규제대안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적 특성이 제외된 대안(예: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세금감면 혜택 및 이차보전·저리융자 등 금융지원, 캠페인, 공익광고 등 사회운동, 민간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등)
- 저강도 규제대안 : 현재 추진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더 완화하거나 피규제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등(예: 현재 추진안이 허가제인 경우 등록제·신고제 등을 대안으로 고려 가능), 기타 피규제자 집단(예: 사업체 협회 등)의 자율규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여에 있어서 강행조항이 아닌 경제적 유인책(과태료·벌칙금 등)
- 기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규제대안 : 현재 추진안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를 검토(예: 현재 추진안이 구비서류 서면접수인 경우 전자(온라인)접수 등을 대안으로 고려 가능)

### 2-3.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도입대상 규제대안이 규제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는지 검토하여 기술
- 비례적 타당성 판단기준: 1)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문제나 위험과 비교하였을 때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지 않고 적절한지 여부, 2)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편익이 많은지 여부
- 비례적 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안과 추진 이후 기대되는 최종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사항들을 포함: (1)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집단의 규모, (2) 규제의 영향이 발생하는 기간 및 규제 영향의 분포·범위(규제영향이 특정집단에 집중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지 등), (3)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집단 간 이해충돌 정도

## 2-4. 자치규제의 지역경제로의 영향·파급효과 (※ 하기 중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1) 경쟁제한 요소에 대한 검토

-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각 검토항목별 (A~D)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 단,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해당여부 제외)

<p>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p>	<p>※ 다음과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p> <p>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 부여</p> <p>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p> <p>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예: 특정지역·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p> <p>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p> <p>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p> <p>(단, ②, ③, ⑤의 경우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해당여부 제외)</p>
<p>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p>	<p><input type="checkbox"/> 해당</p>	<p>※ 다음과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p> <p>①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p> <p>②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함</p> <p>③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일반소비자가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p> <p>④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킴(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p> <p>(단, ②, ④의 경우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해당여부 제외)</p>
<p>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p>	<p><input type="checkbox"/> 해당</p>	<p>※ 다음과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p> <p>①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p> <p>②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p> <p>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에서 배제함</p> <p>(단, ①, ②, ③의 경우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해당여부 제외)</p>
<p>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p>	<p><input type="checkbox"/> 해당</p>	<p>※ 다음과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p> <p>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제한)</p>

정보의 제한	□ 해당 없음	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 시킴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좌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료 부과 등) 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단, ①, ②, ③의 경우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해당여부 제외)
--------	---------	---

## (2) 기업활동으로의 영향 검토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피규제자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규제자에 포함된 경우 상기 법적 근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선행할 필요는 없으나, 동 평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제 차등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그 특성에 맞도록 규제부담을 경감시키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 유예 등)를 의미함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참조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예시
  - [규제 내용의 차등화] 공사 규모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기준 차등화 등 적용기준의 차별화, 매출액 규모 일정액 미만 기업은 인수합병 심사절차 생략 등 절차 차등화
  - [규제 시기의 차등화] 기업규모 등에 따라 HACCP 의무적용시기 차등화
  - [규제 순응 확보의 차등화] 작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사, 감독, 단속 등 완화
-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의 해당 부문에 자치규제의 피규제자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포함될 경우 피규제자 및 규제차등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간략히 기술
  - 차등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지역내 피규제자의 업종 및 규모, 규제차등화 내용 및 기대효과 등

### (3) 우선허용·사후규제 관련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상기 법령과 같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한 조치사항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적용 또는 미적용의 사유 등을 간략히 제시
  - 기타 포괄적 네가티브 규제,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 규제샌드박스 등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023.4)」 pp37-41 참조

## 2-5.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비교

-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은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관련된 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현금흐름을 추적하여 비용대비 그 편익(국민경제적 효과)이나 효과(그 외 다른 측정단위의 효과)를 비교하는 의사결정 방식임
  - 즉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은 우선적으로 각 대안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을 규명하고, 아울러 그 영향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영향관계를 화폐가치로 이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함
- 중요한 것은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은 어떠한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수단으로서, 비용과 편익이라는 화폐가치로 정량화시키거나 또는 다른 측정단위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의 구조 하에서 보다 자세히 그 속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봄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데에 있음
  - 따라서 화폐가치로 환산 여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이는 기술적인 사항에 불과하며), 보다 본질적으로 각 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규제비용 감축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성과측정을 시도하므로 정량적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나, 자치규제의 경우 피규제자의 지역적 한정(통상 비용·편익 분석

은 국민경제 단위, 즉 국가 전체적인 수혜를 화폐가치로 환산) 등 적용을 위한 문제점 또는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향후 연구·분석 등을 통해 수행방안 고도화 필요

- 정량적인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어려운 경우 화폐가치로 무리하게 분석을 수행하는 것 보다는, 다른 측정단위로 분석 또는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각 대안의 평가도 가능함
  - 편익에 해당하는 긍정적 영향요인에 대한 화폐가치가 아닌 타 측정단위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이나, 또는 각 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별 영향받는 사항들을 정성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대안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음

#### (1) 피규제자 및 기타 비용·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로는 1) 규제당국(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2) 피규제자(주민·사업체 등), 3) 규제수혜자 등으로 구분됨. 2)와 3)의 경우 반드시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일 수도 있음
- 비용·편익 분석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기술해야 하며,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미치는 다른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간략히 기술

#### (2)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로의 영향 (일단 정성적으로 기술)

- 규제당국의 경우, 규제의 신설·강화시 규제의 집행·감시활동에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음. 예컨대,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새로운 기준이 충족되는지 감시활동이 강화될 수 있음(감시비용 증가 예상)
- 피규제자의 경우 규제를 통해 그 활동에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음, 즉 규제의 순응비용이 변화할 수 있음. 예컨대,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로 기업활동에서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함(비용증가 예상).
- 규제수혜자의 경우, 규제가 없거나 기존 규제 하에서 발생된 문제가 있었다면, 새롭게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임. 즉, 사회경제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가 예상되는데, 예컨대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시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음

## ※ 표준형의 경우에만 (3) 및 (4) 작성

### (3) 이해당사자별 비용

- 재정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 초기에 집중된 투자를 통해 관련 시설·장비 등의 내구년수 동안 창출되는 수혜자의 편익을 계산하는데에 반해,
- 규제를 대상으로 한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 집행·감시비용 및 규제순응비용 등 매년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초기에 집중되지 않으므로 투자의 내구년수를 감안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현재가치에 의한 비교방식이 아닌 연간 비용(연평균 비용 또는 연간 균등화 비용)으로 비교가 가능함
  - 즉, 일정기간을 감안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한 비용·편익 분석이 아닌 연평균 소요비용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편익의 비교가 가능함
-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의 기간과 할인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함
  -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 특정 사업의 수명주기(life-cycle) 전 과정의 기간(통상 30년)을 감안하여 각 시기별로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비용대비 편익 비교방법 외에도, 미래 편익의 발생으로 인해 초기 비용투자를 회수하는 미래 시점(payback period)에 관한 분석, 연간 균등화 비용과 편익(annualized cost & benefit)의 비교 등 다양한 분석방법이 존재함
- 규제당국은 전술한 규제집행·감시활동의 변화에 따른 연간 비용의 변화를 감안해야 하며, 피규제자의 경우 연간 규제순응비용의 변화를 감안해야 함
  - 즉 신설 규제의 경우 해당 규제의 집행·감시를 위한 규제당국의 인력·예산과 피규제자의 규제순응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감안해야 함

- 기존 규제의 강화의 경우, 규제당국의 집행·감시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과 피규제자의 규제순응을 위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야 함
-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기존 집행·감시 비용대비 편익을 연장되는 기간 동안 고려함

#### (4) 이해당사자별 편익 또는 효과 (※ 표준형의 경우만 작성)

- 규제순응비용의 지출로부터 규제수혜자가 받는 혜택 또는 긍정적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을 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며, 전술한 것과 같이 규제의 시행에 따른 연간 비용외에 수혜자들이 받는 연간 편익을 계산
- 수혜 또는 긍정적 효과를 화폐가치로 추정하지 않고 다른 측정단위로 측정하는 것(예: 안전 규제 강화로 지진·해일시 생존률 OO% 증가 등)을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라고 하며, 특히 여러 대안을 비교할 때 이와 같은 다른 측정단위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대안의 우월성 평가가 가능함
- 규제영향분석 표준형에서 신설·강화 등 현재의 추진안 외에 현행 유지안 및 기타 대안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규제영향분석에서 비용·효과분석은 큰 의미는 없으나,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환산하는 것 보다는 추후 타 대안과의 비교 등을 염두에 둘 때 관련 긍정적 효과의 정량화라는 점에서 정성적인 분석보다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비용·편익 계산의 경우 필요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함

#### (5) 비용과 편익(또는 효과)의 비교

- 정량적 분석, 즉 화폐가치로 환산한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B/C ratio = Benefit 총합 ÷ Cost 총합), 비용·효과분석의 경우 비용대비 효과의 비율(B/E ratio = Effectiveness 총합 ÷ Cost 총합)을 제시
- 정성적인 분석의 경우, 각 이해당사자별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했을 때 현재 추진안이 바람직한 대안임을 설득력있게 기술함
- 기타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 기타 비용·편의 분석과 관련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2023.4)」 pp44-56, 61-69 참조

## 2-6. 정책적 고려사항 (※ 하기 각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1) 자치규제 정비계획

- 자치규제 정비계획은 해당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규제 정비 추진사항 또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개정 등의 일정계획 등을 간략히 제시

### (2) 현재 기술수준 및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

- 피규제자가 처한 현실(기술수준, 경제적 순응가능성, 유사분야 순응도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규제준수의 수월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장애 및 그 해소방안에 대해 기술

### (3)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 규제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하고 반영여부 등 조치결과를 제시

### (4) 유사사례 검토결과

- 현재 추진안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외의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진사례 등의 검토내용을 필요시 요약

### (5)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행정적 영향요인 및 예상 애로사항

- 자치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규제당국의 집행·감시비용의 변화에 대해 앞서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인력이나 비용의 조달 등 추가되는 비용의 조달방안 및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절차상 영향요인 등을 필요시 기술

### (6)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의무는 없으나 중앙의 규제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자치규제 역시 일몰기한의 설정을 권장하며, 존속기한과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3. 종합결론 및 기타

#### 3-1. 분석결과 요약

-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따른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 등 이해당사자별 영향관계 요약, 정량분석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또는 효과) 비율 제시
- 현재 추진안이 적절한 수준이며, 현재까지 고려되는 안 중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제시

#### 3-2. 기타 의견

- 3-1. 분석결과 요약 외에 3-1에서 언급하지 못하였으나 의사결정 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의견 및 기타 강조할 사항 등

#### 3-3. 별첨

- 각 항목별 증빙자료 및 규제의 신설·강화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언론기사 등 필요시 별첨

정책연구 2024-09

## 지방규제 영향분석 방안 마련 연구

저 자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정기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해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발 행 일 2024년 11월 21일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 페이지 <http://www.krila.re.kr>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